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

- 주요 경쟁국의 경영/생활환경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K O T R A

Invest KOREA

머 리 말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위기극복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OTRA는 물론 관련기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KOTRA 산하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에서는 주요 경쟁국은 물론 외국인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투자환경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금번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투자환경을 크게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 경영환경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관련제도에 있어서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비교·조사하였으며, 생활환경분야에서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홍콩, 일본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보고서는 2003년 투자환경개선팀에서 이미 조사한 내용과 2003년 실시한 “외투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 애로조사” 등을 종합·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보다 현장감 있는 조사를 위해 금년 5~6월 투자 선진국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투자 경쟁국 싱가포르, 홍콩, 상해 등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동 현장 방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KOTRA 런던,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상해, 홍콩,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관계자 여러분과 국내에서 자료제공으로 협조해주신 주한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대사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체 자료발간을 담당하면서 원고를 집필한 투자환경개선팀 이석호 과장과 자료를 발간하는데 수고한 안영주 과장에게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자료가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투자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살기 편한 나라로 개선해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2004년 8월

KOTRA산하 Invest KOREA 단장
Alan Timblick

목 차

I. 서	론	5
II. 생활환경		9
1. 외국인 교육		9
2. 외국인 의료서비스		28
3. 외국인 주거환경		46
4. 외국인 교통환경		60
5. 외국인 출입국		75
III. 경영환경		87
1. 외국인투자유치제도		87
1) 영국		
(1) 투자유치정책		87
(2) 투자유치기관		87
(3) 투자인센티브		89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98
2) 네덜란드		
(1) 투자유치정책		99
(2) 투자유치기관		99
(3) 투자유치인센티브		102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103
3) 아일랜드		
(1) 투자유치정책		105
(2) 투자유치기관		106
(3) 투자유치인센티브		109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110

4) 싱가포르	
(1) 투자유치정책 -----	111
(2) 투자유치기관 -----	111
(3) 투자유치인센티브 -----	112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	113
5) 한국과의 비교	
(1) 주요국 투자유치, 배경, 정책목표, 정책수단 -----	114
(2)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발전방향 -----	115
2. 노동제도 (합의적 노사관계중심으로) -----	116
1) 영국 -----	116
2) 네덜란드 -----	118
3) 아일랜드 -----	124
4) 싱가포르 -----	129
5)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방향 -----	132
3. 조세제도 -----	135
1) 영국 -----	135
2) 네덜란드 -----	138
3) 아일랜드 -----	139
4) 싱가포르 -----	140
5) 각국의 조세제도 비교 및 한국의 조세제도 발전방향 -----	141
4.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 -----	142
1) 네덜란드의 물류산업 및 클러스터 -----	142
2) 영국의 R&D 및 첨단기술 투자유치 -----	150
(1) 영국의 Science Park -----	151
(2) Bio-technology -----	152
IV. 결 론 -----	157

I. 서론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결정시 고려하는 한 나라의 투자환경은 편의상 크게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이 투자 의사 결정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내수시장 규모 및 성장가능성, 투자대상국의 생산비용 및 투자수익률 등 경제적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비경제적 요인인 노사관계, 세무, 금융/외환, 정부정책 등의 제도적 요인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의 편의성 등 외국인 생활환경 등의 사회적 인프라 요인을 들 수 있다.

결국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을 외국인들이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중 경제적 요인은 장기간에 걸쳐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우리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부분은 비경제적 요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투자환경을 생활환경과 경영환경으로 구분, 우리의 경쟁국 및 모범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투자환경은 어떤가? 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미국의 컨설팅 그룹인 AT & Keaney사가 1,000여개의 다국적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향후 1-3년 이내 투자최적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FDI Confidence Index에서 한국은 2003년도 18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 순위가 투자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는 되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투자지로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은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KOTRA 산하 Invest KOREA가 2003년도에 시행한 「외투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서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Asia Week가 2001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생활환경은 아시아지역의 투자유치 경쟁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 1위, 싱가포르 3위, 대만 4위, 홍콩이 6위를 기록한 반면 서울은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인 교육, 의료, 주거, 교통, 출입국 순으로 구분하여 투자유치에 있어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일본 등 5개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이와 같은 생활환경 비교 조사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KOTRA 산하 Invest KOREA 투자환경개선팀에서 시리즈로 발표한 것을 종합·분석한 것이다.

한편, 외국기업 경영환경 부문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사례를 외국인투자유치제도, 노사관계, 조세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추진 정책의 중심과제 중인 하나인 물류분야 및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유치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의 물류 정책 및 영국의 사례도 추가하였다.

II. 생활환경

1. 외국인 교육환경

1) 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육환경

(1) 일반적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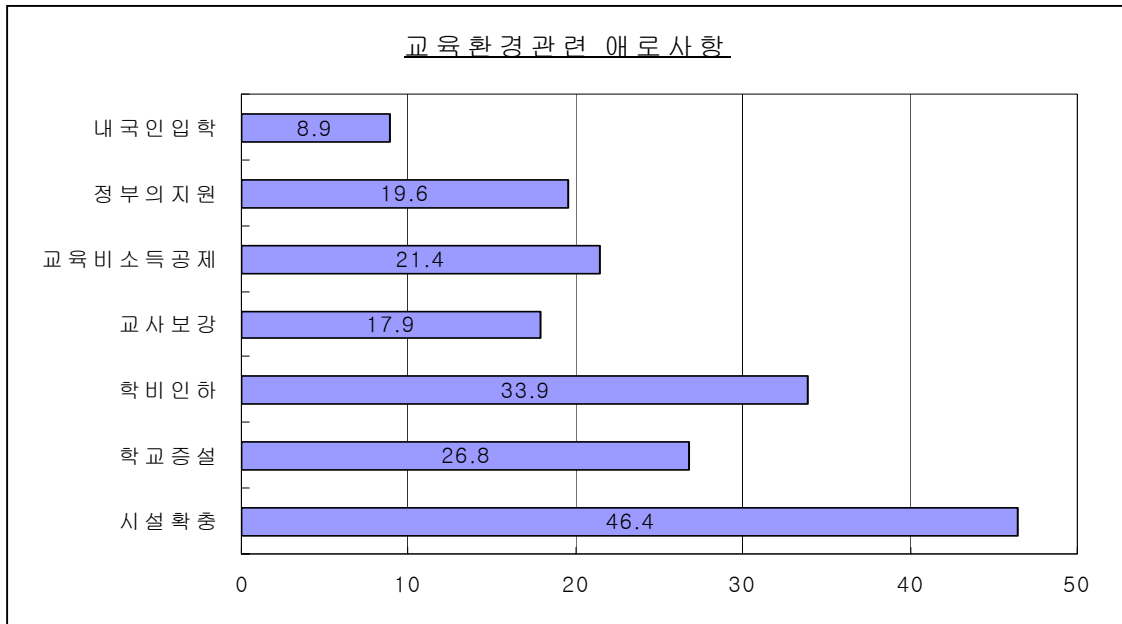
Invest KOREA의 전신인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가 2003년 6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 상공회의소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학부모의 33.4%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육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시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보다 더 많은 응답자인 46%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외국인학교 학비가 본국의 교육비 수준에 비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이나 교육의 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서울외국인학교(SFS) 등과 같은 일부 인기 학교에 외국인자녀가 집중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의 입학대기, 시설 및 공간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 학교의 경우 학교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국인 학교에서는 학생부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학교측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외국인학교의 재정 및 운영지원을 위한 내국인의 입학조건 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다국어 학교 설립 지원에 있어서도 우리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

(2) 외국인 학부모의 불만사항

전술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학부모들은 외국인 교육환경 가운데 개선 필요사항으로 학교시설 확충, 학비 인하, 학교 증설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의 불만사항은 학교시설과 교육비에 비중이 높다.



국토연구원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불만사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비싼 교육비 35.5%, 학교부족 28.9%순이었다.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은 KISC조사에서는 복수응답 기준으로 17.9%였으며, 국토연구원조사에서는 100% 기준으로 7.2%였다.

(3) 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2001년 4월 법령 6462호에 의거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2를 신설하여 외국인학교를 각종 학교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었다.

제60조의 2 (외국인학교)

- 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 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은 외국인 또는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자녀이다. 그리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각종학교는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교육부령)』에 의거 학력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는 학력인정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를 보아야만 한다.¹⁾

현행 법 기준 외국인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2003년 7월에 경제자유지역법이 제정되어 경제자유지역내 외국인학교 설립이 자유화되었지만 외국인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의 학교설립투자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²⁾

다만,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안)」에 의하면 앞에서 논의된 문제점이 대부분 해결되게 되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들어서는 외국학교에 입학할 국내 학생의 비율은 학교장이 정하고,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내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이 인정된다. 또한 외국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외국학교법인의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지원근거도 마련하고 있어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경우 외국인의 교육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4) 한국의 외국인학교 현황

한국에는 현재 43개의 인가된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이중 16개교가 서울시내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지역에만 22개교가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는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에서는 학교부족 및 통학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대만 19개교, 미국 17개교, 일본 2개교, 프랑스 2개교, 독일 1개교, 이태리 1개교, 노르웨이 1개교 등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고등학교까지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일본학교와 서울독일학교 등은 부지 및 건물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중학교 과정까지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태리학교(프란치스코학교)의 경우 유치원과정만 있다.

외국인학생의 외국인학교 취·재학율은 72.0%로 대부분의 외국인학생은 외국인학교에 취학중이다. 한편 한국학교 취·재학율은 17.5%이나,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과정을 운영중인 학교는 없다.³⁾

<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

학교명	교육방식	학제	교육비(원)	소재지	시설
Seoul	미국식	유,초	입:225,000	서울	3만평,식당, 강당, 도서관, 축구장

Foreign School		중,고	등:437,500 수:16,250,000 ~20,070,000 버스:1,900,000	연희동	(잔디), 극장, 수영장(실내),운동장, 체육관, 컴퓨터실, 농구/배구/테니스코트, 과학실, 가정실, 헬스장, 미술실, 음악실, 자료실
Seoul Japanese School	일본식	유,초,중	입:300,000 수:2,400,000 시:360,000 기타:1,430,000	서울 개포동	독서실,운동장,체육관,수영장,컴퓨터실,과학실,가정실,기술실,음악실,미술실,자료실,
Seoul German School	독일식	유,초,중	입:700,000 등:12,000,000	서울 한남동	도서관,체육관(소),컴퓨터실,운동장(소),과학실,미술실,음악실
Busan Foreign School	미국식	유,초,중	입:250,000 등:750,000 수:13,000,000 기타:2,000,000	부산 해운대	4,940.2m 도서관,체육관,수영장,강당,컴퓨터실,운동장,테니스장,식당,과학실,독서실,미술실,음악실,헬스장
Taejon Christian Int'l School	미국	유,초,중,고	입:200,000 등:300,000 수:11,000,000 ~ 15,400,000 버스:1,120,000 육:3,500,000 숙:10,500,00	대전 대덕구	기숙사,강당,도서관,식당,가정실,컴퓨터실,운동장,테니스장,과학실

주)입 : 입학금, 등 : 등록금, 수 : 수업료, 시 : 시설비, 육 : 육성회비, 숙 : 기숙사비

(5)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인해 국내 투자신고 금액이 1996년을 기준으로 2000년에는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수도 현재 20만명에 이르고 외국인 학생수도 7천명 수준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학교의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국인학교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며, 학교 부지나 금전적인 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거의 없어 외국인학교들은 학교 시설개선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지원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내세울만한 지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안)」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교

육기관의 설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거나 임대시 토지위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국교육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4년 6월에는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Korea Foreign Schools Foundation)이 설립되어 용산 외국인학교 설립에 착수했다. 미국·EU·대한상의 등이 출연한 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은 학교부지(약 7,000평)를 서울시로부터 제공받고 공사비 300억원중 100억원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오는 2006년 8월까지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다. 재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로서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 및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영리교육재단으로서 외투기업 등의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 투자유치 경쟁국의 외국인 교육환경

< 주요 투자유치 경쟁국 외국인교육 환경비교 >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학비 수준	연간 학비	US\$14,300 ~17,569	US\$15,100 ~17,700	US\$9,400 ~11,800	US\$13,500 ~14,500	US\$11,750 ~20,200	US\$19,800
	국민 소득	US\$10,013	US\$21,700	US\$23,912	US\$12,452	US\$963	US\$31,343
	소득 비중	175%	81%	49%	116%	-	63%
기부금제도		법률상 미허용	허용 (US\$1,500~ 2,000)	허용	허용 (US\$2,900 ~7,300)	법률상 미허용	허용 (US\$1,000 ~3,000)
내국인 입학제한.		· 외국인 · 5년이상 해외거주 내국인	· 외국인 · 3년이상 해외교육 이수 내국인 · 교육부 허가 내국인	· 외국인 · 영어 의사 소통 가능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교육부의 허가를 특한 내국인	없음 ※ 학교마다 기준 마련 상 이하나 기본 적으로 외국 어 가능자
학교설립지원		- 부지 및 시설 에 대한 지원	- 부지 및 시설 에 대한 지원	- 부지 및 시설 에 대한 지원	- 부지 및 시설 에 대한 지원 - 세제혜택	- 부지 및 시설 에 대한 지원 - 은행대출	- 지자체지원 - 저리대출
학교설립자격		외국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인	외국인	제한없음

주) 1. 연간학비 : 각국의 American School의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부금 기준 (한국은 SFS)

2. 국민소득 : 한국은행 통계2002년

3. 소득비중 : 1인당GDP대비 연간 교육비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지식허브"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교육환경도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26개교가 있으며 미국, 캐나다, CIS,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학교 등 다수의 국제학교가 있다. 한국학교는 1993년에 설립되어 중학교 과정까지 운영중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학교 교육비 수준은 1년에 기숙사비, School Bus비, ELS 등을 제외한 순수 교육비만 US\$10,000에서 US\$18,000수준이다. 기부금제도는 양성화되어 있으며,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정부에서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들은 US\$1,500~2,000 수준의 기부금을 받고 있다.⁴⁾

자녀교육비는 외국인 소득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다. 외국인학교 설립 자격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신규 설립시에는 정부차원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 외국인학교인 Overseas Foreign School은 약 144,000m² (약 43,600평)의 부지를 정부에서 100년간 임대받고 있다. 이는 일반 내국인학교의 3배 면적에 2배의 기간에 해당하여 매우 파격적인 우대조건이다.⁵⁾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외국인 내지는 3년 이상 해외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자,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없으며 모든 교육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4%의 물품서비스세(GST)를 예외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내 사교육기관은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부차원에서의 협상 여하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

< 싱가포르의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

(환산환율 US\$1=S\$1.75)

학교명	교육방식	학제	교육비(S\$)	소재지	시 설
Overseas Family School	영국식	유,초,중,고	수:16,200~20,200 E:2,000	Paterson Road	식당, 도서관, 아트센터, 강당, 수영장(2), 체육관, 컴퓨터실, 과학실(7), 운동장, 농구장
United World College of Southeast Asia	미국식	유,초,중,고	등: 1,560 수:16,030~19,030 기:889~2,630	Dover Road	수영장, 운동장, 강당(2), 체육관(2), 기숙사,

			숙: 18,760		
Singapore American School	미국식	유,초,중,고	입:5,500 수:17,600~22,100 E:3,000 기:3,500	Wood-Lands Street	수영장(2), 체육관, 강당(2), 운동장, 헬스장(2), 암벽등반장, 식당, 서점
Australian Inter'l School	호주식	유,초,중,고	등:1,560 수:14,435~20,384 건:1,300E:1,813	Lorong Chuan	PC실, 다용도극장, 체육관, 운동장,수영장, 테니스장, 다용도운동장

주)등 : 등록금, 건 : 건축비, E : ESL, 숙 : 기숙사비, 기 : 기부금

(2) 홍콩

홍콩은 정부예산의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할 만큼 국제화에 맞는 인재 육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공인학교가 62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수도 18,500명에 달하고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교육체제로 이루어지나,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공존한다. 한편, 외국인 자녀교육비는 1년에 US\$9,000~21,000 수준이다.⁶⁾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학교의 교육비 평균은 순수 학비만 연간 US\$10,000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입학시 공채(Debenture)구입비로 약 US\$5,000~ US\$25,000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퇴교시 환불)

홍콩은 기부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교육개방으로 인해 학교간 경쟁이 치열하여 기부금에 의존하는 학교는 점차 교육시장에서 퇴출되는 추세이다. 기부금 제도는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공채 구입이 일반화 되어 있다. 세제혜택에 관해서는 홍콩은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면세혜택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은 내외국인 구별 없이 모두에게 허용되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 시에는 홍콩정부에서 부지 및 대출혜택을 받게 된다. 홍콩의 대표적인 외국인학교인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은 50년간 연 \$1을 내고 부지를 할당받았으며, 무이자대출 혜택도 받은 사례가 있다.⁷⁾

< 홍콩의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

(환산환율 US\$1=HK\$7.8)

학교명	교육방식	학제	교육비(HK\$)	소재지	시설
German	독일식	유,초	등:1,500	홍콩	운동장, 수영장, IT 실, 과학

Swiss Inter'l School		중,고	수:63,600~96,600 공:90,000	(The Peak)	실, Labs실, 도서관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미국식	유,초 중,고	입:1,000 수:72,000~90,000	홍콩 (Koolong Tong)	도서관(2), 자료실, PC실(2), 과학실(2), 강당, 수영장, 체육관, 테니스/농구/배구코트, 배트민턴코트, 운동장(4)
Chinese International School	영어 중국어	유,초 중,고	입:1,000 등:70,010~108,360 공:75,000	홍콩 (Braemar Hill)	컴퓨터실(4), 언어학습실, 강당, 체육관(3), 수영장, 도서관(3), 식당, 테니스코트, 과학실(6), 운동장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	영어	유,초 중,고	입:15,000(공채미구입시) 수:129,900~148,700 버:4,460~13,000 공:200,000 기:12,000(공채미구입시)	홍콩 (South Bay)	작업실, 과학실, 컴퓨터실, 수영장, 운동장(잔디), 도서관, 영상실, 체육관, 음악실, 미술실, TV 스튜디오, 놀이터

주) 입: 입학금, 등: 등록금, 수: 수업료, 공: 공채, 버: 버스, 기: 기부금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은 연봉에 포함되며, 소득공제도 없다.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는 누구든지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학제한은 없으며, 중국 반환이후 홍콩 현지학교의 영어교육이 중국어교육으로 대체되면서 현지 내국인들도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외국인학교로 입학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여, 1년이 넘는 대기자 리스트를 갖고 있는 학교가 다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⁸⁾

(3) 대만

대만에는 한국학교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학교 등 총 16개의 외국인학교가 있다. 외국인학교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타이베이 북쪽 지역의 티엔무와 양밍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대만의 외국인 자녀교육비는 연간 US\$10,000~ US\$17,500수준이다. 기부금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학교는 약 US\$2,900 ~7,300수준의 기부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⁹⁾대만의 대표적인 외국인학교인 Taipei American School은 작년부터 기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Taipei British School도 2년전 부터 기부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대만의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

(환산환율 US\$1 = NT\$34.3)

학교명	교육방식	학제	교육비(NT\$)	소재지	시설
-----	------	----	-----------	-----	----

Taipei American School	미국식	유,초,중,고	입:15,000 등:25,000 기:100,000 수:323,800 ~ 359,400 E:200,000 버:33,540	Tien Mou, Taipei	운동장, 체육관3, 수영장, 도서관, 멀티영상실, 대강당2, 실내외 테니스코트, 컴퓨터실2, 운동장
Taipei Japanese School	일본식	초,중	입:62,250 수:363,540 ~ 442,250 운:33,200 버:102,090	Tien Mou, Taipei	8,200평, 체육관, 수영장, 컴퓨터실, 음악실, 시청각실, 운동장, 테니스장
Taipei European School	영국식 프랑스, 독일식	유,초,중	등:22,000(영) 기:250,000 수:270,000 ~ 328,000 버:54,000 E:20,000 ~ 100,000	Yangminsan, Taipei	체육관, 극장, 운동장, 영상실,
Morrison Christian Academy,	미국식	초,중고,	수:270,000~320,000 등:13,000 숙:286,000 특: 500,000 ~ 70,000	Taipei/ Taichung/ Kaohsiung	도서관, 실험실, 박물관, 기숙사

주) 등 : 등록금, 기 : 기부금, 수 : 수업료, 숙 : 기숙사비, 특 : 특별지도료, 운 : 운영비, 버 : 버스

외국인학교 설립자격은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학교는 토지세 및 소득세에 대해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학교 설립시에는 부지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한가지 사례로 영국학교, 프랑스학교, 독일학교 등이 정부로부터 부지를 지원받아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공동으로 유럽학교(Taipei European School)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Swire Group이 많은 기부를 하였다는 점이다.¹⁰⁾

외국인의 자녀교육비에 대해 가구당 NT\$25,000까지 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입학은 외국인으로 제한되어 있다.¹¹⁾

(4) 중국

중국에는 외국인이 취학 가능한 학교가 40여개 있으며, 상해 등 외국인 주거지역에 외국인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중국은 교육수준의 국제화를 위하여 Oriental Pearl School,

Yew Chung Beijing Inter'l School 등 외국자본에 의해서 설립된 외국인 학교를 다수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eijing Concord College of Sino/Canada와 같이 중국정부와 외국학교법인이 합작으로 설립한 외국인학교도 있다.

중국의 교육비는 연간 US\$9,200~20,300수준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해지역에서는 평균 US\$23,000정도의 학비를 받고 있으며, 베이징 및 핑조우에서는 평균 US\$15,000정도의 학비를, 파리엔에서는 평균 US\$4,000정도의 학비를, 칭따오에서는 평균 US\$13,800정도의 학비를 받고 있다.

기부금제도는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어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상해 미국인 학교(Shanghai American School) 담당자에 의하면 과거 기부금제를 운영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폐지한 상황이다.

< 중국의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

학교명	교육방식	학비(US\$)	학제	위치	시설
Concordia Int'l School Shanghai	미국식	수:12,500 ~ 15,000 기:6,500 등:200	유,초,중,고	Pudong, Shanghai	68,000s/m,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도서관, 카페테리아, 체육관, 극장, 공작실, 극장, 노트북
Shanghai American School	미국식	수:11,500 ~ 20,000 등:250	유,초,중,고	Pudong/Puxi, Shanghai	24arce, 카페테리아, 도서관, 실험실, 공작실, 컴퓨터실, 운동장, 체육관
Oriental Pearl College	미국식	수:7,200 ~ 7,800 입:1,300 운:700 숙:3,800	초,중,고	Dongguan Guangdong	6만평, 기숙사, 수영장, 운동장, 컴퓨터실, 실험실, 영상실, 음악실, 극장, 도서관
Int'l School of Beijing	-	수:14,300 ~ 16,960 등:200 도:4,000	유,초,중,고	Shunyi, Beijing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Shanghai Singapore Int'l School	싱가포르	수:8,000 ~ 12,000 등:200	유,초,중	MingHang, Shanghai	강당, 체육관, 운동장, 야구장, 농구장, 컴퓨터실, 과학실, 도서관, 음악실,

주) 수: 수업료, 등: 등록금, 기: 기부금, 입: 입학금, 도: 도시세, 숙: 기숙사, 운: 운영비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교육용 비품, 자재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반 중국학교와 동일하게 면세수입이 가능하나 중국내에서 학교용품 구매시에는 면세혜택이 없다. 대학교 이상 연구기관이나, 외국 합작으로 설립된 교육기구가 교재 수입시에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정부는 외국인학교로부터 기업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를 징수하

고 있다.

중국내 외국인학교 설립은 중국내 합법적으로 설립된 외국기구 또는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자투자에 한해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근거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 關於 開辦 外資人資女學校 的 暫行管理辦法) 학교설립시에는 출자금을 등기한 후 중국회계사무소에 출자검증을 받고, 정부에 의해 고정자산 투자항목허가를 받은 경우 은행에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학교 기숙사 건축시에는 재산세, 기업소득세, 인지세, 영업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¹²⁾ 최근 상해에 신설된 학교는 정부로부터 대지, 건물공사 및 시설의 대부분을 보조받은 사실이 있다.¹³⁾

자녀교육비 공제비율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개인소득은 자진신고가 원칙이며, 외국인이 소득 신고시 학비보조금을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을 세무국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녀교육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100% 공제되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에서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CISS 등 일부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기존 중국인 학교도 신청에 의해 외국인을 위한 특별반 개설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지원범위, 입학자격, 학력인정여부 등 관련사항은 외국인 학교와 동일하다.¹⁴⁾

(5) 일본

일본에는 약 120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센다이, 삿포로, 고베, 히로시마 등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국별로는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등 다수의 언어별 외국인학교가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비수준은 US\$12,500~23,700이다.¹⁵⁾ 자녀교육비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상 우대조치는 없으나 수업료, 입학금, 시설 설비비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5%) 비과세 대상이다.

기부금은 1978년 국세청의 "외국인학교 등의 기부금 모집에 관한 과세상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직접세에 관한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기부금 조성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기부금은 비과세 대상(78년 4-6 국세청통달 68호)이며, 외국인학교들은 기업으로부터의 기부금을 운영비(등록금의 약 30%수준)와 시설비에 충당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내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며, 설립절차는 각종학교(외

국인학교) 설립절차에 준한다. 외국인학교는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어 있으며 부가세(소비세)면제 조치는 없다. 단 일부 환급제도가 있긴 하나 외국인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공통사항이다. 예를 들어 업적 악화로 인해 소비세 환급 신청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심사 후 환급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은 공익법인 적용 혜택을 받으며 학교법인의 본연의 사업만을 영위할 경우 都民税 및 법인 사업세는 비과세이다. 수익사업(영어교과서의 판매, 어학학교사업 등)에 대해서도 보통법인의 경우 30%의 법인세가 부과되나 학교법인의 경우 22%가 부과된다.

< 일본의 주요 외국인학교 현황 >

학교명	언어	학제	교육비(JP¥)	소재지	시 설
Nishimachi International School	미국식 일본식	유,초 중	입:310,000~320,000 수:1,892,000 시:450,000~500,000 교:90,000	동경 Azabu	컴퓨터실, 개인PC, 천체관측실, 도서관
The British School In Tokyo	영국식	유,초 중,고	입:10,000 등:250,000 수:1,880,000 시:300,000	동경 Shibuya	과학실, 체육관, 운동장(잔디), 놀이방, 도서관, 미술실, 수영장
American School in Japan	미국식	유,초 중,고	입:20,000 등:300,000 수:1,922,000 가:100,000 시:400,000 E : 300,000	동경 Chofu	5.5 hectare 도서관(4), 수영장, 컴퓨터실, 강당, 미술실, 식당, 체육관, 과학실, 운동장,, TV 스튜디오
Osaka /Senri Int'l School	미국식 일본식	유,초 중,고	입:30,000 등:150,000 수:1,300,000 ~1,580,000	오사카 Mino	체육관, 과학실, 음악실, 천체관측실, TV 스튜디오, 컴퓨터실, 도서관, 극장, 헬스장, 운동장, 식당, 수영장, 다다미방

학교설립시에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없으나 학교부지 및 정부보조금 등을 각 도·도·부·현(우리나라의 광역지자체에 해당)에서 지원해준다. 도쿄도의 경우 "사립 외국인학교 교육 운영비 보조금" 지원규정에 의해 연간 1인당 15,000엔(직접 외국인학교에 보조)을 일반예산에서 보조받고 있으며(보조금 성격은 아니나 인가된 학교법인 소속 학생의 경우 통상요금의 1/2로 할인된 가격으로 전철 통학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음), 코베나 요코하마 등은 지자체에서 학교시설과 부지의 많은 부분을 보조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각 시·구·정·촌(市區町村) 단위에서 외국인 학부모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12,000엔~192,000엔 수준(평균 20,000엔)의 자녀교육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¹⁶⁾

내국인에 대한 입학제한은 각 학교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영어구사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American School의 경우에는 영어교육학교에 3년이상 재적하거나 입학 심사시 어학능력에 대한 성적증명이 가능한 자, 일본인 귀국자는 귀국 1년 이내 출원한 자, 양친 가운데 한 사람의 영어 회화력이 충분한 경우로 제한된다.

3) 문제점 및 외국사례

(1) 높은 학비

외국인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자녀교육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 조사시 외국인 학부모의 33.9%가 학비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 외국인학교의 교육비는 연간 US\$15,000 수준으로 경쟁국에 비해 절대 금액면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비중이 높으며 또한 외국인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수준은 자국의 교육수준에 다소 뒤떨어지면서 학비지출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부터 외국인에 대한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주택수당, 자녀교육비 등 해외근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40%까지 확대하였다.

일본에서는 지자체별로 외국인 학부모에 대해 자녀 1인당 연간 ¥12,000~¥192,000 수준(평균 ¥20,000)의 자녀교육비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주고 있다.

(2) 기부금 제도

외국인학교의 시설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부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외국인학부모의 46.3%가 필요(불필요 18.6%) 하다고 응답하였다. 서울외국인학교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학교 등 많은 외국인학교들이 기부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학부모의 학비경감 및 외국인학교 재정지원 차원에서의 기부금제도 도입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기업에서 임직원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 학교측에 기부금을 전달함으로써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부담도 감소하게 되고, 학교측 입장에서는 수업료에만 의존하고 있던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시설 개선 및 우수교사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과 같은 경쟁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허용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기부금과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채구입이 거의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에서 의무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3) 내국인 입학제한

국내 외국인학교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와 관련된 문제는 오랜 숙원이다. 서울외국인학교를 비롯한 불과 몇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경영에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해외근무 내국인이 자녀교육 문제로 귀국을 회피하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일부 부유층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계 외국인 자녀가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언어소통 문제이다. 그러므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은 해외 거주년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 구사능력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조건 완화는 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외투기업의 한국인 임직원 자녀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외국인학교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에서 강하게 희망하는 부분이다.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관련규정(안)에 의거 내국인의 국내 외국인학교 입한 조건은 현행 해외거주기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경쟁국의 경우를 보면, 싱가포르의 경우만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교육기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어 입학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홍콩은 외국어 구사여부로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내국인에게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해외수학기간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나 사실상 해외수학기간과 관계없이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선시 된다. 중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 입학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영상으로는 지방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 내국인의 입학도 허용되고 있다.

(4) 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외국인학교는 대부분 시설낙후, 공간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독일학교, 일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공간이 협소하여 매우 불편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개교 후증·개축이 거의 없어 시설 또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럽상공회의

소에 의하면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한국소재 대부분의 외국인학교 시설은 수준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외국인 학교설립 지원이 두드러지고 있다. 홍콩, 대만의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시 학교부지를 장기간 무상임대해 주고 있다. 중국 상해의 경우에는 학교부지뿐만 아니라 공사 및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외국학교 법인과 합작으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한 사례도 있다.

(5)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현재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3년 3월 1일 입법을 앞두고 있었던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이 각종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입법이 무기한 연기됨으로 인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가 등 외국인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가 대폭 늦어지게 되었다.

싱가포르, 일본 등과 같은 경쟁국가에서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투자유치 강국들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 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안)」에 의하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는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근거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한정하고 있다.

4) 외국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제안

(1) 높은 교육비 문제 해소

교육비 수준은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부금 등 학교입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만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금액 자체는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학교시설과 국민소득 대비 교육비를 비교하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각국의 American School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연간 교육비는 한국은 1인당 GDP의 1.75배인 US\$17,500, 싱가포르는 0.81배인 US\$ 17,700, 홍콩은 0.49배인 US\$ 11,800, 대만은 1.16배인 US\$ 14,542 그리고 일본은 0.63배인 US\$19,800이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높은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거나 일본과 같이 정부 차원의 학비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비의 일부로서 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2) 기부금제도 도입

KISC실시 외투기업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학교의 시설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기부금제 도입에 대하여 외국인 학부모의 46.3%가 필요(불필요 18.6%)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외국인학교인 서울외국인학교, 독일학교, 영국학교, 프랑스학교 등도 기부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인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등이 기부금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고액의 공채구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부금제 도입은 우리나라 외국인학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200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에 3대해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3)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한국 국적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해외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으로 완화하는 문제는 독일학교, 프랑스학교와 같은 학생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오랜 숙원이다. 경쟁국의 경우 싱가포르만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해외 수학기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어 입학제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고 있다. 홍콩,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거주기간보다는 외국어 능력을 우선시 한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입학자격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는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 국적학생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외국인학교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에서도 강하게 희망하는 사항이다.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파견했던 한국인 직원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조기귀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회사운영상 고충으로 제기하고 있다.

학생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학교 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에게 적기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임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기업 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조속 입법화하여 입학조건을 3년 이하로 완화하거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 설립 및 운영지원

우리나라의 외국인학교들은 대부분 공간 부족과 시설낙후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일본학교, 독일학교는 공간부족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투자유치 경쟁국들은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건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홍콩의 경우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외국학교법인과 합작으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산업자원부와 서울시가 다국어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학교, 프랑스학교 등 학교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학교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대부분의 외국인 학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인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우리나라를 기피하지 않을 만한 경쟁력 있는 다국어학교 설립에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외국인학교 설립자격

우리의 경쟁국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미국, 독일, 영국 등 투자유치 선진국들 또한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자유경제지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유경제지역내의 외국인 학교 설립이 전면 자유화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자유경제지역과 외국인 거주지역과의 거리도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외국인학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선호하는 지역에 좋은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나라도 내국인에 의한 외국인학교 설립을 허용하여 외국인학교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우수교사 확보

외국인학교 교사의 질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들의 불만사항 중 하나인데, 외국인학교에서는 우수교사 유치의 걸림돌로서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보상도 충분하지 않고 교사들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 또한 2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우수한 자질을 갖고 있는 외국인 교사들은 한국근무를 꺼리고 있다고 한다. 우수 외국인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교사에 대한 면세 혜택기간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VISA 발급에 있어서도 보다 유연성이 필요하다. 한 예로 이미 입국해 있는 사람을 교사로 고용이 불가능하며, E-1비자의 발급신청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7) 지역별 학교 및 학생 편중 해소

한국내 외국인학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실제로는 몇몇 학교로 학생이 몰리고 있는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이며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 인가된 외국인 학교 43개교 가운데 22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학생 수도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도시에는 1개 정도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정원에 미달하는 사례가 다수이다.

수도권에는 다국어학교 설립지원 등으로 학교부족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지방은 전라북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수학교 설립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여 수도권으로의 편중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대전국제학교와 같이 보딩스쿨 운영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8) 학력 인증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외국인학교 졸업시 학력인증이 되지 않고 있다. 상급 학교 진학시 검정고시를 보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미국계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경쟁국들은 IB Program 을 운영하여 외국인학교 졸업 후 바로 본국 또는 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에 있는 우수학교 재단을 유치하여 졸업시 본국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어 바로 대학진학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현재 제정이 진행중인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외국인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학력인증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의 우수 학교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의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에서는 외국인 교육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교육 분야 14개 개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04년 6월 까지 개선 완료된 과제는 경남외국인학교 설립, 외국인학교 입지지원, 특례기부금 인정, 총급여액 단일세율 적용 등 4개 과제이다. 나머지 10개 과제는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주

- 1)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 2) 조선일보컬럼 "태평로"(2003.7.11)
- 3) 전경련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과제"(2003.6.24)
- 4) KOTRA 조사
- 5) 서울외국인학교(SFS) 조사자료
- 6) KOTRA조사, Living in HongKong(AMCHAM)
- 7) 서울외국인학교(SFS) 조사자료
- 8) 지금 세상은 - 동남아의 영어배우기 열풍(2001. 8.27, http://www.skynews.co.kr/skynews_main/focustrends/nowworld/nowworld_037.htm)
- 9) KOTRA조사
- 10) 서울외국인학교(SFS) 조사자료
- 11) 무역관 조사
- 12) 대학교 기숙사의 세수관련 통지(關於經營高校學生公寓有關稅收政策的通知, 2002.10.8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표)
- 13) 서울외국인학교(SFS) 조사자료
- 14) 사회문교사업의 예산관리기업 재무관리에 대한 임시조치(社會文化事業全額預算管理單位財務管理暫行辦法, 재정부)/ 중외합작학교설립 임시규정(中外合作辦學暫行規定)/ 과학연고와 학교용품수입시 면세관련 임시규정(科學研究和科學用品免徵進口稅收暫行規定)/ 上海外商投資服務中心 Mr.Chen Yu, SAS 제희숙 등 인터뷰
- 15) KOTRA 조사자료
- 16) 民族教育のあり方 -在日朝鮮人教育を例として-(宇都宮大學國際學部國際社會學科 野村綾, 石見 多恵)

2. 외국인 의료서비스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

(1) 일반적인 인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수준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않는 다른 투자유치경쟁국과 마찬가지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들은 외국어 의사 소통면에서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적은 종합병원내의 외국인진료소나 외국인 전문 클리닉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주)외국인진료소란 영어로 *International Clinic, International Health Center, 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등으로 불리우며, 외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내에 설치·운영되거나 또는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Clinic*을 의미한다.

종합병원의 외국인진료소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진료소의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험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의료비용을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익을 주 목적으로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하 의료보험)은 외국인들에게 임의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거나 가입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급여 수혜범위가 적어 혜택을 거의 기대할 수 없어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도 있다. 외국인진료병원이 의료보험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 인식을 더욱 강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많이 들고 이 때문에 큰 병이나 수술은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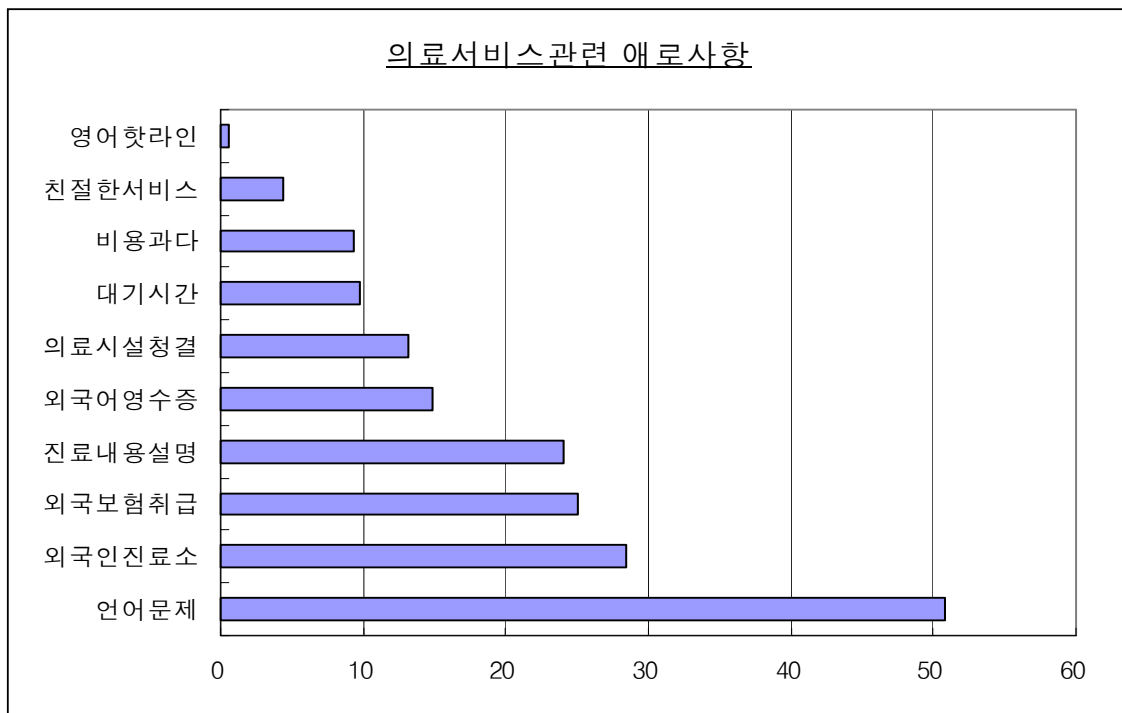
(2) 외국인의 불만사항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2003년 6월 실시한 "외투기업 임직원을 위한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 의료서비스 분야는 교통 분야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의 21.9%가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하였다.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 등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이다. 언어문제는 다른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의료분야는 생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진료병원에서의 의료급여 직접 수혜 불가 및 의료비 차별적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도 진료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의료시설 및 의료용구의 청결문제, 과잉진료, 예약제도 미정착, 영어 핫라인 미운영 등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에 지적된 모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진료병원 운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의사소통에 따른 언어문제 다음으로 비중 높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외국인 의료시설관련 법령

외국인진료병원을 관리하기 위한 독립 또는 관련 법령은 없으며 의료법의 지배를 받는다. 현재 외국인진료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입법되어 200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인에 의한 외국전용병원 및 약국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분야의 문제점은 이 경우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06835호

제 23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 ①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 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 ② 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 구역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 졌다. 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자를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곳의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이다. 의료계는 국내병원은 영리병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외국병원은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²⁾

현행법상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의료수가 체계에서 진료행위를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이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³⁾

(4) 외국인진료병원 현황

국내에서 외국인진료병원, 외국인진료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외국인 진료소는 의료기관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이 허가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 주요 외국인진료병원 현황⁴⁾ >

병원명	영어지원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	.Home Page .안내전화 .접수.진료 .영수증 .처방전(수기)	응급실 구급차 응급전화	.예약중심 .전화예약	.현금,카드 .후불계약 가능
서울삼성병원 국제진료소	.Home Page .안내전화 .접수.진료 .영수증 .처방전(수기)	응급실 구급차 응급전화	.예약중심 .전화예약	.현금,카드 .의료보험 안됨 .현금,카드 .후불계약 가능

병원명	영어지원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서울대학병원 국제건강관리소	.Home Page .안내전화 .접수.진료 .영수증 .처방전(수기)	응급실 구급차 응급전화	.예약중심 .전화/팩스 .이메일	.현금,카드 .의료보험 안됨
순천향대학병원 국제클리닉	.Home Page .안내전화 .접수.진료 .영수증 .처방전(수기)	응급실 구급차 응급전화	.예약중심 .전화예약	.현금.카드 .의료보험 안됨 .국제보험HMO,PPO .후불계약 가능
서울아산병원 국제클리닉	.Home Page .안내전화 .접수.진료 .영수증 .처방전(수기)	응급실 구급차 응급전화	.예약중심 .전화예약	.현금,카드 .의료보험 .SOS,Allianz, HTH, IMA.지불보증 .후불계약 가능

참고로 우리나라의 주요 외국인진료병원은 상기 병원외에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부산침례병원, 부산대학병원, 전남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 연세모아병원, 시화종합병원, 청주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한양대학병원 등으로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해당된다.

2) 경쟁국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

< 투자유치경쟁국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비교 >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외국인진료 병원	주요 병원별로 외국인진료소 운영	외국인전용병동 및 외국계 병원	없음	주요 병원별로 외국인 진료소 운영	없음
언어문제	외국인진료소의 경우 문제 없음	외국계 병원 및 외국인진료소의 경우 문제 없음	모든 병원에서 문제 없음	모든 병원에서 문제 없음	모든 병원에서 대체로 문제
외국계 의료보험	일반적으로 미취급	외국계병원 및 외국인진료소의 경우 통용	외국계병원의 경우 통용	미취급	미취급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외국인의 국가의료 보험가입	국영 의료보험 임의가입	국영 의료보험 임의가입	국영 의료보험 없음	국영 의료저축 의무가입	국영 의료보험 의무가입
영어 메디컬 핫라인	· 독립라인 없 으며 3자통화 방식 · 외국인진료소 단위 운영	· 독립라인없음 · 주요병원단위 운영	· 독립라인운영 · 주요병원단위 운영	· 독립된 2개 라인 운영. · 주요병원단위 운영	· 외국어 독립 라인 운영 · 주요병원단위 운영
예약제도	외국인진료소의 경우 정착	외국인 진료병 원의 경우 정착	사립병원의 경우 정착	모든 병원 에서 정착	· 초진 불가 · 재진 필요
의료비용 차등	종종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외국계 병원과 중국계 병원간 차별	사립과 시립간 의 차이	비거주자에 대해서 차등	추천인없는 경우 차등

(1) 중국

중국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은 한국보다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도시와 지방간의 의료수준의 차가 매우 심하다. 베이징, 상하이, 쑹조우 등 주요 도시에는 서양인들이 운영하는 서구스타일의 병원들과 정부가 운영하는 VIP WARD (Gaogan Bingfang)가 있다. 이들 병원들은 선진화된 의료 장비와 지식이 풍부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구사가 가능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한다.⁵⁾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국인 전용병원의 설립을 지원하거나 정책적으로 외국의 우수 병원을 유치하고 있다.⁶⁾

국민의료보험 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임의가입조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사립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외국계 의료보험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Blue Cross Blue Shield, Beijing United Family hospital,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등 북경 및 상해소재 주요 외국인진료병원에서는 외국계 의료보험이 통용된다.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는 주요 대형병원에서는 Credit Card로 의료비용 지불이 가능하다. 의료비용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진료병원의 경우시설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일반병원보다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진료비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중국의 주요 외국인 이용병원 현황⁷⁾>

병원명	영어서비스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Beijing SOS Inter'l Clinic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구급차 응급전화	예약가능 전화예약	.현금,카드 .외국보험
The First People's Hospital (상하이)	.국제의료보건센터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응급실 응급전화 구급차	예약가능 전화예약	.현금,카드 .외국보험 (AEA, GESA, SOS)
Hua Dong Hospital (상하이)	.외국인전용병동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구급차	예약가능 전화예약	.현금,카드 .외국보험
Hua Shan Hospital (상하이)	.외국인전용병동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가능 .전화예약	.현금,카드 .외국보험
Beijing United Family Hospital (미국합작) (북경,상해)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가능 .전화.팩스	.현금,카드 .외국보험

대표적인 외국인 진료병원인 Beijing United Family hospital은 전액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종합병원으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병원에서는 자체 응급전화와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를 비롯한 불어, 독어, 일어, 서어 등 외국어 진료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요도시별로 외국인진료병원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메디컬 핫라인은 SOS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Alarm Center가 24시간 외국인에게 OPEN되어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구급전화 120 이외에도 중국내 주요 병원 역시 개별적으로 영어 메디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구급차는 주요 병원별로 보유하고 있으나 도착지연 및 보유 장비가 열악하여 구급차 보다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인근 지 병원으로 가는 것이 권유되고 있다.

지방 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이 대체로 열악하며, 외국인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의 지방 여행자 또는 단기 거주자는 보통 여행자보험이나 주재국의 의료보험을 소지하고 입국한다. 외국계 의료보험은 대형병원이 아닌 경우 통용되지 않으며 선지불 후 보험회사에 후 청구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보험 청구용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다.

(2) 홍콩

홍콩의 의료시설은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으며, 의료진 역시 선진국에서 학위를 받은 인재들이 많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영어구사 인력이 많아 외국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다.

< 홍콩의 주요 외국인 이용병원 현황⁸⁾>

병원명	영어지원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Hongkong Adventist Hospital	.Home Page .전화상담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필요 전화예약	.현금,카드 .주요외국보험 .예치금
Matilda Inter'l Hospital	.Home Page .전화상담 .접수.진료, 영수증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가능	.현금,수료,카드 .예치금 .주요외국보험
Canossa Hospital	.Home Page .전화상담 .접수.진료, 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일어전용라인	예약가능	.현금,카드,수표 .주요외국보험 .예치금 .회사.보험지불보증서
Queen Mary Hospital(시립)	Home Page 전화상담 접수, 진료 영수증, 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Triage system	예약필요 전화예약	현금, 수표
Prince of Wales Hospital(시립)	Home Page 전화상담 접수, 진료 영수증, 처방전	응급전화 응급실 Triage System	예약가능	현금, 카드, 수표 예치금

주) triage system : Patients a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medical condition

의료시설은 시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크게 양분된다. 사립병원은 시설 및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반면 의료비용이 매우 비싸며 예약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대기시간이 매우 짧다. 진료시간 후에도 환자를 접수하는 병원들이 많다. 반면 시립병원은 시설 및 서비스의 질은 사립병원보다 떨어지는 반면 ID Card만 보여주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⁹⁾

의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없으며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홍콩에는 200여개의

보험회사가 있으며 취급보험도 건강보험부터 여행자보험, 골프보험까지 다양하다. 회사원인 경우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외국계 의료보험이 진출해 있으며, 대형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지방이나 소형병원의 경우에는 외국계 의료보험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의료비용을 credit card 또는 현금으로 선지불한 후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의료비용은 사전에 예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의 지불보증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은 매 3일 또는 5일단위로 정산한다. 메디컬 핫라인은 주요 병원별로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999번은 Emergency Hotline으로 구급차를 부르기 위한 전화이다. 구급차는 소방서 소속이며 24시간 Emergency Hotline을 이용하여 가능하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차는 없다. 홍콩 병원당국에 등록된 15개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대응 수준을 구분하는 Triage System에 의거 응급환자를 치료한다.¹⁰⁾

병원에 관한 정보는 의료협회에서 발간하는 The medical and dental directory of Hong Kong에 실려 있다.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의료수준은 비교적 우수하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은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모든 병원들이 선진화된 의료기기와 우수한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사들을 Pool제로 운영한다. 국립병원의 의료서비스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권자와 고용비자 보유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언어문제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즉 의사진과의 의사소통, 영어 영수증 발급 등이 자유롭다. 주요병원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영어 또는 중국어 구사를 못하는 외국인의 진료편의를 목적으로 한다.

싱가포르에는 국영 의료보험 제도는 없으나 대신, 국민 개개인이 연령에 따라 연간 소득의 6~8%를 의료저축예금(MediSave)에 강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간단한 의료비용은 자신의 의료저축예금에서 지불된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보험인 메디실드(Medishield)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¹¹⁾

< 싱가포르의 주요 외국인이용병원 현황¹²⁾>

병원명	영어지원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Singapore General Hospital	.외국인진료소Int'l Medical Service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중심 .Internet .전화/팩스 .eMail	.현금,카드,수표 .Medisave .전자결제(NETS) *비거주자 차별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외국인진료소Int'l Patient Liaison Center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중심 .소개우선 .전화/팩스 .Internet	.현금,카드,수표 .Medisave .전자결제(NETS) *비거주자 차별
KK Women's and Children's Hospital	.외국인진료Int'l Patient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중심 .전화 .Internet	.현금,카드,수표 .Medisave .전자결제(NETS) *비거주자 차별
Changi General Hospital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중심 .Internet .전화	.현금,카드,수표 .Medisave .전자결제(NETS) *비거주자 차별
Alexandra Hospital	.Home Page .안내/응급전화 .접수/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중심 .소개우선 .전화/팩스 .Internet	.현금,카드,수표 .Medisave .전자결제(NETS) *비거주자 차별

외국계 의료보험은 통용되지 않으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싱가포르계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입원시 예치금으로 2,000불 정도를 지불하고 퇴원시에 정산한다. 일반적으로 병원들은 기준요금표를 가지고 있으며 진료전에 요금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러나 의사의 명성에 따라 의료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의 경우 보통 30%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응급전화는 2개로 구분되어 있다. 생명과 관련된 응급상황의 경우 995 그리고 두통, 설사 등 일반 응급상황의 경우 1777을 사용한다. 시간외 전화센터(전화 9 4 8 6 5)에서는 의사의 왕진을 수배해 준다. 응급차는 회당 50불이 적용된다. 핫라인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을 위한 핫라인은 없다. 예약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병원 방문전에 반드시 예약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평균대기 시간은 30분이내이다.¹³⁾

(4) 일본

일본의 의료수준은 매우 높다. 의사 및 의료장비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의 경우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의사들도 많아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병원들은 영어구사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적의 대처하고 있다. 이의 보완책으로 지자체 단위로 외국인이 진료 가능한 병원을 소개하거나 통역을 앞선했 주고 있다.¹⁴⁾

< 일본의 주요 외국인이용병원 현황¹⁵⁾>

병원명	영어지원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Keio University Hospital (Tokyo)	.Home Page없음 .안내.전화 제한적 .진료 가능 .영수증(수기) .처방전 불가	.응급실 .응급전화없음	.재진예약 .면담예약 .전화변경	.국민보험 .현금 .카드불가
St. Luke's International Hospital (Tokyo)	.Home Page일부 .안내.전화 제한적 .진료가능 .영수증 .처방전 불가	.응급실 .응급전화없음	.재진예약 .면담예약 .전화변경	.국민보험 .현금 .카드불가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of Japan (Tokyo)	.Home Page .안내.전화 제한적 .진료 가능 .영수증 불가 .처방전 불가	.응급실 .응급전화없음	.재진예약 .면담예약 .전화변경	.국민보험 .현금 .카드불가
Kobe University Hospital/The International Patient Center	.Home Page일부 .안내.전화 제한적 .진료 가능 .영수증(수기) .처방전 불가	.응급실 .응급전화	.재진예약 .면담예약 .전화.팩스변경	.국민보험 .현금 .카드불가
Osaka university Hospital	.HomePage일부 .안내.전화 제한적 .진료 제한적 .영수증불가 .처방전불가	.응급실 .응급전화없음	.재진예약 .면담예약 .전화변경	.국민보험 .현금 .카드불가

일본에서는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다. 외국인등록을 필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의료비용의 30%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의료비용은 매우 비싸며 의료보험증 제시가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

에 의료보험이 없는 경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 대부분의 외국인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Blue Croos/Blue Shield와 같은 외국보험은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비용을 먼저 개인이 지불한 후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¹⁶⁾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영어 영수증 및 처방전은 일반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영어 영수증 또는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 종합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이 수기해 주고 있다.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은 환자의 대형병원 집중을 막기 위하여 특정기능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1차 진료소로부터의 소개장이 없는 경우 특정의료비를 받는다.¹⁷⁾

따라서 종합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3,000엔 수준의 의료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예약제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의 진료체계는 '3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진단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의료정보서비스 전화(5285-8181)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스페인어로 서비스 되고 있다.

구급차는 소방서에서 제공하며 119번을 누르면 약 10분 후에 도착한다. 문제는 영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대만

대만의 일반적인 의료 환경은 일반진료 및 응급처치 면에서 양호하다. 의사들 중에서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 실력이 우수하고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도 많다. 의학대학의 교재가 대부분 서양의 원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의료진의 영어 능력은 우수하다. 병원시설 면에서도 전산에 의한 정보처리가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된다. 의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고용되어 있다.¹⁸⁾

4개월 이상 거주비자 보유시 국민의료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여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 부담률은 30%이다. 학생들에게는 종합사고보험이 제공된다. 4살 이하의 어린이는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에 의거 무료치료를 받는다.¹⁹⁾

외국계 의료보험은 통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의료비용 청구를 위한 영어영수증 발급은 일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약제는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병원의 경우에도 1차 진료소의 소개서 없이도 예약 및 진료가 가능하다.

< 대만의 주요 외국인이용병원 현황²⁰⁾ >

병원명	영어지원	응급지원	진료예약	비용정산
Nation Taiwan University Hospital	.Home Page .안내,진료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가능 .전화예약	현금,card 의료보험
Taiwan Adventist Hospital	.외국인진료Priority care center .Home Page .안내.진료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구급차	.예약가능 .전화,온라인	현금,card 의료보험
Taipei Veterans General Hospital	.Home Page .진료.안내.전화 .영수증.처방전	.응급실 .응급전화 .구급차	예약가능 전화예약	현금,card 의료보험
Mac Kay Hospital	.Home Page .안내,진료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가능 전화.메일	현금,card 의료보험
Chang Gung Memorial Hospitals	.Home Page .안내,진료	.응급실 .응급전화	예약가능 전화	현금,card 의료보험

외국인을 위한 메디컬 핫라인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소방서의 전화(119)가 응급전화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영어 통화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구급차는 무료인 소방서(119)의 구급차를 이용하며, 타이페이 등 주요 도심의 의료기관도 보유하고 있으나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준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지방의 구급차 수준은 매우 열악한 편이다.

3) 문제점 및 외국사례

○ 언어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언어문제이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또는 전문 외국인진료소의 경우에도 의사와의 상담은 가능하나 간호사 등과의 의사소통에는 다소 문제가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응급사태 발생시 인근지 병원에서는 거의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어문제는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지 않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병원소개 및 진료통역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계 병원을 적극 유치하여 외국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건강관리센터(Healthcare System)가 통역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들을 위하여 무료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료 통역서비스 제공의무는 응급상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²¹⁾

○ 의료보험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에 대해 임의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부족, 외국인 진료병원의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보험급여 범위협소, 자국 또는 회사 의료보험 가입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계 의료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의료보험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취급하는 의료기관이 전무하다.

유럽의 EEA회원국의 경우 상호주의에 의거 자국의 의료보험이 회원국에서도 통용이 되고 있다. 중국도 독일과의 사회보장제 이중과세방지 협정으로 양국간 의료보험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²²⁾ 체코의 경우에도 주변국들과 상호협정에 의거 협정국에 대하여 외국인 환자의 내국인 대우와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영어 메디컬 핫라인

우리나라는 Medical Hotline1339를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전용라인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Medical Hotline1339는 3자 통화방식에 의거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중국어로 서비스를 주간에만 제공하고 있다. KISC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자중 1339번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핫라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홍보부족과 영어전용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전용병원의 응급전화에의 의존이 높다.

우리나라의 투자유치경쟁국의 경우에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여 언어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메디컬 핫라인과 유사한 외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안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와 유사한 외국인전용

불편신고 전화 6522-5486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HELPLINE을 운영하고 있다.

○ 예약제도

우리나라는 시스템상 예약제도가 있으나 실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약 10%가 대기시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예약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은 초진의 경우 예약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진은 예약이 필수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면에서 예약을 하여도 대기시간은 보통 30분 이상이다.

예약제도는 구주 지역에서 가장 잘 정착되어 있다. 하지만 예약제도는 지역 또는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가 아니라 사보험이 발달된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한 예로 선진국이며 국영의료보험 중심인 일본의 경우 예약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나, 사보험이 발달한 콜롬비아의 경우 예약제도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으면서 환자당 진료시간도 기본적으로 30분정도 이다.

○ 의료비용의 차별적 적용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13.9%가 높은 의료비용을 지적하였다. 의료비용이 높은 이유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병원들은 의료법상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2002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기준 우리나라보다 투자유입액이 많은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의료비용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었다.

독일, 덴마크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사립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이 내국인 보다 높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장기거주 외국인에게도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의료비용의 차별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²³⁾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운영 병원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의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거주자 및 사립병원은 통상 정부병원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4)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

○ 외국인진료병원 육성

국내 거주 외투기업 임직원들은 외국인진료소 운영기준 마련이 언어문제 다음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인진료병원 육성은 현재의 제도권내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 중 일본을 제외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등이 언어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스타일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진료소 설치에 병원의 임의 사항이다.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진료소 설치를 막고 외국인진료소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외국인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에 따른 수익보장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진료병원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방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중 시설이 우수한 병원을 외국인진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로 국한되어 있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설립 제한을 풀고 외국의 우수병원을 유치하여 전체적인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외국인진료병원 종사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

우리나라의 외국인 진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문제이다. 외국인투자지원센타가 2003년 6월에 실시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이상이 언어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투자유치 경쟁국 가운데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상황은 비슷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0년전부터 외국인 전용병원 또는 외국인 진료병원 설립을 추진하여 언어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외국인을 위한 병원안내 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진료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언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진료병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진료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영수증 등 외국인 환자에게 전달되는 서류들이 영어로 발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국민의료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부터 의료보험 수혜불가, 보험급여범위 협소 그리고 본국 사회보장 제도와 중첩된다는 것이 주원인이다. 부수적으로 홍보부족, 임의가입조건 등이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되는 병원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쟁국 중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강제사항이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률이 100%에 가깝다. 또한 중국, 홍콩의 경우 의료보험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의료보험도 외국인 진료병원에서는 통용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의료비용 문제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의료보험 적용대상 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럽의 예에서와 같이 주요 투자 유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 또는 최소한 외국인진료병원에서 만이라도 외국계 의료보험으로 직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영어 메디컬 핫라인 설치

우리나라는 외국인 전용 메디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재 3자 통화방식의 메디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자의 인지도는 거의 없는 편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의 메디컬 핫라인 이용건수는 전무하였다.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진료병원의 핫라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국중 일본, 홍콩이 외국인을 위한 메디컬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영어 비구사자를 위한 메디컬 핫라인을 주요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영어 메디컬 핫라인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사안이므로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용률이 적다고 하여도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우선 전화번호 1개를 외국인 전용 메디컬 핫라인으로 지정하여 간단한 의료상담과 의료기관 안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성 면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외국인 진료소 의존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모든 외국인진료병원에 영어 메디컬 핫라인 도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예약제도 준수 및 진료시간 연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진료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든 병원이 사전예약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대기시간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예약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병원들이 진료환자수를 늘리기 위하여 진료능력 이상으로 진료예약을 받기 때문이다. 투자유치경쟁국 가운데 싱가포르, 홍콩의 경우 우리나라 평균진료시간의 2배 수준인 30분 정도이다.

예약제도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환자당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진료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 사립병원에 대해 의료비용의 차별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중 하나인 진료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도 환자 1인당 진료시간 연장은 절실한 사항이다.

○ 의료비용 적용기준 합리화

우리나라의 외국인진료병원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이 통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진료병원의 입장에서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인력과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비용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비용 차별은 내국인/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즉 사립병원이나 국공립병원이나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비용의 차별적용도 필요하다. 싱가포르처럼 필요하다면 병원 등급제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의료비용의 차등이 내외국인 기준이 아닌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5) 정부의 외국인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분야에서는 10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노력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완료된 과제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1개 과제이다. 나머지 과제는 200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자료

- 1) 외투기업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3)
- 2) 한겨레 신문 2001.11.29
- 3) 외국 병원자본들 국내 시장조사 완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보 2002.4
- 4) <http://www.severance.or.kr/en//index.asp>
<http://www.samsunghospital.com/english/>
http://web.snuh.org/English/for_visitors/index.html
<http://hosp.sch.ac.kr/ic/ic-main.html>
<http://www.amc.seoul.kr/~int/>
- 5) 미국무청 http://travel.state.gov/tips_china.html
- 6) JOMF 각국의 의료 정보
- 7) <http://www.internationalsos.com/countries/China/>
<http://www.hsh.stn.sh.cn/waibin/index.php>
<http://www.beijingunited.com/>
- 8) http://www.hkah.org.hk/en_hopro.html
<http://www.matilda.org/welcome.asp>
http://www.canossahospital.org.hk/eng_eng_index.htm
<http://www3.ha.org.hk/qmh/index.htm>
<http://www3.ha.org.hk/pwh/Index.html>
- 9) Living in Hongkong, AMCHAM
- 10) Hospital Authority, HongKong <http://www.ha.org.hk/>
- 11) 국민연금연구센터
- 12) <http://www.sgh.com.sg/>
<http://www.nuh.com.sg/>
<http://www.kkh.com.sg/index.cfm>
<http://www.cgh.com.sg/>
<http://www.alexhosp.com.sg/>
- 13) 싱가포르무역관 조사
- 14) 국제의료정보센터 <http://homepage3.nifty.com/amdack/>
- 15) http://www.hosp.med.keio.ac.jp/keio_hpn.htm
<http://www.luke.or.jp/>
<http://www.imcj.go.jp/hosp/hospital.htm>
<http://www.hosp.kobe-u.ac.jp/welcomj.html>
<http://www.hosp.med.osaka-u.ac.jp/>
- 16) Living in Japan, ACCJ
- 17) <http://www.hosp.med.keio.ac.jp/annai/byoin/index.htm>
- 18) Japan Overseas Medical Fund 각국의 의료사정
- 19) Republic of China Yearbook Taiwan 2002
- 20) <http://ntuh.mc.ntu.edu.tw/Secret/Ntuh/english/intro/intro-main.htm>

http://www.tahsda.org.tw/eng_tah2/index7.html

<http://www.vghtpe.gov.tw/doce/>

<http://ttw3.mmh.org.tw/>

http://www.cgmh.org.tw/eng2002/ms_main.htm#

21) KOTRA 해외무역관 조사

22) KOTRA 해외무역관 조사

23) KOTRA 해외무역관 조사

3. 외국인 주거환경

1)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거환경

(1) 일반적인 인식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거지역은 주로 외국인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의 편리성과는 크게 관계없이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이나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용산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중구의 순이다. 특히 용산구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14%가 몰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촌 1동, 한남동, 이태원동, 서빙고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거(주택)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기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KISC가 2003년 6월 실시한 외투기업임직원 생활환경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만족은 25.1%에 지나지 않으나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57%에 달했다.(전경련, 외국인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2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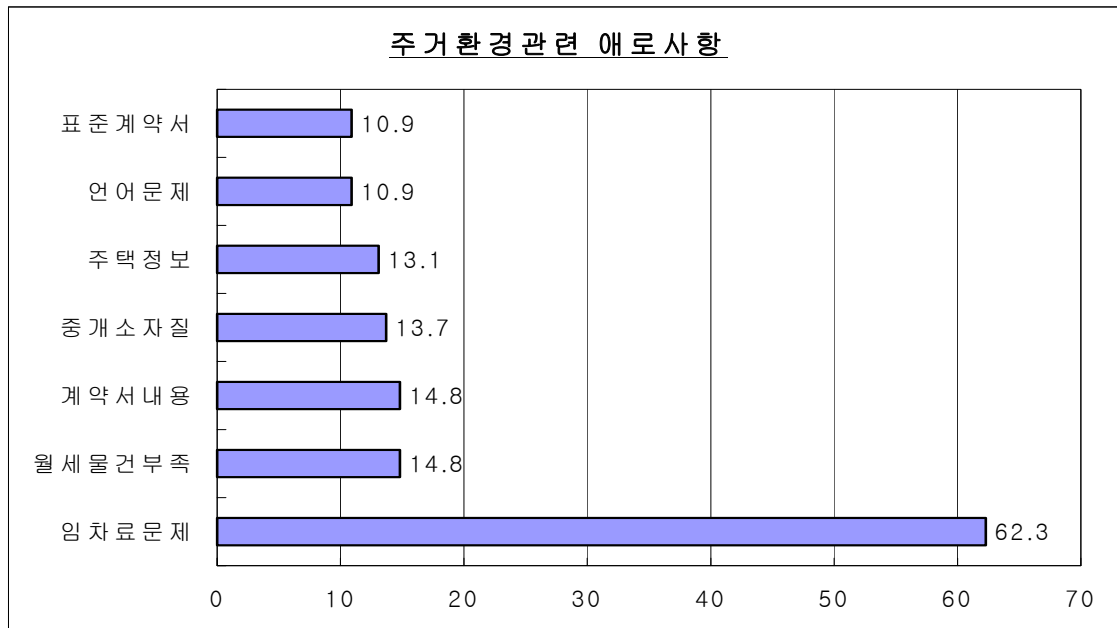
외국인들의 임차료 지불형태는 월세전액선불이 38.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월세 혼합형(17.5%), 순수월세(16.4%) 그리고 전세 순이다. 한편 선호하는 임차료 지불형태는 순수월세가 63.1%로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세 18.4%이며 월세전액선불은 5.7%에 그쳤다 (KISC, 외투기업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 2003.5).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다만 비싼 임차료와 임차료 선불관행 등 임차료에 대한 불만과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2) 외국인의 불만·애로사항

KISC의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애로조사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임차료와 임차료 선불전액요구 등 임차료 관련문제를 꼽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75.4%가 임차료와 관련된 사항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임차료 문제 외에 월세물건 부족, 영문임대차 표준계약서 부재, 계약서내용 불충분, 주택 정보부족, 부동산중개인 언어문제, 전세금 적기 미환불, 부동산관련 금융상품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국적별로는 모든 국가가 임대료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미국, 영국, 독일은 계약서내용 불충분 및 임대차표준계약서 부재를 주요 애로사항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3) 외국인 주거관련 법령

현재 외국인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은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 등에 의거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적용을 받는다.

제8조 (표준임대차계약서)

- ①법 제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용과 그 밖의 임대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내국인에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표준 계약서가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외국인 부동산중개업소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의 경우 동 보험의 적용대상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은 100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주민등록이 안되는 관계로 동 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4)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거현황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국토연구원 동북아연구팀 2002년 4월)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3분의 2이상이 용산구를 선호(71.3%)하고 있으며, 43%의 사람들이 다른 외국인들과 모여 사는 것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학교나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을 선호(1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와 관련하여서는 52.1%가 빌라를 선호한다고 응답, 단독주택은 34.1%, 아파트는 13.8%가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55.1%가 빌라, 27.0%는 단독주택, 18.0%는 아파트로서 선호하는 비율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한편 95% 이상의 외국인들이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나 전용 쇼핑시설 등을 선호하지 않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변하여 외국인 주거환경 구축시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월세전액선불 조건의 임대주택이 하나의 수익 사업군으로 성장하고 있어 주택문제 해소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월세전액선불이라는 임차료 지급방식은 외국인들로부터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적받고 있다.

2) 경쟁국의 외국인 주거 환경

< 주요 경쟁국별 외국인 주택임대차 환경비교 >

	한국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	일본
외국인용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업소별 로 영문/한글 혼용 작성 사	부동산업소별 로 영문으로 작성 사용	일 반 적 으 로 중국어로 작 성된 계약서	부동산업소별 로 영어 및 중 국어 혼용 작	부동산업소별 로 중국어로 작성 사용	지역에 따라 내국인용 일 어 표준계약

	용		사용	성 사용		서 사용
임차료 지불방식	임차기간 전 액 선불	매월 선불	매월 선불	매월 선불	매월 (단, 계 약서 미작성 시 6개월 또는 1년분 선불)	매월 선불
외국인 전문부동산 중개업소	외국인 주거 지역 중심으 로 다수 활동	없음	외국계 부동 산 회사 진출 활동	없음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외국인 대응	전국적인 체 인망 형성 운 영
월임차료 (주)	U\$ 3,300 동부이촌동 아파트,54평	U\$ 4,000 Stevens RD 아파트,55평	U\$ 1,600 古北新區 아파트,57평	U\$ 3,300 Robinson RD 아파트,54평	U\$ 2,050 中山區 아파트,55평	U\$ 8,000 ROPPONGGI 아파트,54평
	U\$ 1,580 시내, 방3	U\$ 2,340 시내, 방3	U\$ 1,460 시내, 방3	U\$ 2,330 시내, 방3	U\$ 1,440 시내, 방3	U\$ 2,160 시내, 방3
임차보증금	.월세: 합의결정 .전세: 없음	1개월분임차료 (2년계약시)	1개월분임차료	2개월 임차료 상당액	3개월 임차료 상당액	2개월분임차료 (도쿄) 2개월분사례비 별도
보증금 반환	.퇴거1개월 후 전액반환 .전세의 경우 후세입자 물 색 후 반환	퇴거시 수리비 정산후 반환	최종월 임차 료로 상계	퇴거시 전액 반환	퇴거시 전액 반환	퇴거1개월 후 수리비정산후 반환
중개수수료	총 임차료의 1.5%-3%(약 1 개월분 임차료)	1개월분임차료 (2년계약시)	1개월분임차료	1개월분임차료 (50%씩 분담)	1개월분임차료 (50%씩 분담)	1개월분임차료
주택임대차 정보 구독	.외국인 부동 산 중개업소 .인터넷	.영자신문 .부동산 중개 업소	외국인 부동 산 중개업소	.영자신문 .부동산 중개 업소	.영자신문 .인터넷 .부동산 중개 업소	.부동산 중개 업소

주) 월임차료 중 상단 가격은 KISC 자체 조사 가격이며, 하단 가격은 IMD조사 가격임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거환경은 양호한 수준이며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병원, 문화시설. 레크리에이션, 쇼핑 등에 있어 편리하게 되어 있다.

싱가포르 전체인구의 80%이상이 주택개발청이 건설한 아파트(HDB flats)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주로 Orchard RD, Tanglin RD, River Vally RD 등의 지역에 거주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의 주거 편의를 위해서 1997년부터 SHiFT계획에 의거 주택개발청 산하의 JTC Corporation이 거주비자 보유 외국인에게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시가의

85% 수준에 임대해 주고 있다. JTC가 공급하는 외국인 임대아파트는 외국인이 현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 쇼핑센터, 극장을 비롯하여 공원 등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계획도시 성격을 띠고 있다. (www.jtc.gov.sg). 한편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주택개발청이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고 있다. 동 임대주택은 기술보유 저소득층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년간 임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www.hdb.gov.sg)

외국인전용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없으며 대체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영어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임차료는 매월 선불한다. 임대보증금은 2년 계약시 1개월분 임차료 상당액을 지불하며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환불한다. 중계수수료 역시 1개월분 임차료 상당액을 임차인이 전액 지불한다. (KOTRA 싱가포르무역관 조사). 주택과 관련된 정보는 Straits Times 등과 같은 영자신문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2) 중국

중국 정부 당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택, 자녀교육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 편의시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어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주택여건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포동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학교 뿐만 아니라 병원, 공원, 레저시설까지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거대 소비도시인 상해를 끼고 있어 외국인들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주요경쟁국 투자유치정책, KOTRA 2002)

중국은 투자유치 경쟁국 가운데 아파트 임차료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전략의 기본방향) 최근 북경지역의 외국인 거주지역 제한이 풀림에 따라 외국인의 거주지역 선정은 중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또한 WTO 가입과 더불어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제한도 해제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공건축, 대외판매주택, 오피스텔 등의 사업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초주택 건설사업에의 참여는 제한받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에 따른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영향, 국토연구원)

외국인의 주택임대차는 《중국 도시부동산 관리법》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 부동산소재지의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임대정책에 따라 서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며 임대계약서에 임대기한, 용도, 임대료, 보수책임, 임대료 지불시의 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외국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역과 아파트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택 매매나 임대시 반드시 해당지역의 공안 부문에 거주 가능여부를 사전 조회하여 보아야한다.

<http://www.budongsan.com/over/china-3.htm>

외국인 투자촉진의 방안으로 최근 중국정부는 1천만달러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세계 500대기업 투자회사,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종사 임원에게 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한국경제 2003.9.3).

임대차 계약과 관련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없으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국어로 계약서가 작성된다. 임차료는 통상 3개월치를 한꺼번에 지불하나 1개월씩 선불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시 1개월분 임차료상당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동 보증금은 마지막 달의 임차료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반환된다. 중개수수료는 1개월분이며 임차인이 전액 지불한다. (KOTRA 상해무역관 조사)

부동산관련 정보는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전문 부동산회사가 있어 계약체결시까지 동행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3) 홍콩

홍콩 거주 외국인, 특히 회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 Island의 교통이 편리하고 비교적 넓은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 최근에는 짝 임대료에 넓은 평수를 구할 수 있는 신시가지(New Territories)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다.

홍콩의 주택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본적인 가구 또는 기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의 경우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한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내부 시설이 우수한 호화아파트도 많아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Living in Hong Kong, AMCHAM).

주택임차료는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며 현지 봉급생활자의 경우 월급의 대략 40-50%를(미국의 경우 대략 20-30% 수준) 주택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차보증금은 평균 2개월분 임차료이며 일반적으로 퇴거시 전액 환불된다. 중개수수료는 1개월분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50%씩 지불한다. 임차료 외에 시에 내는 자산세(rates)와 관리비(Management Fee)를 부담하여야 한다.(홍콩한국상의 <http://www.kochamhk.org>)

계약서는 통상 영어로 작성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자세하게 명시하여 분량이 10페이지 이상 된다. 계약은 가계약시 1개월분의 임차료를 계약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며 가계약을 파기하면 동 보증금은 임대인 몫이 된다. 임차료는 매월 선불한다. 임

차갱신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재계약의 형태로 임차 갱신이 이루어진다. (<http://www.san-pou.co.jp/hk/info.htm>)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을 물색한 경우 집주인과 임차료 또는 임차조건에 대한 재협의도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며 처음 1년 동안은 해약이 불가능하다. 1년 후 퇴거시에는 통상 2개월전에 그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http://www.ne.jp/asahi/hong-kong/anthology/>) 주택정보는 영자신문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가의 부동산을 통하여 주택정보를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대만

대만의 주택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며 임차주택 물색도 용이한 편이다. 타이페이 소재의 일반적인 3 bedroom 아파트의 규모는 대략 30평 내외이며 임차료는 월급여의 1/5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외국인은 회사와 인접한 Min Chuan, Ho Ping, Tien Mu 신축고층주택단지에 주로 주거하고 있다. (<http://www.oriented.org/housing/page2.shtml>) 임차료는 매월 1개월분씩 선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개월 또는 1년분 임차료를 선불한다. (STARTS부동산 <http://www.starts.co.jp/taiwan/>) 임차보증금은 2-3개월분의 임차료 수준이며 퇴거시 전액 환불받는다. 중개수수료는 1개월분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50%씩 부담한다. (KOTRA 타이페이무역관 조사).

계약서는 보통 중국어로 작성된다. 계약은 집주인과 직접하지만 구두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 해약해지는 1개월전 통지로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외국인 전용 부동산소개창구, 외국인을 위한 임대차관련 법률.제도, 주거 등에 대한 종합 안내책자는 없다.

주택정보는 신문이나 인터넷 또는 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중개업소중에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도 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http://oriented.org/cgi-bin/ultimatebb.cgi?ubb=forum&f=1>)

(5) 일본

일본의 주택은 대체로 크기가 협소하나 양호한 편에 속하며, 동경 등 대도시의 주택임차료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들은 주로 Azabu, Ebisu, Roppongi,

Aoyama 등 외교 공관이 있는 고급 주택가를 중심으로 거주한다. 임차료는 주택크기와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동경 등 대도시의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대략 1개월간 50만엔 정도에 달하며, 비교적 규모가 큰 좋은 주택의 경우는 150만엔 정도 되는 것도 있다. 또한 대도시 교외지역의 일반적 주택의 경우 1개월간 임차료는 대략 30만엔 내외에 달하고 있다. 임차료는 월단위로 지불하며 매월 선불한다.(Living in Japan, AMCHAM)

임차계약시 도쿄지역의 경우 2-3개월분의 임차료를 임차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임대사례비로 1-2개월분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퇴거시 원상복구비를 제외하고 환불되며, 임대사례비는 전액 환불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며 쌍방의 합의에 의거 연장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개월분의 임차료를 중개수수료로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시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연장 및 해약은 1개월전 통지로 가능하다 (KOTRA 동경무역관 조사)

외국인전용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없으며 각 부동산중개업소별로 영어 또는 일어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한편 계약체결시 부동산업자는 동 계약 체결시 입회하여 자신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계약종료 등으로 퇴거할 때 계약서상에 원상회복의무조항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특별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범위나 비용부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주택문제는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s Foreign Residents Advisory Center와 Legal Counseling Center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다. (Living in Japan, AMCHAM)

주택정보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소도 있다. 인터넷의 경우 Housing Japan : www.housingjapan.com, Japan Home Search www.japanhomesearch.com 등에서 주택임대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기타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착 안내책자는 대형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3) 문제점 및 외국사례

(1) 외국인용 표준임대차 계약서 부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임차료, 임차보증금, 임차기간 등 극히 간략히 작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관행이나 관습 또는 구두 합의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모든 계약사항을 일일이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관행이나 관습이 다

른 나라에서 생소한 관행에 따라 주택을 임차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3년 6월 KISC의 조사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한 외국인의 불만은 임차료 다음으로 높은 25.7%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 등이 자국어로 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경쟁국 가운데 외국인을 위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 영문 계약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황은 동일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데 있다.

(2) 외국인 부동산중개업소 자질

2003년 6월 KISC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55.2%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정보를 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업소는 자발적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고용하고 공항 도착부터 주택이 확정되고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영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지나치게 임대인의 입장을 대면하고 있으며,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 중개업소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투자유치경쟁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인터넷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고 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중개업소가 소개한 주택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부동산중개업소의 자질을 논하는 것은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고, 또한 정말로 자질이 부족한 중개업소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3) 임대기간에 대한 총임차료 선불관행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요인은 임차료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통상 2년의 임차기간에 대한 월임차료를 입주시 전액 선불해야 하는 LUMP-SUM PAYMENT(일명 깔세)의 임대차 방식에 아주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전세, 월세 등 어떤 임대방식보다 수익률이 높아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투자유치경쟁국 중 한국과 같은 월세 LUMP-SUM 방식으로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 대만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세

상 어디에서도 전무후무한 주택 임대차 방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특히 LUMP-SUM방식은 내국인 주택임대차 시장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통용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계약방식으로 내·외국인간 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월임차료 전액선불관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고가의 단독주택 또는 빌라인 경우가 많은데 입주전에 대대적인 수리로 인해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행은 점차 변해가고 있다.

(4) 높은 임대료

주택과 관련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임차료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KISC뿐만 아니라, 전경련, 국토연구원 조사에도 공동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주택임차료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부동산업계는 외국인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대저택이나 고급빌라를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full furnished를 그것도 모두 새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임차기간 중 사소한 것까지 모든 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문제는 내국인에게는 요구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금액을 외국인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MD와 JETRO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임차료는 일본, 싱가포르, 홍콩보다는 저렴하다. KISC가 주요 외국인 선호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문제와 관련 경쟁국에서는 외국인투자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유력 투자자에게 대하여 주택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으며, 싱가포르에는 단지를 조성하여 시가의 85% 수준에 이를 임대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으로부터 더 많은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외국인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5) 외국인용 주택정보 부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의 55.2%가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정보를 얻고 있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주로 주택정보를 얻고 있는 영자신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공적인 주택정보안내 기관이나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도 없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알아서 주택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때문에 외국인 스스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투자유치기관인 함부르크경제개발공사에서 부동산정보 D/B를 운영한다(KOTRA 함부르크무역관 조사). 대만의 경우 외국인들이 주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주택개발청이 SHiFT계획에 의거 외국인의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시장 개방으로 외국계 부동산회사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6) 보증금·전세금 적기 반환

외국인 투자가가 선호하는 주택임대차 방식은 순수월세 방식이 63.1%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 임차 방식은 월세전액선불이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세와 순수월세 순으로 조사되었다.(외투기업임직원 생활환경애로조사, KISC) 즉 외국인의 60%이상이 전세 또는 월세선불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시 또는 파기시 선납 임차료에 대한 환불문제를 우려한다. 우리나라의 전세 임대차 방식에 의한 전세금 반환은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후세입자가 결정되어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월세전액선불 방식의 경우에도 임차주택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2개월분 임차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반환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시기, 방법, 공제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과 관련한 위험해소를 위해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상주택이 개인의 경우 100 S/M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법인은 165 S/M)되어 있어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보상받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적의 필하고 공증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대차보호법상에 보장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부동산써브)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법인명의로 체결하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우선변제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법무사 유권해석)

(7) 외국인 선호주택 부족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가의 순수월세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63.1%이나 실제 순수월세방식의 주택에 입주해 있는 비율은 16.4%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민간이 건설하고 있는 외국인 임대주택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대사업으로 전세 대신 고가의 월세, 또는 속칭 깔세라 불리는 1년에서 3년까지의 월세를 선불로 받음으로써 전세 수익률과 비교해 2배 이상인 연 13% 정도의 수익성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수익성 외국인 임대주택이 하나의 사업군으로 성장하고 있어 외국인이 선호하는 주택임대차 계약방식과는 점차 괴리 폭이 커지고 있다.

경쟁국중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주거편의를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학교, 병원, 공원 등 생활환경이 조성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기는 하나 최근 외국인

부동산회사의 진출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에 의한 거주제한과 주택구입 제한을 풀었다.(한겨레 2002.8.14) 또한 외국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대상 임대주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외국건설업체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4) 외국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안

(1) 외국인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마련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방식은 계약서 보다는 관행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한 예로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후세입자와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며 이러한 계약위반이 당연하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사고방식이 다른 외국인에게 우리의 관행을 강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사고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도 외국인용 임대차 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

경쟁국의 경우 외국인용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마련된 국가는 없다. 하지만 외국의 계약서는 계약내용이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내국인용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2페이지 수준이며 대부분 관행이나 관습에 따르고 있다. 관행이나 관습에 의한 계약이행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임대차계약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은 절실한 사안이다. 다만 계약은 민사에 관한 사항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련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외국인단체, 외국인부동산중개업소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외국인용 표준임대차계약서가 널리 보급,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Invest KOREA는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 중 하나의 과제로서 2004년 6월에 외국인용 영문 주택임대차계약서를 Invest KOREA,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단체 등의 협의하에 마련되어 공표된 바 있으며, 동 영문 계약서 양식은 Invest KOREA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외국인 부동산중개업소 육성

외국인 투자가의 부동산중개업소 의존율은 55.2%에 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중개업소는 경쟁국과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중개업소는 우리나라 뿐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자질에 대한 지적을 받는 것은 일부 양심적이지 못한 중개업소와 정말로 자질이 부족한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명확한 서비스 범위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 서서 제공

하는 서비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조기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의존율이 높은 부동산중개업소 육성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KISC차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의 평판, 경력, 인력구조, 정보수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외국인에게 추천가능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선정하고 이를 외국인 단체 및 기업을 통하여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중개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고 외국인 투자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3) 임차료 총액 선불관행 억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차료 총액선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외국인 임대주택시장이 임차료 총액선불 조건, 속칭 '깍세'라는 임대차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 증설이 외국인 주택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문제는 내국인에게도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을 외국인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임대차방식을 요구 받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월세 수요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적의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미8군의 예에서와 같이 수요자가 이와 같은 계약방식을 거부하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외국인 부동산중개업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수요자인 외국인 단체와 회사가 이와 같은 계약방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등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4) 주택정보 안내창구 마련

앞에 언급했듯이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중개업소 의존율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중개업소 이외에 주택정보를 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영자신문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며 KISC 조사에 의하면 영자신문을 통하여 주택정보를 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경쟁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외국인 주거정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만은 외국인 주택 COMMUNITY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본은 주택관련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자체가 주택정보 D/B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부동산중개업소를 안내창구로 육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KISC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관습을 홍보하고, 외국인들이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COMMUNITY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전세금·보증금 환불 보증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외국인 투자가의 60%이상이 전세 또는 월세전액선불 조건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월세 방식에 익숙한 외국인으로서는 선불금액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최대 월임차료의 2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계약서상에 환불시기 및 조건에 대해서 세세히 명시하고 있다. 은행에 예치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세금 사고대책으로 "전세금 보장신용 보험"이 상품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100s/m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00s/m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부보대상 주택의 크기를 외국인투자의 주거주택 수준으로 확대하여 전세금 환불과 관련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월세전액선불 방식에 의한 임대차계약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 상품 개발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외국인 주택건설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택단지는 외국공관과 외국인학교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생성되었다. 최근에는 외국인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용 임대주택 건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지역의 삼성월드센터, 휴먼터치 등은 외국인 전용으로 지어진 임대하우스로서 풀 옵션을 갖추고 있으며, 서초지역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있다. 성북동 지역은 미국, 일본, 유럽 대사관이 위치해 있어 외국인용 대저택과 고급 빌라가 밀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주택건설은 월세전액선불과 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 주택문제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주택임대시장 왜곡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유발하고 있다.

경쟁국 가운데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HDB) 주도하에 학교, 병원, 쇼핑센터 등 편의시설이 유치된 아파트중심으로 주택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국인에게도 임대해 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외국계 건설업체를 통하여 외국인용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타운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외국인들의 선호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부동산중개 수수료 명확화

부동산중개업법상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임대료의 경우, 총 거래가격의 0.8% 이다. 그러나 외국인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고급인력이 외국인을 입국부터 출국까지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상 1.5% - 3%를 적용하고 있어 법정 수수료 보다 3배가 많은 1개월분 임대료를 징구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다. 투자유치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 일본은 물론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1개월분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수수료도 거래금액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차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부동산중개업계의 의견이다. 법과 상관없이 이미 1개월분 임대료를 부동산중개수수료로 청구하고 있는 관행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외국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 가운데 주거분야에서는 12개 과제가 선정되어 개선중에 있다. 2004년 6월까지 추진완료된 과제는 전체 12개 중 7개 과제로서, 영문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중개업소 선정기준 마련,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고시 개정, 월세조건부 전세금 지원상품 개발, 선금 적기 환불금융상품개발, 외국인 주택 입지 혜택, 경제자유구역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다. 이러한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과제가 당초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외국인들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4. 교통분야

1)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의 교통 환경

(1) 일반적인 인식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교통환경 또는 교통문화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다고 할 수 없다. Invest KOREA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한국내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분야로 교통환경을 지적하였다. 동 조사에 의하면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도는 57.4% (복수응답 기준)로 의료 21.9%, 주택 20.2%, 교육 17.5%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매너와 빈번한 법규위반이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우리나라의 좋지 못한 운전 습관은 이미 외국인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주한 일본기업들 중 일부는 회사방침으로 한국에서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국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의 좋지 못한 운전매너와 보행자에 대한 배려부족에 기인한다고 소개하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http://travel.state.gov/skorea.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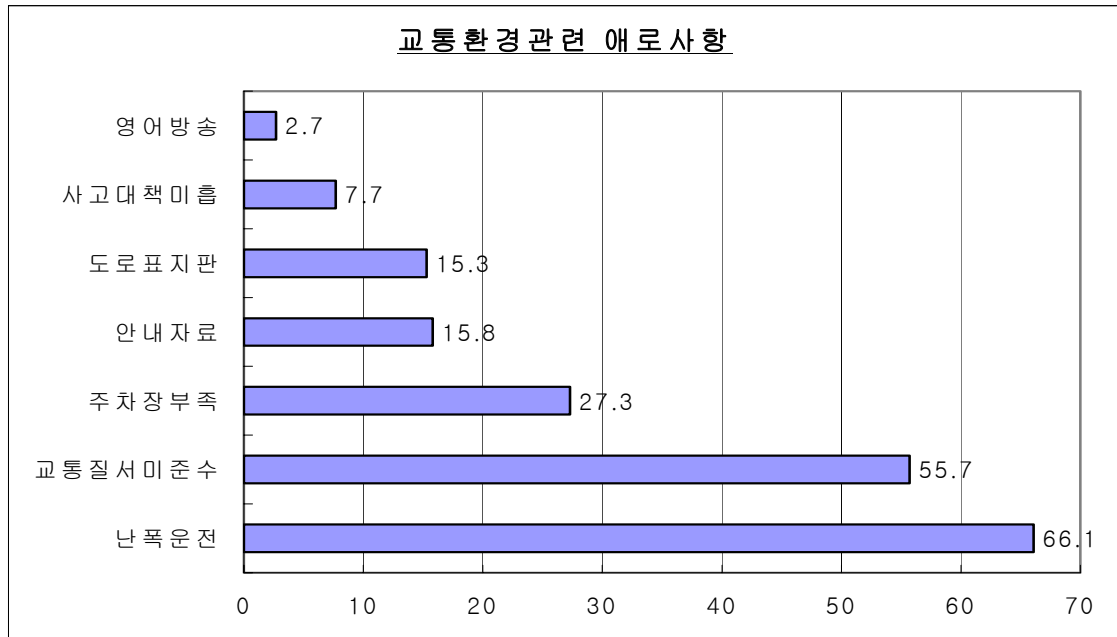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외국인이 우리의 교통문화를 비판하는 것을 부정하기 보다는 정말로 미흡한 점이 없는 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2) 외국인의 불만.애로사항

Invest KOREA가 외국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투기업 임직원 생활환경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가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6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택시, 지하철, 버스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가용 운전자가 가장 많은 것과 비례하여 불만사항도 자가용 운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 교통상황 중 외국인들이 불편한 것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난폭운전(66.1%), 교통법규 미준수(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외국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내국인의 생활환경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가이미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로 국민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한편 주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교통관련 불편사항은 주로 언어적인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전시 접하게 되는 도로 표지판의 영문 표기 문제, 버스나 지하철 이용시 접하게 되는 정류장 영문안내와 영어안내 방송 미흡 등이다. 이밖에 외국인 서비스와 관련한 불편사항으로 운전면허 취득시 영어안내 미흡, 교통사고 대책 핫라인 운영 미운영 등이 개선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3) 교통관련 법령

우리나라의 교통관련 관할관청은 여러 개의 부처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요법률과 관할 부처 및 관청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 경찰청
 - 교통법규, 주차, 면허 등 총괄 법률
- 교통안전법 : 건설교통부, 지자체
 - 안전운전 및 난폭운전 등 단속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건설교통부, 지자체
 -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차량통제 및 교통체계 개선
- 주차법 : 건설교통부, 지자체
 - 주차단속 및 주차장 건설
- 도로표지규칙, 도로표지관련규정집 : 지자체, 도로관리청
 - 도로표식

(4) 외국인을 위한 교통제도 개선현황

○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는 제도는 2003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한국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대만, 홍콩, 일본 등 97개

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학과시험을 면제하고 신체검사만으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며, 중국,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인정치 않는 국가 혹은 미과약 국가 91개국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간단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간이필기 시험은 영어, 중국어, 일어, 독어, 불어 중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4지 선다형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면허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중 한 개의 언어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시험문제는 4지선다선 50문항이다. 운전면허교본은 영어, 중국어 판의 경우 각 시험장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교본은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웹사이트 (www.dla.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문제해소를 위하여 면허시험장에 외국인의 면허 취득/갱신 담당직원을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 위주로 배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의 제출 및 접수도 가능하다.

○ 사고 대책

외국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은 내국인과 같은 방법으로 112번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별도의 외국인 전용 교통사고 신고 핫라인은 없으며 신고 접수 후 외사과로부터 3자 통화방식으로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어 통역서비스는 전국의 662개소의 파출소,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3자 동시통역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 통역서비스는 경찰청이 픽어폰, 이지세이 등 2개 민간서비스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경찰청에서 이들에게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 도로표지판

영문, 한자 도로표기와 관련 2001년 외국인투자가 애로개선 계획을 통하여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기로 하여 현재 개선 시행 중이다. 한편, 영문표기 통일과 관련해서는 2001년 7월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어 정비를 추진중이다.

건설교통부는 도로표지판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 6월부터 도로표지판 종합관리센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로표지판 불편신고 Hotline (www.e-roadsign.com)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도로표지판 정비요청 민원도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표지판이 전국적으로 13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동 표지판 관리를 250여개의 도로관리청이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및 관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 교통안내

종합 교통안내책자는 영어로된 전국판 안내책자는 없으며, 지자체 단위로 제작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책자 형태의 영문 종합안내물은 없으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버

스 노선안내 (<http://bus.seoul.go.kr>)와 지하철 노선 안내 (<http://metro.seoul.go.kr>)를 하고 있다.

2) 투자유치 경쟁국의 교통환경

< 투자유치경쟁국 교통환경 비교 >

	싱가포르	일본 (도쿄)	홍콩	중국 (상해)	한국 (서울)
운전면허 취득/갱신 외국인 전용창구	교통경찰국에 서 담당	국제면허창구 에서 지원	없음	없음	외국면허창구 에서 지원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 가능외국어	영, 중	영, 중, 한, 서, 포, 페	영, 중	영, 중	영, 중, 일, 불
도로표지판 영문표기	전국적 실시	고속도로, 국도 완비, 지방도 로 미흡	전국적 실시	주요 대도시 실시	고속도로, 국도 완비, 지방도 로 정비중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 도 영문표기	실시	신형정류장 실시, 종래형은 없음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시내버스 운행시각표 제	미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시내버스내 영어안내 방송	실시	미실시	거의없음	미실시	일부실시
버스, 지하철 전선노선 안내도 포함 교통 안 내 영문 종합책자	매년 발간	지자체별로 발 간	영어판 교통지 고 발간	전철용 안내책 자 발간	지자체별로 발 간
외국인 전용 교통사고 신고 핫라인	경찰 핫라인 이용	경찰 핫라인 이용	신고센터 및 영어구사 경찰 순회	내외국인 공용 교통핫라인 운 영	경찰 핫라인 이용
교통정책 참고사례	혼잡통행료 징 수, 차량쿼터제	버스운행시각 표제, 차고지 증명제	높은 자동차 소유비용	-	-

자료원) 1. 교통개발연구원, 월간교통 2003년 1월호

2. 일본국토교통성, 도로교통센서스 1999

3. 상해시 공안국 교통경찰총대 발표 2001년 통계

4. 대만 내정부, 교통부 발표자료, 타이페이시 교통국 조사결과
5. 홍콩, 運送資料年報 2002, 및 조사자료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어 영어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다.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하여 별도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Traffic Police Department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언어로 인한 불편함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영어, 중국어 등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http://www.spinet.gov.sg/aboutus/org/tp/tpfaqs/conversion.htm>

영어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으므로 지하철, 버스, 도로표지판 등이 모두 영어로 표기 되어 있어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지하철, 버스에서 모두 정류장별 운행시간 표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영문 노선도는 서점이나 가판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교통 안전 선진국으로서 현지 도로교통 안전성, 도심 도로여건 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무성 영사리포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7.87명으로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싱가포르 교통정책의 기본은 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싱가포르의 모든 지역에 최대한 빨리 도착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수단인 MRT(Mass Rapid Transport-전철), LRT(Light Rapid Transport-경전철)와 버스 등을 연계시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과 물리적으로 차량숫자를 통제하고 도심지로의 차량 유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COE (Certificate of Entitlement : 차량등록 제한제), ERP(Electronic Road Pricing ; 혼잡통행료 징수제), OPC (Off Peak Car)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철(MRT, LRT) 및 버스이용자를 위하여 영문 종합안내책자인 TransitLink Guide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주요 버스정류장 안내판에도 포괄적인 버스이용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대중교통 수단인 전철과 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 ez-link라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이 통합 청구된다. (<http://www.transitlink.com.sg>)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교통사고 신고 전용 핫라인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싱가포르 경찰의 Hotline(999 또는 1800 225 0000)을 이용하고 있다.

(2) 일본

2000년말 기준 일본의 총 차량등록대수는 78,682천대로서 총인구수 대비 1.7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국이지만 (자료원 :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통계자료) 2001년도 도쿄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7명으로서 서울(17.03명)과 비교하여 1/3수준에 불과 교통안전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영어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에 대한 교통분야 서비스 환경은 한국과 유사한 면이 있다.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갱신관련 별도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각 관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외국어 가능인력이 응대하고 있다.

외국인이 일본에 3개월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일본어를 비롯하여 영어, 한국어, 중국어, 포어, 서어, 페르시아 등 7개국어로 응시가 가능하다. (<http://www.s-i-a.or.jp/advice/qa/jidosha02.html>)

도로 표지판은 고속도로, 주요 간선 국도는 영문 병기가 되어 있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일본어로만 표기되어 있다. 주요 대도시 지하철의 경우 노선도 영문표기, 영어 안내 방송이 시행되고 있으나 버스의 경우 영어 안내방송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버스정류장 노선도 역시 대부분 일본어만 표기되어 있어 일본어를 모를 경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시내 버스 정류장 마다 운행 시각표가 붙어있고 잘 지켜지고 있다. 시내버스는 이용자의 편의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완전히 정차한 후에 출입문이 열리고, 손님이 완전히 좌석에 앉은 후에 출발한다.

전철, 버스 노선도를 포함한 교통안내 종합 영문 책자는 없으나 사업자별로 인터넷 또는 간이 인쇄물을 통하여 노선안내를 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교통사고 핫라인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 고속도로 등 대중교통수단의 사고, 사건 속보를 알려주는 교통속보를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http://k.excite.co.jp/hp/u/johokotu/>

일본은 1962년부터 "자동차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자가용 증가대수 억제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3) 홍콩

홍콩은 각종 교통기관이 잘 발달된 도시이다. 지하철을 비롯하여 페리(Ferry), 버스, 2층

전차, 기차, 피크트램(Peak Tram) 등 여러가지 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홍콩은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갱신관련 별도의 전담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Transport Department Office (4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중국 반환이후 중국어 사용이 점차 증가세를 이루고 있으나 영어가 일반화되어 있어 외국인의 경우에도 불편함이 없다.

외국인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영어 또는 중국어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접수는 4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12개월 미만 체류자의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상호 운전면허 인정국가의 경우에는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Living in HONGKONG, AMCHAM)

도로표지판은 모두 영어와 중국어로 병기가 되어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노선도 영문표기, 영어 안내 방송이 시행되고 있으나 버스의 경우 영어 안내방송이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일부 버스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교통지도는 영어와 중국어로 병기되어 있어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위한 교통사고 핫라인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인을 위한 신고센타를 운영중이며 순찰 경찰의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경찰은 어깨 위에 빨간색 패찰을 붙이고 다닌다. 매일 600만 이상의 유동인구가 있는 관계로 러시아워의 교통 체증은 늘 지적되는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홍콩의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6명(홍콩 정부발표, 운송자료연보 2002)으로서 비교 대상국가중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홍콩은 차량 등록시 매우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고액의 면허세를 징수하는 등의 차량 보유비용 부담을 늘이는 정책과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차량 운행거리 및 노선조정 지속적 시행, Cross Harbor 터널, Western Harbor 터널 통과료 징수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중국

중국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버스이며 버스중에서도 미니버스가 많이 이용된다. 미니버스는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어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한다. 시내버스의 요금은 거리와 버스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버스의 종류도 다양하다. 전선을 따라서 일정한 구간 사이를 움직이는 무궤전차, 두대의 버스가 연결되어 운행되는 트롤리 버스가 있다. 북경 지하철의 총 길이는 41.8km이고, 현재에는 2개의 노선만이 운행되고 있다. 북경 택시의 기본 요금은 10元이며,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

다. 크게 샤리(夏利), 부강(富康), 산타나(森塔那) 세 종류로 나뉜다.

영어 사용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갱신 관련 주요 차량관리소 별로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면허 또는 국제면허증은 중국내에서 통용이 되지 않으며 간단한 실기시험을 거친 후 중국면허로 교환. 발급받아야 한다.

(<http://www.insidechina21.com/>)

외국인은 영어나 중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영어나 중국어 모두 불가능한 경우 통역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주행시험은 운전경력이 3년이상인 경우 면제된다. (KOTRA상해무역관 조사)

고속도로, 주요 간선 국도의 도로 표지판은 중국식 발음의 영문병기가 되어 있으나 지방에는 중국어 표지판도 부족한 편이다. 상해 지하철의 경우 노선도 영문표기, 영어 안내방송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 노선도에 영문표기가 없으며 차내 영어 안내방송도 하지 않고 있어 현지어를 모를 경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다.

중국의 교통여건은 현재 발전단계에 있으며 차량간 우선통행권 및 기타 교통법규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2.8명에 이르러 한국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철, 버스 노선도를 포함한 교통안내 종합 영문 책자는 없지만 기차의 경우 전국을 커버하는 열차시각표를 유료로 구입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핫라인으로 122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외국인 공용이다.

(5) 대만

대만인의 주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스쿠터)이다. 차도의 대부분을 오토바이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타이페이시와 주요 도시에서 유명 관광, 해양 휴양지로 가는 고속버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섬일주 급행 철도는 빠르고 안락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렌트카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버스와 기차 요금은 비싸지 않은 편이다. 시내버스는 비교적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고 버스 요금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기준 거리를 초과하면 가격이 2배로 오른다.

영어는 공용어가 아닌 관계로 영어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갱신관련 별도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각 관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외국어 가능인력이 응대하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들은 국제면허증과 본국면허증으로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장기체류시에는 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제면허증만 있다면 별도의 시험없이 대만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제면허증이 없으면 영어로 된 시험을 치르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국타이페이

대표부 <http://www.roc-taiwan.or.kr/>)

대만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은 높지 못하며, 신호보다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고 있다. 버스의 경우 영어 안내방송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를 모르는 경우 이용이 쉽지 않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에도 영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목적지를 한자로 적어 보여주어야 한다.

고속도로, 주요 간선 국도의 도로 표지판은 영문병기가 되어 있으나 지방도로는 중국어로만 표기되어 있다. 전철, 버스 노선도를 포함한 교통안내 종합 영문 책자는 없으며 버스 노선도는 서점이나 정류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대만의 교통사고율은 1만대당 2대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이는 교통질서가 우수해서가 아니라 만만디정신(서두르지 않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교통사고 핫라인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 핫라인인 110번의 경우 중국어로만 통화가 가능하다.

3) 문제점 및 외국사례

(1) 난폭운전 및 교통질서 미준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교통과 관련하여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난폭운전과 교통질서 미준수이다. Invest KOREA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복수응답기준으로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1%가 그리고 교통질서 미준수에 대해서는 55.7%가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경우 직원들에서 자가운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할 정도로 우리나라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영업용 차량의 난폭운전이 심하여 교통질서 또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외국인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쟁국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 17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나 여전히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교통질서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보다 2배정도 높은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2) 대중교통 이용관련 외국어 안내 부족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투자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이용률은 16.9%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외국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류장의 노선도는 한국어 일색이고 차내 안내방송은 전철역 연계지역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영어 안내 방송을 기대할 수 없다. 지하철의 경우 사정은 버스

보다 현저히 좋지만 환승역에 대한 외국어 안내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승차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환풍기 등을 더 많이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경쟁국 가운데 영어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사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이다. 종합교통지도의 경우에도 싱가포르와 홍콩만이 외국인을 위한 영어판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중국,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외국인에 대중교통 이용안내는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중국 반환이후 영어보다는 중국어 활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도심 교통혼잡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문제 중의 또 다른 문제는 도시의 교통혼잡이다.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44.0%가 교통혼잡을 제 1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10부제 운행을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1주일중 하루를 지정하여 운전을 하지 않는 자율요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심 차량진입 억제제를 위한 혼잡세 징구는 남산터널 등 극히 일부 구간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시내중심으로 들어가는 주요 간선 도로에 ERP gantry를 설치하여 과도한 차량 유입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차량 운행대수 자체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등록 제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혼잡유발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주차문제에 적극적이다. 차고지 증명제 실시와 불법주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높은 등록세를 징수함으로써 차량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 외국 도로표지판 미정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표지판은 월드컵을 계기로 표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정비가 시작되었다. 2005년 완료율 목표로서 정비작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시행주체가 250개 도로관리청으로 분산되어 있고 표지판 수도 13만개에 이르고 있어 완벽한 정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관할관청은 시도 경계구간의 도로 안내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표지종합관리센타를 건교부내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도로정비 요청 Call center도 운영중이다.

경쟁국가운데 중국, 대만 등은 우리나라보다 도로표지판의 외국어 표기 또는 안내 수준

이 열악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홍콩의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여 고속도로나 도심을 제외하고는 외국어 안내판 설치가 부진하다.

(5) 운전면허 취득관련 대응 미흡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필기시험 없이 간단한 신체검사만으로 우리나라 면허로 교환발급해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운전면허를 우리나라 면허로 교환발급받기 위해서는 간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은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일어, 불어, 독어, 중국어 등 6개국어로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담당하는 시험관리단의 인터넷 서비스는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어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의 경우 관련정보를 구득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외국인을 위한 전용창구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면허 교환창구에서 외국어 구사자가 항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는 가능하나 여전히 창구직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쟁국의 경우 일본만 7개국어로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나머지 국가는 주재국 언어와 영어로만 응시가 가능하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만의 경우 국제운전면허를 그냥 자국 면허로 교환해 주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어나 영어가 불가능한 외국인에게 통역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외국인 교통환경 개선방안을 위한 제안

(1)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외국인의 자가용 이용률은 65.6%로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선호한다. 이와 같이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쟁국 가운데 싱가포르를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어 외국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이 없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언어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어 안내는 우리나라보다 부족하지만 정류장마다 버스운행 시각표를 부착해 놓고 있으며, 정확히 지정된 장소에 버스가 정차하며 승객이 탑승하여 자리에 앉은 후에 출발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외국어 안내는 없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어야 한다. 버스의 경우 정차위치 준수 및 난폭운전 자제, 차내 영어안내 방송 확대 및 영문 노선도 비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철의 경우 환승편의를 위한 안내판 부착과, 에스컬레이터, 환풍기 등 편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택시는 바가지 요금징수나 승차거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다.

(2) 운전면허 취득 편의 제고

우리나라는 현재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5개국어로 외국면허를 교환발급받기 위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외국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서비스되고 있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경쟁국 가운데 일본은 7개국어로 응시가 가능하며, 대만의 경우 무조건 자국면허로 교환발급해 주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통역 이용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편의를 위해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홈페이지 안내를 운전면허 시험가능 언어과 같이 5개국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외국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면허" 창구직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는 외국인 전용창구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교통 종합안내창구 및 Hotline운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교통안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다. 외국어 안내방송은 물론 교통 지도 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Hotline 112는 외국어 대응은 가능하나 홍보부족으로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외국인의 이용사례는 극히 부진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 생활환경 중 가장 고충이 많은 분야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통 종합안내창구 설치 또는 Website 운영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어판 교통지도 발간과 경찰 Hotline 112가 외국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 외국인이 사고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미준수에 기인하고 있다. 당국의 많은 노력으로 음주운전 및 속도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불법주차 문제는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싱가포르와 일본의 경우 교통위반 범칙금이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에 많이 인력을 투입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미준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한편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하여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중 교통문화 캠페인 실시와 교통불편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외국어 표지판 정비

외국어 표지판의 문제점은 외국어 표기판의 수적 부족보다는 표기법의 불일치와 시도 경계 지역에서의 연속성의 부재에 있다. 한 예로 Pusan과 Busan이 같은 지명인지 외국인의 경우 의아해 한다. 또한 도로안내가 중간에 끊겨 운전자를 당황하게 한다. 정부는 2001년 로마법 표기법을 제정하여 도로표지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어 표기의 통일성 유지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도로표지의 경우 월드컵을 계기로 1차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도로표지판은 영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싱가포르보다는 못하지만 여타 경쟁국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작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신규 설치 표지판의 통일성과 표기 오류방지를 위하여 사전 검열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표표지 정비신고센터(www.e-roadsign.com)의 활성화를 통하여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민 참여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6) 도심 교통혼잡 해소

우리나라의 교통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44%가 교통혼잡이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교통 혼잡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10부제 운영, 서울시의 자율요일제 실시, 도심 통행료 징수 등의 혼잡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로변의 불법주차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불법주차 단속은 과속이나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위반 단속만큼 강력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이 과다하여 상습적으로 정체가 일어나는 도심을 선정, 이 곳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세 자동부과를 위한 시스템(ERP)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성이 있을 때 마다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제 차량운행을 강제 규정으로 채택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몇부제로 실시할 것인지는 차량통행수량 목표와 도심혼잡통행세 시스템과의 병행 실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도심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여 도심의 차량운행을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심지내 공영 주차장 건설시에도 가능하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도로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도심 외곽에 환승주차장 건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거지에서의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외국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3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노력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개선완료된 과제는 외국면허 창구 확대 및 우수인력 배치, 면허시험 관리단 외국어서비스 강화 등의 2개 과제이다. 이 개선과제가 예정대로 모두 완료될 경우 외국인의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교통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정책보고서, 발간자료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홈페이지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Working and living in singapore,
 Living in Japan, 암참
 Living in Hongkong, 암참
 Taiwan, Lonely planet
 China, Lonely planet

5. 출입국 분야

1)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 현황

(1) 일반적인 인식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에 대한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큰 만족도, 불만도 없는 보통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 자체가 규제행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가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업무는 관광객 등 일반외국인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신들과 같은 외국인투자가간의 무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공항의 입국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비자업무 담당창구가 항상 혼잡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가를 배려한 편의제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 및 출입국서비스 업무자체에 대한 불만은 선진국 투자가를 제외한 중국 및 동남아 투자가와 대규모 투자기업보다는 중소 투자기업으로부터 집중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액 투자가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투자가에 대해서 투자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장기 체류비자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금 출처가 확실한 거액 투자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장기 비자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업무와 관련한 대규모 투자가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다. 즉,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출입국관리 정책은 비자면에서 고액 투자가 중심이며, 출입국심사 면에서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만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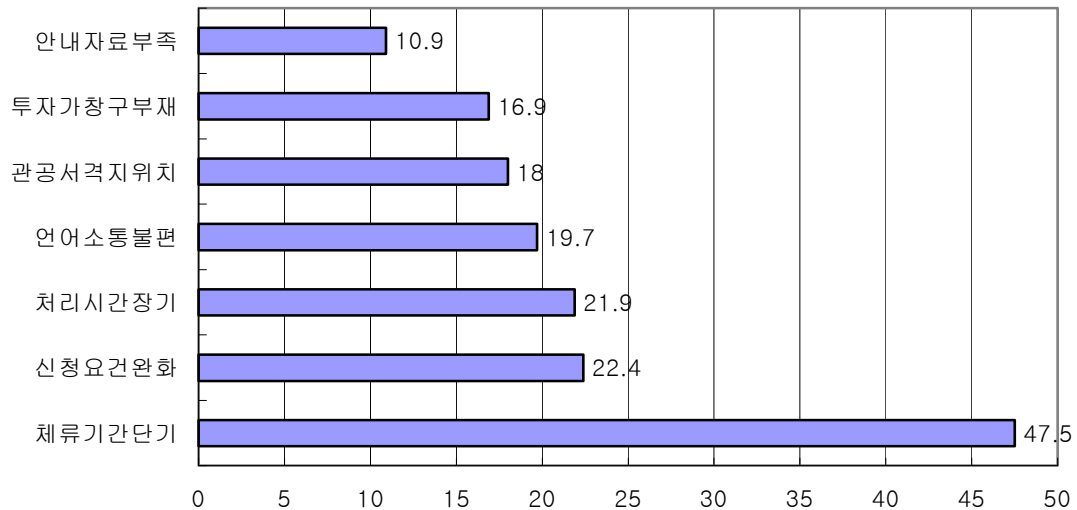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불만사항은 체류허용 기간에 관한 것이다. 2003년 9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은 3년으로 연장되었다. 2003년 5월 설문에 응답한 50%이상의 외국인이 체류기간 1년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여가능 체류기간 상한과 실제 부여하는 체류기간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목동)가 중심가에서 원격지에 위치하여 있고 항상 혼잡하다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출입국심사와 관련하여서는 긴 심사시간(38.3%)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이밖에 출입국 카드작성(26.8%), 외국인투자가 전용레인 설치(25.7%), 담당직원의 언어(18.6%), 담당직원의 태도(18.0%)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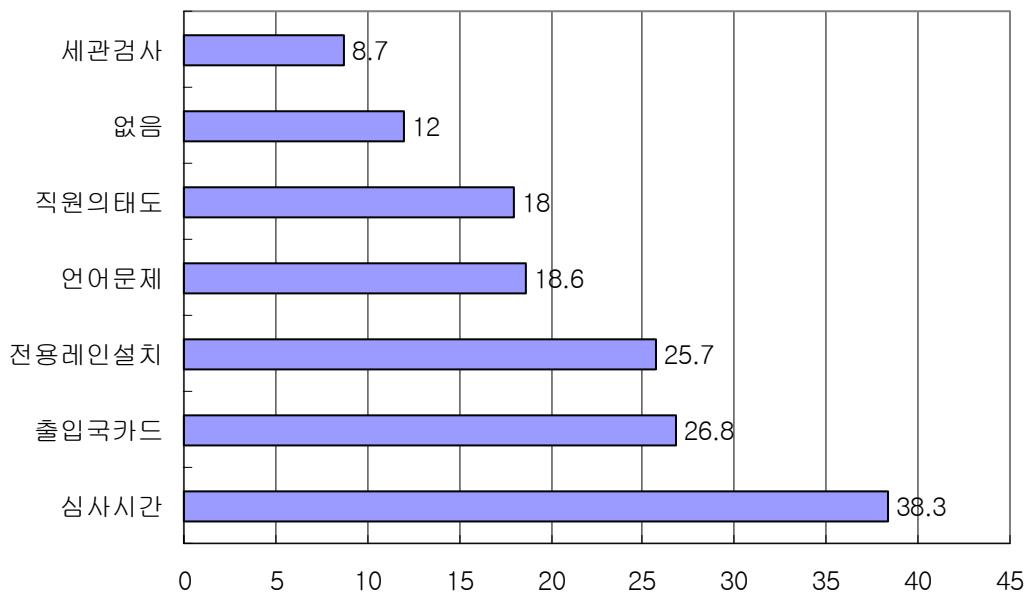
영구체류자격과 관련하여서는 90%이상이 취득의사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영주권 취득자격을 획득하는데 지나치게 장시간(1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3년 정도인 외국인투자자의 주재 기간내에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7.1%만이 불만사항으로 응답하였다.

비자취득/갱신관련 애로사항



출입국서비스관련 애로사항



(3)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

출입국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비자발급 신청은 ① 투자자 체재국의 현지 한국공관에 신청하거나 ② 방문비자로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③ 투자기업의 한국 현지법인에서 신청완료 후 대상자의 체재국에서 수령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택일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비자의 종류를 보면,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외투기업의 CEO 및 주요 임원에게 부여되는 D-8과 기타 임직원에게 부여되는 D-7을 들 수 있다. D8, D7 비자의 체류허가 기간은 상한이 3년이고 부여기간 이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회 연장허용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3년 이내에서 심사자의 재량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등을 부여할 수 있다.

9개월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이에 상응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등록시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등 신원이 확실한 외국인에 대하여 지문날인을 생략하는 내용의 법이 입법 예고중이다.

우리나라의 출입국심사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하고 있다. 심사라인 구분에 따른 유연성 제고를 위해 2004년부터 내외국인 공용심사라인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비자 종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상대국이 복수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구에 의거 심사 후 복수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 출입국과 관련한 제도로써 e-비즈니스 분야의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제를 200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외국의 전문 IT(정보통신)인력은 국가간 비자협약 여부에 관계없이 3년간 취업 복수비자(E-7)를 발급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비자연장도 가능하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자격에만 맞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복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2) 경쟁국의 출입국관리 현황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1회부여 체류기간	1-2년	1년	2년	6년	1-3년	5-7년

체류비자 연장단위	6월-2년	1년	1-2년	1년	1년	1-3년
입국심사 레인	외국인레인	거주자레인	내국인레인	외국인레인	거주자레인	외국인레인
출입국 특혜제도	골드카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복수비자
외국인 등록제도	지문날인	지문날인	있음	있음	지문날인	있음
영주권취득 소요기간	8년	영주권제 없음	7년	제한없음	약 10년	7년

(1) 중국(상하이)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US\$200,000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비자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3개월 유효한 단수 任職(Z)비자를 취득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 30일 내에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은 1년 내지 5년이며 매 1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직접 방문시 3-5일이나 우편으로 배달시 3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중국 입국 후에는 비자 변경이 불가능하며 발급지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거주 허가증인 그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거주 예정인 영어교사, 외국의 전문가, 유학생, 미화 300만불 이상의 투자가 등에게 부여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중가격제와 관련하여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된다. 그러나 위 기본요건 외에 중국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투자가 자격으로는 거의 받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그린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장기 거주자에 대하여는 입국심사시 심사라인을 별도로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거류증 발급시 지문날인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린카드 소지자는 관할지역내에서 사법과公安기관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신변과 재산 안전을 보호받으며 만약 중대한 문제로 이들 기관이 그린카드 소지자를 강제 연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위원회나 시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그린카드 소지자가 가벼운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 교육위주로 계도하며, 벌금이나 차량 압류, 면허증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카드 소지자의 자녀가 취학을 할 경우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학비도 현지 학생과 동일하게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매월 25일 이전에는 시정부 어떤 부서도 그린카드 소지자 투자기업에 대해 검사나 징수를 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 당위원회 및 시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합통신 2003. 10. 12)

(2) 홍콩

홍콩의 경우 미화 650만불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비자 변경이 어려우므로 입국 전에 고용(투자)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소요기간은 10주에서 15주 정도이다. 비자를 받고 입국 후에는 복수의 재입국 비자를 발급 받아야 체재기간 중 홍콩 밖으로의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체류 허가기간은 2년 이내이며 1년 내지 2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이루어진다. 홍콩 거류증 소지자는 출입국 심사시 내국인 레인을 사용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보통 30분 이내에 입국 심사장을 빠져 나올 수 있다.

영주권은 7년 거주자에게 대하여 자동으로 부여된다. 즉, 매 2년 단위로 갱신하던 비자 갱신의무가 없어져 영주권과 같은 효력의 Unconditionalstay Visa를 받게 된다.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홍콩달러 650만불 이상 투자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http://www.go2koreahk.com/usefulinfo/hkvisa.htm>)

(3) 싱가포르

외국인 투자가를 포함하여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비자(EP: Employment Pass)를 발급받아야 한다. 직무 및 급여에 따라 P, Q로 등급이 나뉘는데 월 S\$3,500이상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투자가는 P-pass를 부여받게 된다.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3년 중 적절한 것을 부여받게 되고,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2주에서 4주이다. 매 1년마다 비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 사업기회를 탐색하려는 지식집약기업의 기업가에 대하여는 6개월에서 1년의 체제가 허용되는 Long-Term Social Visit Pass(LTSVP)가 발급된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Work Pass가 부여되는데 체류기간은 2년이고 이어 3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은 제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개방되어 있다. 고용비자 소지자, 전문직 종사자, 외국인 투자자 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S\$ 150만불을 예치하여야 한다. (http://www.koreatown.com.sg/life_visa.asp#v6)

(4) 일본

외국인 투자거나 비즈니스 매니저는 취업비자(working visa)를 받게 된다. 체류기간은 3년이 상한이나 대개 1년의 체류기간을 허가 받고 매년 연장을 해야 한다. 소요기간은 몇 주에서부터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일본 입국 후 90일 이상 체재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지문날인을 하게 된다. 외국인 등록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해야 한

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해외여행시 출국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등록증이 무효가 된다.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출입국 심사시 내국인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는 정해진 법적 기간은 없지만 종래 2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거주 요건이 단축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들에게 영주권을 인정하는 일본판 그린카드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http://www.lawyersjapan.com/visaqa1.html>)

(5) 대만

대만의 비자는 거주(entry or resident) 또는 방문(visitor) 비자로 나누어져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발급되는 거주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다. 거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만에 입국하여 경제부에서 투자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거주허가증을 받아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만 내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경우는 반드시 제3국으로 출국해서 수령해야 한다. 비자 승인이나 거절에 소요되는 기간은 4일정도이다. 거주비자를 받은 자는 15일내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하며 매년 갱신해야 한다. 대만에 거주 중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경우는 반드시 출국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으면 거주자격이 박탈되어 거주비자를 받는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가처럼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는 복수 비자를 받아 놓아야 하는데, 복수비자는 발급 받기가 어려워 마치 특혜를 부여받는 것과 같이 인식되고 있다. 영주권은 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외국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5년이상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http://www.seoulchinatown.com/kor/seminar_hwakyo_contents.htm)

3) 문제점 및 외국 사례

(1) 비자 취득 및 연장

국내 주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으로는 최초로 부여받은 비자의 체류기간과 비자연장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D8 비자 취득자에게 부여되는 최초의 허용 체류기간이 대체로 6개월 내지 1년으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요 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6년, 대만은 5-7년, 홍콩은 2년 등이며 이스탄불 6-8년, 美 캘리포니아주 5년, 프랑스 8년 등으로 기타 외국의 체재 허용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 체류기간 연장문제도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다. 현재는 3년이 상한으로 되어 있으나 비정상 외투기업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하는 상황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와 중국이 각각 1년씩인 반면 대만 1-3년, 홍콩 1-2년, 독일 최초 1년 이후 2년, 美 캘리포니아주 1-5년, 美 뉴욕 3년 등 우리나라에 비하여 장기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2) 출입국 심사

우리나라는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입국심사를 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시설 면에서는 입국심사장이 혼잡하지 않을 만큼 많은 심사대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일부 심사부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나 2004년 2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 외국인투자가 전용심사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심사대에 배치하고 있다.

경쟁국 중 일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에 대하여 내국인 라인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 즉,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보다는 거주자격 소지여부에 따라 심사라인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장기거주자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에도 거류증 소지자에 대하여 내국인 라인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3) 외국인에 대한 특혜제도 운영

우리나라는 기업의 e-비즈니스 분야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자발급 및 체류허가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인 골드카드제를 2000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독일은 IT전문가를 위한 그린카드를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하이터크 분야 우대, 스웨덴은 특별근로자에 대한 Positive list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투자가를 내국인 대우하는 그린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하여 그린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골드카드제란 산업자원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중소 및 벤처기업들의 해외 우수 IT 인력 국내 고용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개선한 제도로써 2000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골드카드제는 벤처기업 등 IT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및 e-business분야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복수사증 발급, 체류허가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확대, 체류자격외 활동 허용 등 체류허가절차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4) 영주권 제도

Invest KOREA의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의 90%이상이 우리나라의 영주권 취득에 관심이 없다. 영주권 조건이 까다롭거나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주권 신청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8년이였다.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자의 체류기간이 3년 내외임을 감안할 경우 8년이란 기간은 매우 길다. 개정법령에 의거 영주권 신청자격 취득 소요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년은 외국인투자자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다.

홍콩은 7년 거주자에 대하여 무조건 영주권을 부여하고 고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발급한다. 일본은 10년 이상 거주자에 대하여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IT 등 고급인력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우 영주권 제도는 없으나 거액 투자자 등 중국 경제에 공이 큰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장기 거류증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중 특별히 공적이 우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에 준하는 영주권과 유사한 그린카드를 발급한다. 미국의 경우 1백만불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http://www.usvisa-service.com/iv.html>)

4) 출입국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1) 체류허가 기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1회 부여가능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다. 하지만 실제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초 체류기간은 투자자의 투자금액, 출신국가 등을 고려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투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Invest KOREA의 2003년 5월 조사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의 50%이상이 1년 이하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체류기간 연장을 체류기간 상한에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경쟁국과 비교하여 보아도 우리나라가 부여하는 비자 체류기간 단기에 속한다. 이에 최초 부여 체류기간을 평균 1년 이상으로 하고 갱신의 경우 평균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체류기간 부여의 투명성 유지

현행 출입국관리 법령은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체류기간은 규정된 상한 내에서 담당공무원이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최초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며, 갱신의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가 부여된다. 부여기간은 신청자의 투자금액, 투자계획, 영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 국적도 평가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류기간 결정요소들이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어 신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성이 없고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과대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

체류기간 부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요소가 되고 있는 영업실적, 투자금액 등을 국가별, 사안별로 구분하지 말고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여기준을 공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3) 외국인투자가 특혜제도 운영

우리나라에 투자 진출한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우리정부가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골드카드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여 외국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우수인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골드카드제 발급대상을 미래 핵심기술인 BT, NT, 항공기술 등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골드카드 소지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영주권 부여자격 완화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투자유출 방지와 재투자 유도도 신규유치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자격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12년에서 8년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하지만 3년이란 기간은 대부분의 외국인이 귀국을 고려하는 시점이다. 이미 비자갱신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귀국을 서두르는 시점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

고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입국시점부터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억불 이상의 고액 투자자는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고액투자자에 대하여 내국인 내우보다 훨씬 우대하는 그린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5) 체류자격 변경의 유연성 제고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대부분의 나라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익에 현

저히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겠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외국기업의 주재원(D-7)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가(D-8)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같은 회사에 종사하는데 비자등급 변경을 위해 왜 출국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외국인학교 교사채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국인학교가 신청한 사증발급인증서를 소지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비자등급 변경에 좀 더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5) 정부의 출입국 서비스 개선 노력

정부는 「외국인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출입국 분야에서도 13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상반기중에 완료된 과제로는 그간 인권침해차원에 거론되었던 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외국인 교사 및 동일기업 종사자 국내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외국투자가 전용 심사 라인을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사보조인 장기체류자격 부여 문제도 2004년 하반기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참고자료

Lonely Planet China

Lonely Planet Taiwan

Amcham, Living in Hong Kong

Amcham, Living in Japan

Goh Keng Chuan, Handbook for Expatriates, Working and Living in Singapore

홍콩 tdctrade.com

싱가포르 www.sedb.com

일본 mofa.go.jp

중국 www.ccpit.org 2253-7522, 060-704-5004

대만 www.idic.gov.tw 399-2784 email

태국 795-4446 www.boi.go.th

인도 상무과 798-4257

말레이시아 www.malaysia.or.kr

태국 795-4446 www.boi.go.th

III. 경영환경

1.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1) 영국

(1) 투자유치정책

1970년대 전통적 산업인 석탄, 철강, 조선 산업의 사양화와, 이에 따른 실업증가, 노사분규 격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제조업 분야가 위축되자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정책은 고용 유발적 투자, 균형적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유치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신규의 대형 제조업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기존의 투자기업 또한 인건비가 저렴한 동구권이나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추세에 있자 투자유치의 중심을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즉 하이테크 산업 및 R&D 유치로 바꾸었으며 투자유치의 목적에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가하였다.

영국 전역에는 옥스퍼드 및 캠브리지 등 50여개의 사이언스 파크 및 영국내의 90여개 대학이 최소한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영국이 산학협동을 통한 R&D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투자유치는 지방정부 지역상호간 투자유치 경쟁체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는 영국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각 지역이 개별국가처럼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국내투자의 부족분을 외국인 투자유치로 보충할 목적으로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꾸준히 유치한 결과 외국인 투자업체수는 총 업체수의 1%에 불과하나 제조업체 고용인구의 18%, GDP의 24%, 국내 순자본 지출의 32%, 수출의 40%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2) 투자유치기관

영국에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소속의 UK Trade & Investment (UKTI : 구 Invest UK)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총 12개의 지역개발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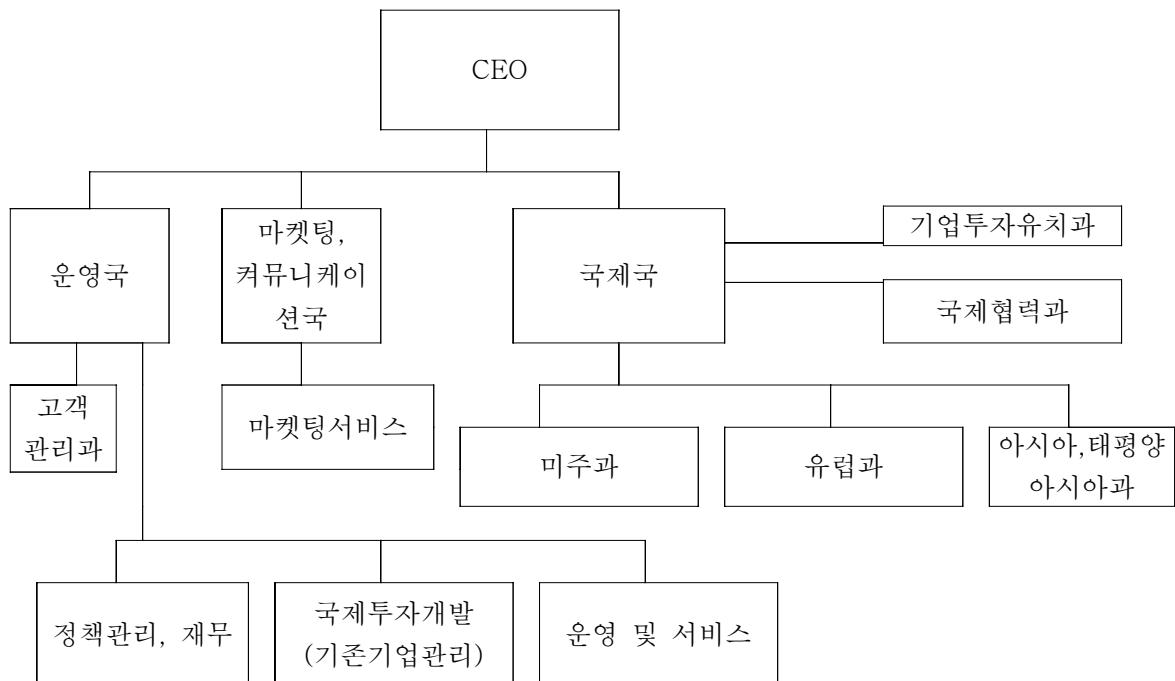
가. 중앙투자유치기관 : UK Trade & Investment (UKTI)

UKTI는 1977년 IBB(Invest in Britain Bureau)란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2000년 이후 Invest UK,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현재의 명칭인 UK Trade & Investment로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대외무역청(British Trade International)내에 무역을 관장하는 Trade Partners UK, 투자를 관장하는 Invest UK를 두었으나 이제는 Trade Partners UK, Invest UK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무역,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UK Trade & Investment라는 단일명칭을 사용한다.

CI를 변경한 이유는 투자와 무역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투자에서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업계의 동향을 잘 알고 있는 무역부분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올려보자는 취지이다.

UKTI의 주된 역할은 투자유치정책의 기획 및 전국적 차원의 투자유치활동 총괄, 영국내 12개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s)간 투자유치 과당 경쟁 방지 및 업무조정, 잠재투자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입지, 인센티브, 조세, 영국 및 유럽시장), 기존투자기업 관리 등이다.

< UKTI 조직도 >



나. 지방투자유치기관

각 지방에는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지역개발청 (R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이 12개가 설치되어 UK Trade & Investment 및 해당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상호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England 지역에 9개,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각 1개가 있다. 특히 잉글랜드 지역의 9개 지역개발청은 1999-2000년 사이에 중앙정부(특히, 통산부)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전액 중앙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는 각기 독립된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개발청 또한 이 지방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 England 지역

- Greater London : London First Center
- South East :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 South West : South West England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ast of England : East of England Investment Agency
- East Midlands :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West Midlands : We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North West :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 Yorkshire and the Humber : Yorkshire Forward
- North East : One North East

○ Wales 지역 : Welsh Development Agency (WDA)

○ Scotland 지역 :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Northern Ireland 지역 : Invest Northern Ireland

(3) 투자인센티브

가. 일반 인센티브의 종류

☐ 지역선별 보조금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영국 England 지역에는 200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RSA와 Enterprise Grants(EG)를 대체하는 「잉글랜드지역 투자를 위한 선별적 재정보조」 (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의 RSA와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RSA 및 Enterprise Grants를 통합하고 특별히 큰 금액이외

에는 지역개발청(RDA)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지원 기준 측면에서 볼 때 종전의 기준에 노동생산성, 더 높은 기술 사용여부 등이 추가되었다. RSA는 지원지역(Assisted Areas: Tier1과 Tier2로 분류)를 설정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당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타 지역보다 유리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단, EU차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조선, 합성섬유, 철강, 자동차수리, 어업, 농업분야는 제외된다. 지원지역 지정은 영국정부의 신청으로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허가한다.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현금보조(Project Grants)로 투자 초기 3년 동안의 자본투자비용, 고용창출규모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지나 당초 투자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조정된다. (주로 총 고정투자비용의 5-15%) 구체적인 지급규모는 투자기업과의 구체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며 지원금액은 대외비로서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다.

고용창출규모, 자본투입규모, 투자진행상태와 연계하여 3회 분할 지급되며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혜요건은 투자업체가 경제적인 자립능력이나 가능성이 있을 것, 해당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용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 해당지역의 경제 및 국가재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투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 등이다.

보조금 교부절차는 통산부 담당 부서, 지역개발청, Business Link 등을 통해 신청양식인 RSA1을 지역개발청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된다. Grant의 총액이 100만 파운드를 상회할 경우는 통산부의 Grant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며 100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각 지역개발청이 심사하여 지급한다.

□ 투자장려지구(Enterprise Zones: EZ)에 투자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투자장려지구는 산업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침체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장려지구를 10년간 한시적으로 동 지역내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 세금감면,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지역의 산업 및 상업활동을 촉진키 위해 지방 Council 또는 개발공사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EZ는 Zone관리기관에서 지정한 민간 기업이 조성할 수도 있다. 특정산업에 속하는 기업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EU 규정에 의거 섬유, 자동차, 조선, 석탄 및 철강, 금속, 농업, 식품가공업 등의 투자자는 입주가 제한된다.

EZ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인정 시 초기연도는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인정하고 그 후에는 25%씩 감가상각 인정한다.
- 공장 및 사무실 건물에 대한 세제 혜택부여 (공장, 사무실 운영 소요경비의 100%를 경상이익에서 차감 가능)
- 산업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건축승인 등 각종행정 처리절차를 간소화 해주고 각종 인프라 설치를 우선 제공
- EU 역외로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정부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 제출 의무에서 제외

□ 자유무역지대 (Free Zones)에 투자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항만, 공항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보세물품의 저장 또는 처리되어 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이다.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국에서 EU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EU 역내국으로의 수출일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EU 국가간에는 관세가 없음)
- Free zones : Humberside, Liverpool, Prestwick Airport, Port of Sheerness, Southampton, Port of Tilbury

나. 세제상의 인센티브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다.

-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 공제전 경상이익의 30%
- 연구개발 및 공장건설 경비 세금면제 : 개발촉진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의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부여

다. 연구 및 개발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EUREKA

유럽내의 첨단기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영국은 통산부가 주관함)로서 DTI가 50%까지의 경비를 부담한다.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 LINK제도

영국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대상으로는 첨단기술 또는 일반제조업의 산학협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5개의 주 카테고리 분류된다.

- Electronics/Communications/IT
- Food/Agriculture
- Bioscience/Medical
- Materials/Chemical
- Energy/Engineering

동 제도는 총 프로젝트 소요경비의 50%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기업은 영국내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이면 된다(영국기업 또는 영국 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투자기업).

□ UK Foresight제도

영국내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연구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하여 보조하고 있다.(<http://www.foresight.gov.uk>)

□ Sixth Framework Programme

산업정보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소요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간 연구개발 및 산학협동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EU회원국 회사 또는 EEA회원국 회사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영국 내 투자기업 포함)으로 연구결과의 유용성, 즉 연구결과의 보급 및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이거나 기술혁신 내지 기술 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동 프로그램은 공동프로젝트 소요자금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 SMART

영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 기술평가 (Technical Review) 지원 :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2,500 파운드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술사용에 대한 Best Practice에 보조됨 (Toward to a best practice review of technology usage)
- 기술 연구 (Technology Studies) 지원 : 혁신적인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이끌어내는 기술적 기회 (to help identify technological opportunities leading to innovative products and processes)의 확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보조하는 것으로 5,000 파운드까지 보조
- 소규모 프로젝트 (Micro Projects) 지원 : 10명 이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술적 진보성과 독창성을 지닌 Low-cost 제품의 원형이나 프로세스를 개발 (developing low-cost prototypes of products and process involving technical advances and/or novelty)에 보조되는 것으로 10,000 파운드까지 지원됨
-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타당성 (Feasibility Studies) 지원 : 50명 이하의 소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45,000 파운드까지 보조되는 것으로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토 (undertaking technical and commercial feasibility studies into innovative projects)에 보조됨
- 개발 프로젝트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종업원 2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중대한 과학적 진보성을 지닌 신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전-생산 원형의 개발(undertaking development up to pre-production prototype stage of a new product and process involving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ce)에 150,000 파운드까지 지원됨
- 특별 개발 프로젝트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고비용 프로젝트(exceptional high-cost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rategic significance)에 보조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450,000파운드까지 지원됨

라. EU로부터의 금융지원

EU 금융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가 유럽 내 각국의 보조금 지원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4가지의 구조적 기금(Structural Fund)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 European Social Fund (ES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EAGGF)
-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FIFG)

마.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지역의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상이하다. 주로 Cash Grants(현금지원), 저리의 자금대출, 지급보증, 투자기업에 자본참여, 건물 등 부동산의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① 잉글랜드(England) 지역

□ English Partnerships에 의한 투자인센티브

환경교통부산하 기관으로 1994년 설립된 English Partnerships은 잉글랜드지역의 낙후지역 또는 오염지역 등을 개발, 정화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동 기관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투자유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폐광, 오염된 공장부지 등에 대한 토양 오염 제거 및 재개발
- 도심 슬럼화 지구에 대한 재개발
- 택지 및 공장용지 개발
- 상업용, 산업용 건물건축, 작업공간 확보
-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개발
- Science Park 또는 Business Park개발

English Partnerships에 의한 투자인센티브는 도심 재개발지구 또는 개발촉진지구 투자가를 위한 공장부지, 인프라시설, 상업용지, 건물 공급(실비 / 405헥타르까지

다양한 공장부지 공급)하거나 재개발을 위한 차관알선, 합작투자주선, 차입자금에 대한 보증, 재개발을 위한 조언이나 권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지역 보조금(Regional Enterprise Grants)

지역 보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의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Government Office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고정자본 투자액의 15%이하로, 중기업의 경우 고정자본투자액의 7.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Assisted area의 경우는 15%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주로 Enterprise Grant Area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이다.

동 보조금은 지원시 정부지방사무소(Government Office)에서 사업개시 전 사업내용을 심사하여 지원하나 투자프로젝트의 경쟁력만 인정되면 최대지원 한도액 내에서 일괄 지원되고 있다.

200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RSA와 통합되어 「잉글랜드지역 투자를 위한 선별적 재정보조」(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

☐ 고용 훈련 보조금

교육고용부의 지원을 받는 TECs로부터 종업원의 고용 및 훈련과 관련되어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다. 그 종류로는 고용보조금과 훈련보조금이 있는데 고용보조금은 장기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급되며, 훈련보조금은 종업원에 대한 고용 전 훈련비용, 특정기술습득을 위한 교육비 등, 기타 교육훈련과 관련된 비용을 보조하는 통합 보조금이다.

☐ 기타 인센티브

사업계획 수립지원 재정지원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구상 초기에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전문가 파견인력 지원 인센티브도 있다. 아울러 공장건물에 대한 지방세와 임대료를 일정기간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 외에 SMART, RSA, Enterprise Grant 등이 존재하며 각각의 Regional Development Agency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지역

☐ 인센티브 제공

- 자본지출에 대한 현금지원(Cash Grants)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서 북아일랜드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고용창출효과를 기준으로 공장건설비(부지 포함) 기계설비 구입비의 최고 50%까지 무상지원한다. 동 보조금은 타 지역과는 달리 비과세소득으로 인정, 세금이 면제된다.
- 창업초기 인건비 보조(Start-up Costs, Employment Grants) : 북아일랜드 투자로 인해 창출된 고용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규모는 창업기간 동안의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지원기간은 3년이며, 고용인력 규모를 Invest Northern Ireland 측에 보장하는 경우 3년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받아 투자 또는 운전자본으로 전환사용이 가능하다.
- 이자감면 (Interest Relief Grants) : 비정부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최대 7년까지 금리를 보조해주고 있다. 최초 3년간은 상업금융기관 금리, 이후 4년간은 3%의 금리를 보조하고 있다.
- 공장임대료 보조 (Factory Rents) : 공장 임대시 임대료의 100%범위내에서 5년간 지원(Rent Grants)
- 시장개척비 보조(Marketing Development Grants, 40/60 Scheme) : 설립 후 최초 3년까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최대 6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보조한다.

☐ 세제지원

기계, 설비,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비용(Invest Northern Ireland로 부터 받은 Grants의 최대 45%까지 포함)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연 25%,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연 4%의 감가상각을 허용하고 있다. 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100% 감면해주고 있다.

☐ 금융지원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하여 준다. 동 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 제공 등 채권보전 조치가 필요하다.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orthern Ireland가 직접 주식투자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 종업원 교육훈련 지원

Invest Northern Ireland의 방계기관으로 훈련고용청(Training & Employment Agency)을 설립, 북아일랜드 투자기업에 대해 종업원 교육훈련 비용(교육기간 중 임금, 교육비용, 여행비 포함)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 연구개발비 지원

- 시장지향적인 제품 및 제조공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기획단계(Project Definition Phase)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15,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단계(Project Development Phase)에서는 최대 40%까지 (10% 추가 지원 가능 : Green Bonus) 250,000 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산학 공동연구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보조

③ 웨일즈(Wales) 지역

☐ 웨일즈 투자지원 서비스

외국기업이 투자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최종 마케팅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WDA가 관련기관과의 협력하에 Package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 교육훈련 인센티브로 종업원 채용,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지원범위는 개별 계약에 의함)를 보조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채용정보 제공 및 채용도 지원하고 있다.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 공장시설 가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공장부지까지의 전력선, 진입로, 상수도등 관련 시설 건설지원).

④ 스코틀랜드(Scotland) 지역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 보조금 : Land, building, plant, machinery, software와 intellectual property에 투자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의 금액은 협의가 가능하다. 대부분은 예상 자본 경비의 10-20% 정도이다.
- SMART : 연구 프로젝트가 6-36개월 기간이어야 하며, SPUR 보조금의 경우 연

구경비를 적어도 50,000 파운드 이상, SPUR Plus의 경우 약 1백만 파운드 정도의 연구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된다.

- SUR와 SPUR Plus : 연구 프로젝트가 6 - 36개월 기간이어야 하며, SPUR 보조금의 경우 연구경비를 적어도 50,000파운드 이상, SPUR Plus의 경우 약 1백만 파운드 정도의 연구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된다.
- 부동산, 인프라관련 인센티브 : 스코틀랜드내 개발촉진지구, 중간지구내의 공장부지 사무실부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성, 개발,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공장부지에 대한 상수도, 가스관, 전력선, 진입로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도 지원한다(설비건설지원 또는 무상건설지원). 스코틀랜드내의 도심지 입주업체를 위한 사무공간, 건물구입 정보를 제공 및 구입도 지원한다.
- 종업원 고용 및 훈련관련 인센티브 : 미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업원 채용정보 및 채용을 지원한다.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영국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차별적 특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내국 기업에게 제공하는 조세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홍보시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언급하기보다는 영국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세계최고 수준의 R&D 기관 및 설비 활용가능,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 완비,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서 자금조달 용이, 유럽시장 진출의 용이성, 세계 공용어인 영어 사용, 저렴한 가격으로 최첨단 유틸리티 사용, 양질의 노동력 및 낮은 인건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용, 금융지원에 대한 종합 서비스제공, EU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풍부한 문화생활 보장, 자녀교육 유리, 외국인투자 안내 전담조직 보유 등에 관한 사항을 유럽 내 타국과 계량적으로 비교하면서 홍보하고 있다.

2) 네덜란드

(1) 투자유치정책

1970년대 후반 네덜란드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광업, 섬유산업, 신발제조업과 같은 수많은 전통산업들이 폐쇄일로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정부는 국내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결방안들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제성 장관이었던 Ruud Rubbers가 「Commissariaat Acquisitie」(해외투자유치위원회)의 설립이라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해외직접투자의 장려를 추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Lubbers는 1982년부터 1994년까지 3대에 걸쳐 연속 네덜란드 수상직을 맡았다. 이 「Commissariaat Acquisitie」가 바로 현재의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의 전신이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주요목표는 국토전체의 균형성장과 고용창출이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인 투자는 점차 감소하고 자본 집약적인 투자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제조업 투자는 매력을 상실하였다.

네덜란드 투자진흥청(NFIA)은 투자임지로서 강점을 지닌 고도기술산업, 다국적기업의 유럽지역본부(EHQ), 물류센터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나라전체를 물류기지로 변환하여 다국적기업들의 물류·비즈니스 센터를 네덜란드에 유치하는 것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물류 및 비즈니스 기반시설에 대한 선행적 투자로 항상 주위의 국가들보다 경쟁력 있는 물류기반을 구축했다. 이리하여 1990년대 들어 EU시장 진출을 꾀하는 북미와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다국적기업 물류센터 중 63%가 네덜란드에 있다.

(2) 투자유치기관

네덜란드에는 중앙투자유치기관인 투자진흥청(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NFIA)과 10여개의 지방투자유치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NFIA와 지방투자유치기관 및 부서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으며, NFIA가 전체 총괄 조정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투자유치기관 지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정부 및 투자유치기관의 대외활동은 주로 NFIA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북브란트지역 투자유치기관(BOM)이 한국에 투자유치단을 파견할 경우 NFI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서울 NFIA사무소를 통하여 업무가 이루어진다.

가. 중앙투자유치기관 : NFIA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제성(EVD) 산하기관으로 경제성, 지방 투자유치기관, 국제유통협회(HIDC), 외교성과 밀접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다. 총 직원수는 70여 명이며 이중 본사에 25명이 근무하며 45명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본부에는 프로젝트팀, 관리지원팀, 마케팅 및 정보팀을 두고 있으며, 프로젝트팀은 해외 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편제로 운영된다. 해외 조직으로는 13개의 해외사무소가 있으며 이중 인원의 절반은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다.

※ 해외사무소: London, New York, Boston, San Mateo, Chicago, Austin, Atlanta, Tokyo, Osaka, Taipei, Seoul and Hong Kong

예산은 전액 국고예산으로 경제성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 예산규모는 670,000 유로였다.

주된 역할은 네덜란드 전체 투자유치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방 자치단체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네덜란드의 외국인 투자환경에 관한 자세한 정보제공, 투자 조사 사절단 구성 및 파견, 공장부지선정을 위한 입지조건 분석,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면담주선, 프로젝트 종료 후의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잠재투자기업 발굴업무는 13개의 해외 사무소에서 담당하며, 투자희망기업은 주로 미국, 일본, 대만, 영국과 독일 등에서 선정한다.

NFIA의 구체적인 홍보전략 및 수단은 다음과 같다.

- 특정산업분야의 시장 변화와 NFIA가 개발한 사업 내용을 게재한 간행물을 송부하여 잠재투자가를 접촉한 후 투자조사단 구성 및 지원, 투자환경 분석 및 투자관련 행정기관과의 면담주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부터 프로젝트담당자가 개입하여 투자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과 투자완료후의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 투자유치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박람회 및 전시회를 통한 투자유치

업무의 홍보와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잠재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 분기마다 뉴스레터 형식의 "Netherlands Investment News"를 발간하며 유럽의 2만 5,000개 유력기업에 송부한다. 이와는 별도로 분기마다 네덜란드의 투자입지로서의 매력도 분석과 산업동향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나. 지방 투자유치 기관

각 지역별로 투자유치기관이 있으며 대부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설립하였으며 대부분 정부지분이 50%이상이다.

- NOM (Investment and Development Agency for the Northern Netherlands)
 - . 흐로닝헨(Groningen), 드렌트(Drente), 프리슬란드(Friesland) 3개주 합동투자유치 기관
 - . 정부가 99.97% 지분 소유
- OOM (Business Development and Investment Agency for Overijssel)
 - . 오퍼라이셀(Overijssel) 지방 투자유치 기관
 - . 정부가 74.30% 지분 소유
- GOM (Gelderse Ontwikkelings Maatschappij)
 - . 헬더란드(GELDERLAND) 지방 투자유치 기관
 - . 정부가 66.60% 지분 소유
- BOM (North Brabant Development Agency)
 - . 북브라반트(NOORD BRABANT) 지방 투자유치 기관
 - . 정부가 64.5% 지분 소유
 - . 기능: 외국인 투자가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 벤처 캐피탈 파이낸싱, 신규 사업 개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LIOF (Limburg Development Company)
 - . 림버그(LIMBURG) 지방 투자유치 기관
 - . 정부가 일부 지분 소유
- WFIA (West-Holland Foreign Investment Agency)

- . 네덜란드 서부지역(헤이그, 레이덴, 델프트, 주테미어) 투자유치 기관
- . 시청,상공회의소, 지방정부 공동으로 설립, 운영

상기 이외에는 별도의 독립된 투자유치기관을 두지 않고 해당 행정 기구에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 프레보란드(Flevoland): Province of Flevoland
- 북홀란드(Noord Holland): Province of North Holland
- 유트레흐트(Utrecht): Province of Utrecht
 -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 암스테르담(Amsterdam): AFIO (Amsterdam Foreign Investment Office)
- 남홀란드(Zuid Holland): Province of South Holland
- 질랜드(Zeeland): Province of Zeeland,

(3) 투자 인센티브

가. 일반

외국인투자가 대상의 명문화된 투자 인센티브는 없으며, 대부분 내외국인 투자가 모두에게 적용된다. 네덜란드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환경, R&D, 기술, 에너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조금 지급과 세제 인센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낙후된 지방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방보다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 Energy grants
- Environmental incentives
- Regional investment grants
- R&D grants
- Tax incentives
- Training and wage costs subsidies

나. 지방정부 보조금

지방 보조금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출자하고 지방 투자유치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출자하는 경우도 있다.

다. 현금보조(Cash Grant)

몇 개 나후 지역은 일정 규모 투자시 국내외 투자자에게 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경제성)에서 조달하고 있다.

- 북부 3개 지방 흐로닝헌(Groningen), 프리슬란드(Friesland), 드렌트(Drenthe) 지방은 투자금의 20%까지 지원
- 트윈터(Twente) 지역과 림버그(Limburg) 일부지역은 13.6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에 대해 15%까지 지원
- 렐리스타드(Lelystad) 지역은 백만 유로 이하의 투자에 대해 15% 내지 20% 지원

라. 고용/훈련 보조금

다수의 고용/훈련 보조금이 있는데 주로 R&D 인력 고용, 일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고용, 장애인 고용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1>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 고용시 1인당 최대 5,500 유로 지원

예2> 고용, 훈련 비용 20%에 해당하는 회사 이익에 대해 비과세

고용, 훈련 비용 전액에 대해 연말 소득 공제

예3> R&D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용주세 13%까지 면제

마. 세금 인하 및 감면

일반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며, 법으로 정한 수혜 기준도 없다. 투자규모 및 고용규모에 따라 세무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세금을 인하 받거나 감면 받을 수는 있다.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명문화된 인센티브는 없으며, 국내기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기업설립 및 운영이 용이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도 비교적 간단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외국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게 되며, 특히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외환통제는 완전 자유화되어 있다.

네덜란드 투자환경 자체(지정학적 위치, 발달된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및 우수한 금융 시스템 등)가 보이지 않는 정책수단이다.

네덜란드가 내세운 우수한 투자환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지리적 이점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유럽의 주요도시 및 EU 인구의 40%가 네덜란드의 500Km 이내에 위치 또는 거주하고 있고, 항만 및 내륙운송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하루 이내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내륙운송의 경우 네덜란드의 유럽대륙 시장점유율은 37%, 유럽 Trucking 시장 점유율은 40%로서 네덜란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운송회사 및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 편리한 세관 및 창고 시스템

철저히 수출 지향적인 세관 및 창고 시스템이 있으며, 창고시스템의 경우 유럽 전역에 유통이 가능한 관리체계와 네덜란드 특유의 융통성이 많은 보세창고 시스템인 FEMAC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창고를 허가받은 회사는 자신의 일반 창고에서 입출고 하는 것과 같이 자유롭게 일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은 관세 납부대상인 수입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포장, 표시, 시험, 세척, 수리, 배합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유리한 세제 및 금융 제도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세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당국과 사전 협의하여 자신의 납세의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와 관련된 불필요한 번잡함을 없앨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Cost-Plus Ruling에 의한 납세이다. 대부분의 외국 근로자는 35% Ruling이 적용됨으로써 총 근로소득의 35%를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는 법인간 출자지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까지 면제되고 있다.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EU 회원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향후 어느 회원국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다른 회원국에 투자하거나 투자대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이 없게 된다.

네덜란드 투자유치 홍보전략 및 수단의 주요 기조는 첫째,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본부, 물류센터, 콜센터, 통합센터 등의 투자모델을 제시하고 그 필요성 및 이에 대한 네덜란드의 입지 환경을 홍보하고, 둘째, 일반적인 투자환경보다는 각 지역별 특화산업과 동산업의 투자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내 기업 활동 및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제도 및 환경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현금배당, 실물

배당, 자본이득 등 주식보유 관련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배당금, 이자 및 로열티의 원천과세 삭감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 과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유럽지역본부 및 금융센터 설립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주변국들의 세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 예로 2002년 1월 1일부로 22,689유로까지는 종전 30%에서 29%로, 22,689유로 초과에 대해서는 종전 35%에서 34.5%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였다.

3) 아일랜드

(1) 투자유치정책

아일랜드의 가장 큰 경제적 성공은 새로운 고용창출이다. 지난 12년간에 걸쳐 아일랜드의 고용수는 1.1백만명에서 1.8백만명으로 증가했다. 아일랜드의 전체인구수가 4백만 정도라고 보면 상당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고용창출, 생활수준의 증가로 인해 수세대 동안 아일랜드를 괴롭혀 온 이민문제를 해결했다. 아일랜드의 대규모 이민은 1840년대에 아일랜드를 휩쓴 감자기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8백만명이던 인구가 3백만까지 감소했다. 이 때부터 시작된 이민 행렬은 근년까지 이어졌으나 경제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이민이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해외로부터 연간 4만명 정도 아일랜드로 이주해 오고 있다. 아일랜드는 현재 지난 130년 기간동안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다.

1950년대말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수출진흥을 포함한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1965년에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아일랜드의 국민소득은 EEC 회원국 평균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주요산업인 농업부문의 성장이 침체되자 농업에서 제조업 분야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 1949년에 처음 산업무역부(Dept of Industry & Commerce)의 한 부서로 출발하였던 IDA(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를 1969년에 산업개발법(Industrial Development Act)에 의거 모든 산업발전을 담당할 독립기관으로 개편하였다.

초기에는 외국인 투자대상지로서 아일랜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1970년대까지는 국내투자 유도, 제조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1980년대 말 기업 구조조정에 외국인투자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비로소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정부조직 개편계획에 따라 IDA를 Forfas, IDA Ireland, Enterprise Ireland의 3개 기관으로 분리하고, Forfas는 기업, 무역, 과학기술 및 혁신을 위한 정책 및 자문, IDA Ireland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그리고 Enterprise Ireland는 기업의 국제무역지원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즉 IDA Ireland는 이제는 외국인투자 유치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되었다.

아일랜드에는 현재 1,100여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이 아일랜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이제 이들 기업을 빼고는 아일랜드 경제를 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전체 GDP의 25%,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일랜드의 경제적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국내외적 요소가 결합된 결과이며,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경제정책을 시행한 결과이다.

(2) 투자유치기관

투자유치기관으로서는 더블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IDA Ireland가 있으며 자국내 8개의 지역사무소와 서울을 포함 해외 15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 IDA의 기능

IDA는 ICT,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E-commerce), 제약·화학·의료기기, 금융·서비스센터 등의 국제무역서비스(Internationally Traded Services)를 투자유치 집중기업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IDA는 투자유치전략 및 목표수립, 유치전략의 실행,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잠재투자가 분석, 투자인센티브 승인 효율적인 업무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IDA의 투자유치활동의 특징은 투자유치과정에서부터 투자가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며 투자유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기 진출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투자기업과도 계속 접촉하며, 당해 모기업이 동종 또는 이종업종에 새로운 투자를 하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다.

1994년부터 신규투자와 증액투자를 각각 분리하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 증액투자비율이 전체 투자유치액의 60%를 상회하고 있다.

□ IDA의 조직 및 운영

- IDA의 조직

IDA는 이사회(이사장 등 3명은 공무원, 9명은 민간분야 출신), 국내 업종별 담당 부서와(Sectoral Division)와 해외사무소(70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직원수는 280여 명이다.

업종별 부서는 신규유망분야와 기존업종으로 구분되며, 인원비율은 4:6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장분석, 투자수요 예측 등을 위하여 8명의 연구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을 채용하고 있으며, 업종별 담당관은 해당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지식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분야를 교체하거나 해외로 보직을 변경한다.

재원은 경상예산·자본예산·운영예산 등으로 구성되며, 경상예산은 임금·사업 활동비 등 촉진활동에 제공되는 예산인데 이중 촉진 활동비가 50% 넘게 구성되어 있다. 자본예산은 투자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투자 장소 및 건물에 제공되는 비용이 포함된 예산으로, 연간 1억 5천만불에서 2억불 정도에 이르며, 기타 예산은 인력 채용 정도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예산이다.

해외사무소의 역할 및 주재지역은 본사의 계획과 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바뀌지만 지역사무소는 거의 변화가 없는 편이다. 본부는 부문별 촉진전략, 연간계획, 투자유치목표의 조정을 담당하며, 해외사무소는 새로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본부의 요청에 따라 잠재투자가를 관리한다.

아일랜드내 지역사무소는 본사 프로젝트 담당자와 협력하여 투자가의 주재지역에 공장설립 등 투자실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본부의 조직 구조는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대상산업을 고려하여 ICT, 의료기술, 국제서비스, 엔지니어링 등 산업별 부서를 두고 있다.

각 산업별 조직의 유치 업무는 1994년부터 신규투자자와 기존투자자의 증액투자 유치 업무로 각각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프로젝트 담당자(Project Officer)를 두어 해외사무소와 연계된 one stop 서비스를 총괄토록 하고 있다. 마케팅서비스 부서는 홍보와 출판을 담당하며 그 밖에 해외사무소를 관리하는 부서, 기획, 국내사무소, 인사, 건물관리 및 운영관련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 IDA의 운영

IDA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지만 일반기업과 같은 마인드로 업무를 한다. 인력 충원과 급여수준은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맞춰 운영되나 다른 정부기관과는 달리 채용, 해고, 고용조건의 결정은 IDA에 일임되어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프라 개선이나 조세문제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정부부처들로 하여금 친기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한다. 가장 큰 자산이 관련 정부기관을 네트워킹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24시간내에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위(Moral Authority)가 있다. 아일랜드 자체가 외국기업이 없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PM(Project Manager)의 권한 및 역할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회장이 방문하여 장관 등의 고위공무원 등과 면담을 할 때에도 PM이 반드시 참여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주니어 레벨에게도 많은 권한을 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 IDA의 실적

< 고용창출 >

구분/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고용창출(명)	15,959	17,634	22,838	13,282	11,743
총 지원업체(업체수)	1,165	1,276	1,262	1,158	1,094
총 정규직원수(명)	117,754	126,127	140,896	136,448	133,246

(자료원 : IDA Ireland Annual Report 2002)

< 분야별 고용창출 수 >

분야/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국제/금융서비스	7,179	8,465	9,418	6,884	5,681
전자/엔지니어링	6,959	6,870	10,981	4,136	3,868
제약/건강관리	1,153	1,566	1,370	1,479	1,525
기타 산업	668	733	1,069	783	669
합 계	15,959	17,634	22,838	13,282	11,743

(자료원 : IDA Ireland Annual Report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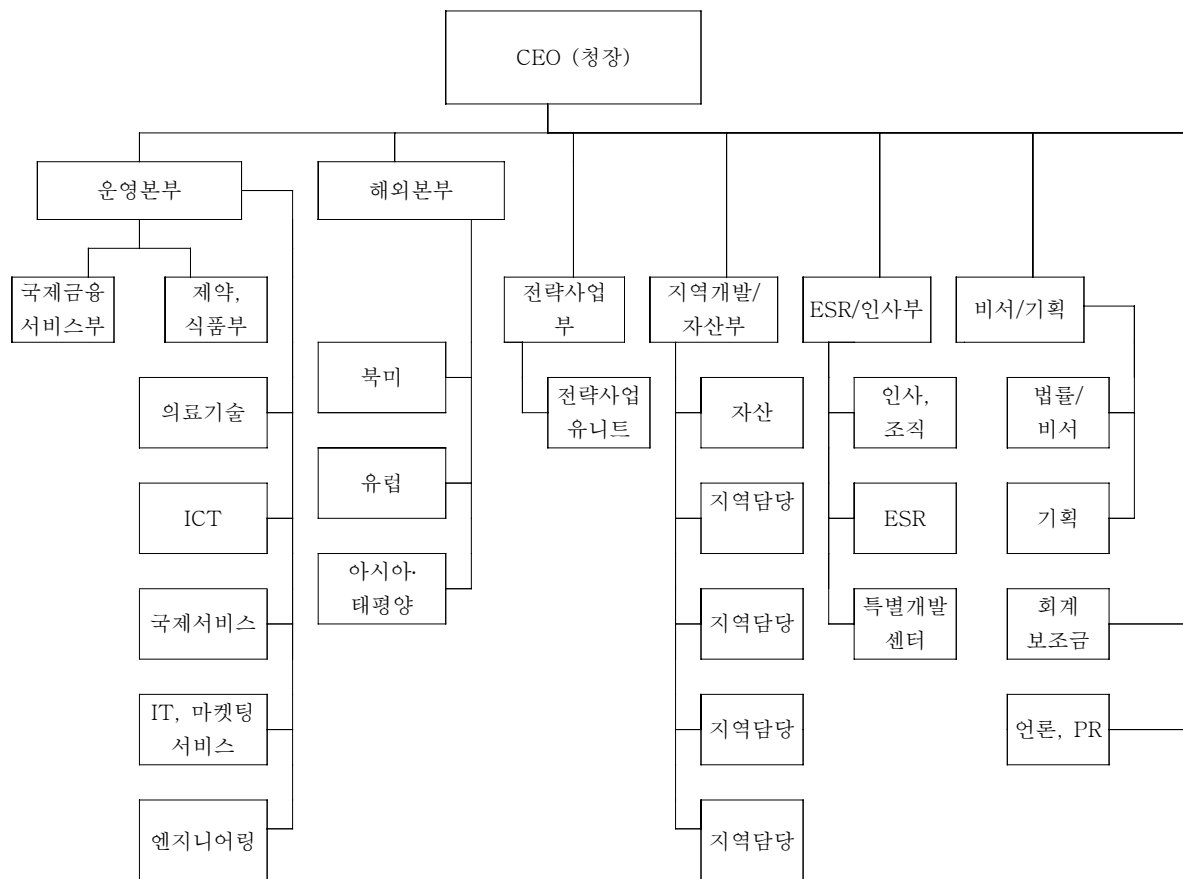
< IDA지원기업(아일랜드투자기업)의 국가별 분류 >

국가	미국	독일	영국	기타유럽	아태지역	기타	합계
기업수	507	148	129	216	55	39	1,094

< 신규투자건수 (2002년) >

구분	총 프로젝트	신규투자	증액투자
프로젝트 건수	55	31	24

< IDA의 조직도 >



(3) 투자인센티브 제도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또한 조세 및 투자인센티브에 있어 자국 기업 및 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2003년 1월부터 12.5%

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보조금(Grants)는 다음과 같다.

- 자본보조금(Capital grants) : 투자기업의 고정자산 지출에 대한 현금보조이며 부지구입 및 개발, 건물, 신규시설 및 장비 구입시 보조
- 고용보조금(Employment grants) : 고용보조금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고정자산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기업에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이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액수는 실제 창출한 고용수에 따라 산정된다.
- 직업훈련 보조금(Training grants) : 기존 투자기업이 기술기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아일랜드나 해외에서 훈련받는 직원들의 임금, 여행, 생활비용 등이 해당된다.
- 연구개발 보조금(Research & Development grants) : 연구개발시설의 설치 및 확장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부지, 설비 및 장비, 임금, 컨설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타당성 조사 및 기술습득도 해당된다.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아일랜드 또한 다른 여타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내외국기업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 한 가지 다른 나라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대외수출의 80%를 외투기업이 차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는 아일랜드 생존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일랜드가 내세우는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점으로는 EU에서의 가장 낮은 세율, 우수한 노동력, 낮은 운영비, 뛰어난 정보통신 인프라, 첨단물류시설, 쾌적한 생활환경 등이다.

4) 싱가포르

(1) 투자유치정책

투자유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지역개발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로 정착되면서 세계 초우량기업 유치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기획유치 접근방식으로 다국적기업의 투자 계획과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경제발전 목표간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외국인투자 유치를 고용창출과 내수 진작에 활용하고 있다. 즉, 인센티브 부여·세제감면 재심사시 고용증대, 자국소비 진작효과 등을 중점 고려하고 있으며, 공장·빌딩 건축시 하한규제가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생산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 및 EDB 등은 국가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하여 투자유치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EDB의 업무가 많아 ERC(ECONOMIC REVIEW COMMITTEE/경제검토위원회)가 정책적인 전략과 방법을 수립 제시하기도 한다.

1999년 EDB가 수립한 Industry-21에 의한 전략적 투자유치 및 진흥분야는 전자, 화학, 생명과학, 엔지니어링, 교육, 보건의료, 물류, 방송미디어, 다국적기업 본부(HEADQUARTERS) 유치 등이며 이의 달성을 위한 전략은 산업 클러스터 내부 및 클러스터간 다각적 MATRIX 구축, 세계 일류 역량과 글로벌 COVERAGE 구축, 혁신 촉진, 국내 재능 계발과 해외 재능인력 유치, 우호적 사업 환경과 세계 일류 인프라 구축 등이다.

(2) 투자유치기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 Economic Development Board of Singapore)이 싱가포르의 투자유치 담당기관이다.

1961년 재무부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1979년 이후 현재까지 통상산업부 법정기관(Statutory Board)으로 되어 있다. 국내와 해외를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개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막대한 공헌을 해 왔다는 점, 여전히 싱가포르 경제발전을 책임지고 각종 인센티브 수립운영에 권한이 있는 점 등 그 위상은 매우 높다.

일부업무들이 1968년 새로운 조직 설립과 함께 분리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및 해외기업을 다 포괄하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이 주요업무이다. 투자유치관련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무역개발청(TDB), 주룽도시공사(JTC), 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에 투자관련 전 분야에서 one-stop 서비스 제공
- 투자입법, 인프라 및 인력확보, 조세인센티브 제공
-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투자자에게 정보제공·산업용지·운영시설·금융·사업 파트너 및 숙련인력 확보가 가능토록 후원

해외본부, 클러스터 개발, 기업서비스, 기업 환경 및 계획 등의 4개 본부가 있으며, 17개 해외조직망을 두고 있다. (북미 7, 유럽 5, 아시아 5 개)

EDB에서 근무하다 담당 혹은 지원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또 정부 부처를 포함 다른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EDB 조직 특징 중 하나로서, 직원 평균연령이 낮다는 것인데 1961년 26세, 1971년 25세, 1981년 32세, 1990년 32세로 인력충원과 이동이 매우 빈번함을 반영하고 있다.

(3) 투자인센티브 제도

싱가포르는 조세감면과 금융지원(보조금 지급 및 융자지원)에 근거한 투자인센티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간접지원금융, 투자기업의 합작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소유지분 투자 등 여러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센티브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개척자격(Pioneer Status) : 싱가포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생산을 위한 신기술 도입의 경우 제품유형, 기술수준에 따라 5-10년간 법인세를 26% 감면함. 면세기간중 손실은 기간종료 후로 이월가능하며 또한 개척자격 기간 종료 후 추가 개척 자격(Post Pioneer)으로 인가받게 되면 최장 10년간 10%의 법인세율 적용
- 생산설비 확장(Expansion Incentive) : 기존 제조기업이 1천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생산설비를 확장할 경우 확장부분의 소득에 대해 확장일로부터 최고 10년까지 법인세 감면
- 투자소득 공제(Investment Allowance Incentive) : 개척자격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치를 받지 않은 기업이 승인된 산업분야(제조, R&D, 건설, 식수절약) 활동을 위한 자본설비에 5년의 법정기한내 투자를 시행할 때 신규투자액의 50%까지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 사업본부 설치(Operational Headquarters) :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업으로서 싱가포르내에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자회사를 관리하

는 경우 관리비·이자·로열티·외환거래수입·역외투자수입 및 기타 소득에 대해 설립 후 최고 10년까지 본부 법인 또는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5-10%의 세율을 적용하며, 외국 원천배당소득은 10년간 비과세이며 비과세 소득으로 지불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 가속 감가상각 지원 (Accelerated Depreciated Scheme) : 기계설비에 대한 통상적 감가상각율(초기 20%, 매년 5-20%)대신, 컴퓨터 및 자동화설비·산업용 로봇 등에 대해 연 100% 또는 33.3%의 감가상각을 인정해 주거나 산업용 건물에 대하여 25년간의 감가상각 인정
- 해외 융자액에 대한 지원 (Approved Foreign Loan Scheme) :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20만 싱가포르 달러 이상 융자를 받은 경우(단, 면세액이 해외에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이자에 대한 원천과세 감면
- 금융지원 : 금융지원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자진흥 담당기관인 경제개발청과 기타 유관기관들의 자체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규모 투자는 경제개발청(EDB)이 개별 투자건마다 비공개로 지원폭 결정

(4) 투자유치제도의 특징

싱가포르에서 투자유치 혹은 진흥을 위한 인센티브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된다.

싱가포르 투자유치 활동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Industry Targeting : 싱가포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전후방 산업 유기적 연관 구축을 위해 사전 대상 산업 명확화
- Company Targeting : 유치대상 후보기업이 싱가포르 경제에서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조직, 고용인원, 경영현황 등 사전 조사
- Monitoring : 케이스별 심사에 의한 맞춤형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수혜 기간중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기업과 밀접한 관계 및 지원체계 유지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의 특징은

- 중장기 계획/목표 고수 : 1999년 수립한 I-21 계획이 2004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

효. 1998년 EDB가 Educational Hub를 표방하면서 이후 10년 동안 10개의 세계 일류급 교육기관 유치 목표 추진

- 미시적이고 구체적 유치분야 설정: 유치대상 분야가 한정됨으로써 효율적 자원(인력과 시간) 투입 가능
- 사전 충분한 조사에 의해 성공가능성 제고 : 경제동향과 투자가 심층 조사로 투자가 조차 인식하지 못한 설득력 있는 투자유도

5) 한국과의 비교

(1) 주요국 투자유치 배경, 정책목표, 정책 수단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한국
투자유치 배경	전통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실업문제의 정치적 사회적 쟁점화	대량의 이민 및 산업의 미발달로 인한 경제위기	전통산업의 침체로 새로운 성장동력 필요	협소한 국토와 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산업의 국제화 고도화 필요	경제구조개선을 통한 경제발전필요(산업·기업구조개선·외환위기 극복)
투자정책 목표	· 고용창출 · 낙후지역균 등개발	· 고용창출 · 산업구조의 고도화, · 지역개발	· 국토전체의 균형성장 · 고용창출	· 세계화중심 · 산업구조 고도화 · 첨단산업 육성	· 산업구조의 고도화 · 경제구조 개선
투자정책 수단	보조금 위주 신축적 운용 보조금산정기준을 1인당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	· 낮은 법인세율 (12.5%) · 보조금	· 국토전체의 균형성장 · 고용창출	· 세제감면 위주 금융 지원 발달 (신축적운용) 조세 감면을 기술수준과 연계	조세감면위주 산업지원 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 사업으로 인센티브 대상 제한

(2) 한국의 투자유치제도 발전 방향

1998년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이후 Invest KOREA)의 설립이후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 한국도 외형적으로는 모범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실제 운영 및 활동면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다. 한국이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 제고

투자정책 수립과 정책집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과 능력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중복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투자정책 수립은 중앙정부가, 홍보 및 촉진활동·투자정보 등 인프라 구축은 Invest KOREA, 공장설립 등 투자물의 가시화 과정상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 Invest KOREA에 좀더 실질적인 권한 부여

프로세스별 업무분장에 따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부와 Invest KOREA, 지방자치단체간에 유기적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모범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투자진흥기관(IPA)에 비해 Invest KOREA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 최소한 보조금(Grants) 지급에 관한 결정권 등은 Invest KOREA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투자유치 담당자의 역량 강화

어떻게 보면 조직도상의 권한보다도 투자유치 담당자의 역량강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투자유치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담당자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좌우된다. 담당자들의 전향적인 프로의식 함양과 전문지식 배양 등 담당자의 역량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자유치 경험이 일천하여 투자유치 전문 요원의 양적, 질적 육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투자유치관련 전문요원 육성프로그램을 국가차원 및 관계기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KOTRA의 투자MBA 창설 및 PM교육의 정례화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제도 (합의에 의한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1) 영국의 노동제도

(1) 노동정책

전통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관계는 법률로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고 있으나 집단적인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쟁의조정 등의 노사자율을 중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던 만성적 재정적자, 생산성 저하, 경쟁력 약화, 무역적자, 끊이지 않는 파업 등 불명예스러운 영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민영화, 세금인하, 재정적자 억제, 공공지출 삭감, 노동시장의 탄력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전개하여 경제성장 및 매력적인 외국인투자 대상국가라는 평가를 얻었다. 즉,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시간의 최저기준 보장, 노동조합 민주주의 및 노동쟁의에 대한 규제 등을 실시했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노동정책은 전통적인 노사자치주의 원칙하에 경제성장을 위한 조치(외국인투자유치 포함)로서 다양한 노동규제정책을 전개중에 있다.

(2)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노동조합 조직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없으며 산업별 직종별 기업별 등 자유로운 형태로 조직이 가능하나, 전국단위의 산업별 조직에 기업단위의 지부가 일반적이다.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부담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정치기금 설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원, 정치자금 기부 등이 허용되고 있다.

단체교섭은 임의주의 전통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나, 사용자가 일정한 노동조합을 교섭상대로 인정하면 일정한 법적효과가 발생되며(노동조합 인정 및 인정취소 제도), 복수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3)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노사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구속력이 발생하며, 단체협

약의 유효기간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이다. 즉 파업 또는 직장 폐쇄시는 조합기금에서 근로자의 생계비가 보조되며 쟁의행위 중 회사의 대체근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가능함

(4) 노동쟁의 조정절차

노동쟁의는 1차적으로 노사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정부조정기구 및 중앙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알선, 중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파업의 경우 법원의 중지명령(Injunction)으로 냉각기간을 설정하기도 한다.

(5) 경영참가(노사협의회) 제도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경영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영참가제도로써 주로 직장별 종업원 대표제를 통해 업적별 임금, 작업장 규율, 인사계획, 기계도입 및 재정문제 등을 결정하고 있다.

(6)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제도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평균 48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대체로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 타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업사정을 감안하여 노사간 협의를 통한 탄력적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주휴일은 주1일이나 단체협약상 2일이며, 무급이 일반적이고 주휴일의 유·무급 결정 및 휴일근로의 할증료 등은 단체협약으로 결정된다.

공휴일은 Bank Holiday로서 8일이 있으며, 근로자의 날이 지정되어 운영중이다.

연차휴가의 일수, 부여일수 등은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자유로이 결정가능하나, 통상 4-6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나 통상 휴가가 없다.

(7) 정리해고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업무능력·자격·행태에 관련한

사유 및 잉여노동력 또는 법률상 제한으로 고용을 지속시키기 불가능한 경우 등)를 제시하고 입증해야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영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영업상의 이익에 비추어 특정한 종류의 작업수행을 정지 또는 감소(일시적인 경우 포함)하거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예상될 경우도 가능하다.

2) 네덜란드의 노동제도

(1) 네덜란드식 경제개혁 : 폴더모델 (Polder Model)

* 폴더(Polder)란 바닷물을 제방으로 둘러싸서 만든 땅인데 제방이 무너지면 서로가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하여 네덜란드의 노사가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상호합의에 의한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네덜란드 특유의 노사관계 모델을 폴더모델(Polder Model)이라고 함

가. 경제개혁의 배경

□ 70년대 네덜란드 病(Dutch disease)으로 인해 80년대초 심각한 위기에 직면

네덜란드병은 막대한 천연가스 개발수익에 따른 방만한 사회보장제도 운영, 이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및 노사갈등에 기인하고 있다. 1979년 오일쇼크로 인해 경기침체가 가속되었다.

- ▶ 81-8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 ▶ 도산업체 속출
- ▶ 실업자 급증 (실업률 12%)
- ▶ 급격한 물가상승 (연평균 6.2%)
- ▶ 재정적자 확대 (GDP 6%)

나. 경제개혁의 내용

경제개혁은 1983년 루버스 내각부터 임금인상 억제를 통한 고용촉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주요 골자로 지속 추진되어 왔다.

□ 임금인상 억제

- 네덜란드 경제개혁은 노사대표가 Wassenaar 협약 ('82. 11. 24)으로 임금동결에 적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본격 착수
- 당시 노동계 대표는 전수상인 Kok 수상
-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고비용 구조 타파
- 노동시간 단축, Part Time제 도입 및 집단 임금협약체제 구축

< Wassenaar 협약 >

목표	경제회복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조측 수용사항	경영자단체 수용사항
	○ 임금동결 ○ 임금 물가연동제 2년간 시행유보 - 83-84년 실질임금 9% 감소효과 ○ 고용주의 사회보장세 부담 완화 - 노동자 부담 증가	○ 노동시간 단축 (5%) ○ 노동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고용 창출 (Job sharing) ○ 사회보장제도 골격 유지

☐ 사회보장제도 개혁

- 80년대말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 혜택축소(최종임금의 100% → 70%) 및 수혜기준 강화 → 민간보험 허용을 통해 경쟁도입 → 기구개편 및 민간운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순으로 추진

☐ 시장기능 강화

-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회사설립 규정의 완화, 신 경쟁법 제정, 영업시간 자유화 등 각종 규제 완화
- 노동자 해고절차 간소화 (해고절차를 3주로 단축), 임시 고용계약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 고용 촉진

- 사회복지 혜택에 의존하여 놀고 먹는 풍토(wealfare without work)를 근절시키기 위해 90년대초 적극적으로 노동 정책 추진
- 장기실업자, 청소년층 등 소외계층의 고용확대 추진, 고용 인센티브로써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경감

☐ 공기업 민영화

- 80년대말 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 50개미만으로 축소
- 국가 인프라 투자에 민간자본 적극 유치

다. 주요 성과

☐ EU 평균보다 0.6%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 기록

☐ 임금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

- 단위당 인건비 상승률 : 8%(70년대) → - 0.5%(83년) → -2.8%(84년)으로 감소
- 기업의 투자수익률 : 5%(82년) → 17%(95년)으로 증가

☐ Part Time제 도입으로 EU 평균보다 1.3% 이상의 고용창출

- Part Time 근로자는 휴가, 교육, 승진 등에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
- Part Time 근로자 비율
 - 남성 : '83년 4% → '98년 16%
 - 여성 : '83년 20% → '98년 38%

☐ 정부의 재정적자 개선 및 국민들의 노동기피 현상 감소

(2)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가. 노조의 경영참여

☐ 경영참여 허용여부 : 부분적 허용

노조자체가 제도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노무협의회(Works Council)”를 통해 사안별로 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노무협의회를 통한 경영참여가 제도화된 것은 “노무협의회법(Works Council Act)”이 발효된 1979년 9월 1일부터이다. 동 법의 시행으로 직원 수 3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Works Council”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 노무협의회(Works Council)

노무협의회는 3-25명으로 노동자들에 의해 직선되며, 위원 중 1명이 협의회장에 임명된다. 상당수의 협의회 위원이 노조원 중에서 선출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노무협의회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심각한 부정이나 관련 사업장 폐쇄의

경우 외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법률에 정한 주요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무위원회 또는 경영진의 요청에 의해 회의가 소집되는데 요청 후 2주내에 소집된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노무위원회의 권고 및 동의 절차에 따라 주요 경영현안이 결정된다.

노무협의회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수가 100명 이상 되는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 주요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노무협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이며, 투자, 인수합병 등 회사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노무협의회의 권고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참여의 폭이 넓다. 다음, 직원수 35-99명의 기업들의 경우, 노무협의회의 구성은 의무화되되, 투자나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관여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수 35명 미만의 소기업들의 경우, 노무협의회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노무협의회의 경영참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경영현안에 대한 권고

노무협의회법상 합병, 사업장 폐쇄 및 이전, 주요 구조조정, 주요 투자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위원회의 권고절차를 경유한 후 결정할 수 있음.

②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

노무협의회법상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연금, 보험, 수익배분, 저축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가에 관한 사항
- 성과급 시스템에 관한 사항
- 근로상의 안전, 건강, 복지에 관한 사항
- 임명, 해고, 승진 등의 정책에 관한 사항
- 교육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하위직원의 직위에 관한 사항

나. 임금협상제도

□ 임금협상 매커니즘

○ 단체근로협약(CAO)

네덜란드에서 가장 일반화된 임금협상 방식은 산별 노조와 산별 경영자 단체간의 단체 근로협약이다.

단체 근로협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체결되며, 동 협약은 해당 산업 내 모든 기업에 구속력을 가진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사회부)는 동 협약을 특정산업내의 모든 기업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수백개의 세부산업별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약국, 제방, 언론, 보석, 이미용, 인쇄, 건설, 호텔·요식업 등이다.

또한 동 협약은 임금 뿐 아니라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의무, 근로시간, 휴가, 승진, 연금 등 근로환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 개별근로협약

단체근로협약(CAO)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상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매년 개별 임금협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기업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노사합의하에 가장 유사한 업종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식품 수입업체의 경우, 식료품 도매업계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 임금협상시 급여인상 수준 결정요인

물가상승률이 가장 기본적인 고려요인이며, 국내외 경제여건이 물가상승률의 반영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2001년 경기침체 이전에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다소 상회했으나, 그 이후에는 경기를 반영하여 임금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또한 실업률 증가도 임금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 여가선택도의 증가 및 실업 해소 대책으로 인해 임금인상 대신 근무시간 단축, 조기퇴직 제도 도입, 휴가일수 확대 등의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다.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 실업보험 (WW)

○ 단기 채용직원의 경우

- 수혜자격 : 실업시점 이전 39주 동안 26주간 채용상태에 있어야 함.

- 수혜범위 : 6개월간 최저임금의 70%를 지원

○ 급여와 연동된 실업보험

- 수혜자격 : 실업시점 이전 5년 중 52일/년 이상 급여를 받은 기간이 4년 이상 일 것
- 수혜범위 : 최종 급여의 70%로 일일 급여 165유로를 넘지 못함.
- 수혜기간 : 근무기간에 따라 상이
 - 4년 근무시 : 6개월
 - 5~10년 근무시 : 9개월
 - 10~15년 근무시 : 1년
 - 15~20년 근무시 : 1년 6개월
 - 20~25년 근무시 : 2년
 - 25~30년 근무시 : 2년 6개월
 - 30~35년 근무시 : 3년
 - 35~40년 근무시 : 4년
 - 40년이상 근무시 : 5년

○ 실업보험을 위한 재원

- 사용자 및 근로자가 공동 부담
- 급여의 5.8%를 근로자가 1.55%를 사용자가 보험료로 부담
- 1일 급여 57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1일급여가 165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됨.

□ 연금제도

○ 사보험

-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나 대부분의 단체근로협약(CAO)이 연금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업종별로 연금 지급률이 다소 상이하나 통상 최종 급여의 70%가 지급됨.
- 보험료 수준도 단체협약에 따라 차등이 매우 심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분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음.

○ 정부 연금 (AOW)

- 정부 연금(AOW)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임.
- 네덜란드내 모든 근로자는 법에 의해 급여의 17.9%를 연금 보험료로 납세.

- 65세 이후 연금수혜를 받으며, 근무기간에 따라 소정의 연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
- 15세~65세까지 전 기간을 근무한 경우 전액이 지불되며,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햇수만큼 1년에 2%씩 연금이 삭감됨.
- 2003년 AOW 연금 총액은 기혼자의 경우 월 622.26유로이며, 미혼자의 경우 906.14유로임.

3) 아일랜드의 노사관계

(1) 유럽의 지진아(European laggard)에서 켈틱호랑이(Celtic Tiger)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변방의 가장 못사는 농업국가인 아일랜드였다. 19세기의 감자기근과 이로부터 촉발된 이민행렬,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의 종교분쟁 등이 아일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지진아는 지난 20여년의 용틀임을 거쳐 이른바 켈틱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다.

아일랜드의 성공은 외자 유치와 더불어 이를 가능케한 안정적인 노사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1987년 이래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협약은 완만한 임금인상과 노사안정을 가져왔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무엇보다도 수출 증가로 나타났다. 1985년에는 1억 6,400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외자유입이 2000년에는 241억 달러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100억 달러에서 760억 달러로 늘었다.

(2) 노사관계 개황

노사관계 측면에서 아일랜드는 앵글로 색슨의 다원주의 모델로 유형화된다. 이는 파편화된 이해관계, 통합적 조정의 부재,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 분쟁을 특징으로 한다.

노동조합 전국조직으로서는 아일랜드 노동조합회의(Irish Congress of Trade Unions : ICTU)가 있다. 2001년 현재 ICTU는 64개 노조, 약 76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으나 부문조직은 건설업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사용자들은 아일랜드 경영 및 사용자 총연맹(Irish Business and Employers' Conferderation: IBEC)을 조직하고 있다. IBEC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3,700여개 회사 종업원 30만명 정도를 포괄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단체교섭은 노사간 자발적인, 동시에 회사차원의 교섭이라는 앵글로 색슨 모델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노동조합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자동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

임금교섭은 전국수준(ICTU)에서 진행되며 부문수준에서 단체교섭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전국교섭의 전통은 1946년부터 1981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2년 이래 이러한 전통이 사라졌는데 당시 집권한 중도우파정부가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와 그러한 교섭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독자적인 교섭을 선호하였다. 사용자들은 기업수준에서 교섭할 경우 노동비용의 통제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1982년부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1986년까지 전국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기침체와 증가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은 기업의 지급능력을 상회하였으며 노사분쟁 역시 급증하였다.

제1차 사회적 협약에 의해 임금교섭은 다시 전국교섭으로 환원되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은 노사대표간의 전국교섭에서 이루어지며 정부는 사용자로서 토론에만 참가할 뿐이다.

아일랜드의 정상조직은 가맹조직에 대해 축출의 위협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식적인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작업장 수준의 단체협약이 전국수준의 사회적 협약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율과 분권화된 교섭구조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협약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조항으로 알려져 왔다. 즉 이러한 조직구조에서는 전국협약에 대한 하부단위에서의 순응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높은 조직율과 관료적으로 집중화된 조직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속한다.

(3) 아일랜드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전개

가. 사회적 파트너십의 형성

아일랜드에서 1987년 사회적 협약이 부활하게 된 이면에는 1980년대 중반 아일랜드가 경험한 경제적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부채가 140%에 달하는가 하면 낮아진 성장률은 초유의 대량 실업사태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소수정부인 Fianna Fail 정부는 야당의 지지하에 3자간의 협상을 추진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은 정부가 경제위기를 이유로 대처의 영국 사례를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대규모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정부역시 그들의 정책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1987년, 3년간 유효한 최초의 협약인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 (Programme for National Recovery : PNR)* 이 합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임금인상을 연 2%로 제한하는 대신 고용의 창출과 세금의 감면,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의 확대를 가져왔다.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협의기구는 중앙집중적인 노동조합 조직과 친노동자적인 정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익대표기구의 집중도와는 무관하게 내부의 합의구축을 가능케 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존재가 사회적 협약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1987년의 PNR 이래 2000년까지 매 3년마다 국가와 노사단체 사이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사회적 파트너십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은 임금상승률 완화 및 세금감면, 고용창출과 장기실업의 해소,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해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보면 1-3차 사회협약은 위기극복, 성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관심사였고 90년대 후반의 4차협약(소득 2만달러 도달) 이후는 분배와 사회적 형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사회적 협약기구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는 전국경제사회포럼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NESF)이다. NESF는 1993년 설립되었으며 주요 경제 및 사회정책 이슈에 관해 가능한한 광범위한 기반 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래 NESF는 남녀평등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ESF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당사자로서 노·사·정외에도 정당 및 농민단체, 그리고 실업자,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빈곤층을 대표하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 수는 정부에 따라 다르지만 2002년의 경우 62명으로 부문별 배정인원은 다음과 같다.

- i) 의장 1인 및 부의장 1인
- ii) 국회(15명)

- iii) 사용자단체(5명), 노동조합(5명), 농업조직(5명)
- iv) 시민사회단체: 여성(3명), 실업자(3명), 빈곤층(3명), 청년(1명), 노인(1명), 장애인(1명), 환경(1명), 기타(2명)
- v) 정부 : 중앙정부(5명), 지방정부(5명), 독립인사(5명)

NESF는 전체회원이 참가하는 본회의와 본회의의 정상적인 기능과 효율성을 지원하는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그리고 12명 미만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보고서를 준비하는 프로젝트팀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임시로 작업그룹들이 구성되기도 한다.

한편 협약의 이행, 특히 임금조건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2000년말에는 전국협약이행기구(National Implementation Body: NIB)가 설치되었다. NIB는 핵심정부부처(수상부)와 ICTU 및 IBEC(경영자단체)의 지도자로 구성된다. 또한 NESF는 2003년 1월 NAPS(National Action Plan) 사회통합포럼을 출범시켰다. 이는 사회파트너십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 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NESF가 연 1회 소집한다.

전국경제사회협의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NESC)는 NESF와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다. NESC는 1973년에 설립되었으며 사회적인 파트너십의 기반위에서 정부에 대해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갖는다. NESC는 NESF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5명), 기업 및 사용자조직(5명), 농업조직(5명), 시민사회(5명) 및 정부대표(10명)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NESC와 NESF는 동일한 부의장을 가지며 위원들도 상담부분이 중복된다. 또한 수상부와 NESC 그리고 NESF사이에는 연락위원회(liaison committee)가 있어 두 조직간의 조정과 보완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아일랜드 경제정책의 중추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사회적 파트너십의 경제적 효과

가. 사회적 파트너십의 경제적 효과

아일랜드의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한 동력으로서 재정부 및 경제정책에 대한 합의형성, 유럽연합(EU) 가입,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동원한 외자 유치, 젊고 유능한 노동력 확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파트너십이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지원하였으며 경제정책에서 합의와 안정성을 낳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 유치에 기여함으로써 외자주도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외자 유입현황을 보면 1990-95년 사이에 연평균 11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자유입이 1998년에는 1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0년에는 2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유입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경우 107.1%를 차지할 만큼 아일랜드 경제에서 외자의 역할은 핵심적이었다. 현재 아일랜드에는 1,100여개 이상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주된 진출분야는 전자 및 컴퓨터, 제약, 의료, 그리고 화학부문이다.

고용측면에서 1998년 현재 외국인 자회사에 고용된 제조업 노동자의 비율은 36.8%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판매에서 외국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4.9%(1998년)이며 부가가치에서는 40.2%(1999년), 그리고 수출에서는 거의 90%(1999년)를 차지한다. R&D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6%이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많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유럽진출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인 요인이나, 영어사용권으로서 미국자본과의 문화적 친화성을 갖추었다는 점, 그리고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과 통신 등 정비된 인프라 구축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으로서 산업개발청(IDA)를 설립하여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걸쳐 정보 제공, 자문 및 지원 기능을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나 법인세의 감면, 현금보조금 지원 등도 외자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외자 유입을 촉진한 또 다른 이유는 노동측의 요인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1987년 이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인상의 자제와 노사안정은 아일랜드를 유럽진출의 관문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나. 사회적 취약성과 사회통합

아일랜드의 급속한 성장은 사회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즉 지난 10여년간 아일랜드의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외국인 자본과 경제적 자유주의(규제완화, 자유무역 및 외자에 대한 개방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지적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양극화와 하부차원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미정착,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 특히 다국적기업에서의 노조인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에서 지난 15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을 노정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협약과정에서 사회적 통합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노동조합 인정조치의 부분적인 도입, 어린이 수당의 증액,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모델은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모델의 도입경로를 이루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취약성을 역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정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싱가포르의 노사관계

(1) 싱가포르 노조의 경영참여 현황

싱가포르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파업 또는 직장폐쇄로 인한 조업중단 사례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사라졌다(1986년과 1990년에 한 건씩 소규모 분쟁 발생). 그 이유는 노사정 삼자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임금인상과 근로조건과 관련한 모든 협상이 제도권내에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노사정 3자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노조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인식된다.

(2) 싱가포르의 노사 임금협상

싱가포르의 임금 협상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임금위원회(NWC)의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합의

- 국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권고안에 따라 임금협상을 타결함
- 임금 가이드라인은 경제상황, 노동시장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됨

○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MOM) 중재과정

- 임금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간의 임금협상이 실패할 경우, 인력부에 중재를 요청하게 됨.
- 인력부에서는 양측을 중재하게 되나, 인력부의 중재안은 법적 효력은 없음.
- 그러나 인력부의 중재는 성공률이 높아 분쟁의 약 90% 이상이 해결됨.

○ 산업중재위원회(Industrial Arbitration Court; IAC)

- 인력부의 중재가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산업중재위원회임
- 이 단계는 자발, 강제 단계임. 일방이나 양방이 산업중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분쟁이 공공의 관심사가 될 경우, 정부에서 산업중재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음.
- 일단 산업중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양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최종 판결에 무조건 따라야함

○ 임금협상시 급여인상 수준 결정요인

- 주요결정요인은 경제성장률과 산업별 성장률이며, 여기에 물가인상률과 이자율 등 각종 변수가 추가됨.

※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 NWC)란,

1970년대 성공적인 산업발전으로 임금이 많이 오르던 당시, 정부는 가파른 임금인상이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1972년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금인상 추세를 모니터하고 매년 적절한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국가임금위원회는 1980년대에 산업의 부가가치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권고안을 내린 바 있으며, 현재까지 노사 임금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산업중재재판소(Industrial Arbitration Court)

1960년에 설립되었으며 노사분쟁의 최종 해결창구임.

(3) 노동자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제도 현황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제일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과 비교하여도 떨어지는 수준이다.

국민의료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 각종 제도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이라는 강제 저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따름이다. 중앙적립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급여의 36%(현재)를 강제로 저축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저축된 금액은 개인별 계좌로 구분되어 주택비, 의료비, 노후대책비 등으로 사용된다.

(4) 노무분야별 현황

가. 정리해고제도

정리해고 요건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근로자와 고용주간 고용계약에 의거 고용
- 해직사유 고용계약서에 명기
- 계약내용 위반시 고용계약 파기
- 2일 이상 무단결근시 해고

개별적 고용계약에 의거, 채용 및 해고가 가능하며 법률화된 정리해고제도 및 절차는 없다. 단, 부당해고에 따른 불만은 개인적 차원에서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에 제소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

정리해고 절차로는 계약직의 경우 고용계약서상 명기된 고용종료시점 및 업무 종료시 자동 해지되며, 정규직의 경우 고용계약서상 고용종료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용주 및 근로자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고용계약해지 통보시 고용해지, 이 경우 고용계약해지 사전통보기간이 필요하다. 고용계약 해지 사전통보기간은 다음과 같다.

- 26주 미만근무시: 1일
- 26주~2년미만 : 1주
- 2년~ 5년미만 : 2주
- 5년 이상 : 4주

나. 법정퇴직금제도

싱가포르는 법정 퇴직금제도가 없다. 해고시 3년간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관련조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년퇴직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근무기간중 국민연금(Central Provident Fund)에 의무적으로 연금을 각출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퇴직금 지급이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 유급휴가제도

3개월이상 근무시 연간 7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근무년수 1년 초과시마다 연차휴가 1일씩 증가, 최장 14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월차휴가 규정은 없다.

라. 여성근로자 보호

여성근로자의 경우 시간외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교대 근무자의 경우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의 시간외, 야간근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산전후 휴가의 경우 산전 4주, 산후 4주 총 8주 출산휴가가 인정하다. 출산 일 이전 최소 180일 이상 근무, 자녀가 2명 이하, 휴가 1주일전 사전통지 했을 경우 출산휴가 기간중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급여의 반액만 지급된다.

마. 근로자 파견 관련제도

근로자 파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근로자 파견회사는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에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5)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 방향

(1) 노사선진화의 필요성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환경 변화는 우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노동운동은 그간 우리사회의 민주화 경제발전 및 약자 보호에 기여하면서 국민적 지지속에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장된 지위에 맞는 사회적 법적 책무를 등한시한 채 기업을 아직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전투적 운동 방식이 상존하고 있다.

경영계 역시 투명경영과 노사 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신뢰에 바탕을 둔 근로자 참여보다는 분쟁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노조기피정서가 잔존하고 있다. 정부도 노사자율 및 노사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정책보다는 목전의 분규해결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독과점 경영과 힘 있는 노조간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와중에서 취약근로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격차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가 지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소득 2만불시대」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 노사 선진화의 기본 방향

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함

파업 등 노사갈등은 인위적 규제보다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합리적 노동운동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줄어들 수 있다는 기본 인식하에, 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보장하여 노사문제의 자율해결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노사가 참여와 협력속에서 높은 성과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뢰증진과 투명경영의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노사갈등의 예방을 위한 조정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노동의 유연성 제고와 시장의 안정성 보강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유연성을 제고하되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도 병행하여야 한다.

다.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계층간 임금·복지 등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의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내실화하여야 한다.

(3) 주요 정책 과제

가.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한국은 신뢰와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나, 과격한 노사분규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하여 우리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이다.

노사관계 법제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핵심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모적인 노사갈등과 취약한 분쟁조정시스템은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그 결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확립이 시급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정착이 가능하겠다.

나.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OECD, IMD 등 국제단체와 외투기업들은 여전히 경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제도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겠다. 즉, 해고제도의 경직성 완화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노력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기업변동과 근로자 권익보호의 조화, 근로시간제도의 탄력성 제고, 임금제도의 합리화가 이루어져야겠다.

아울러 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노동시장의 활력을 가져와야겠다.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 외에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평생직업 능력 개발체제 구축도 필요하겠다.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체제를 구축, 내실화해야겠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도퇴직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운영을 도입해야 한다. 그 외에도 사회 학습망 구축을 위한 능력개발 인프라 확충, 능력 중시사회 구현을 위해 자격제도를 현장밀착형으로 혁신해야겠다.

다. 취약근로자 사회적 보호강화

1997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정규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고용상의 차별과 남용, 임금 및 복지 격차문제가 대두되었으며, 현재 국적, 성별, 신앙 등에 대한 차별은 금지 되는데 반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영세·취약근로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의 실질적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내실화해야겠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혜를 지속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아울러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임금지급보장 제도를 확충하고,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소득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행정체계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중심으로 혁신한다.

3. 조세제도

1) 영국

(1) 법인세

영국의 법인세율은 2003년도부터 시작세율이 0%, 소기업용 세율은 19%, 기준세율은 30%로 인하되고 있다. 과세기준이 10,001-500,000 파운드이거나 300,001-1,500,000 파운드인 경우 기준 19/400 또는 11/400의 계수를 적용, 일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한계공제제도(Marginal Relief)를 시행하고 있다.

$$\cdot \text{한계공제액} = (\text{한도액 상한} - \text{순이익}) \times \text{한계공제비율(계수)}$$

R&D 지출에 대하여는 현재 100% 공제해주고 있으며, R&D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2년 4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특정 R&D 지출에 대하여 추가로 25%공제해 주도록 개선하였다.

< 법인세율 >

(단위 : 파운드)

구 분	과세기준	2001-2002년도	2002-2003년도
시작세율	10,000 이하	10%	0%
계수	10,001-50,000	19/400	19/400
소기업용 세율	50,001-300,000	20%	19%
계수	300,001-1,500,000	11/400	11/400
기준세율	1,500,000	30%	30%

(자료원 : 영국 내국세청)

(2)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표준액으로 1,920 파운드까지는 시작세율을 적용하여 10%, 1,920파운드 초과 29,900 파운드 이하는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22%, 29,900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고율인 40%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공제액은 일반개인이 4,615 파운드이며,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경우 6,100 파운드, 75세 이상인 경우 6,370 파운드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기혼부부공제 5,465 파운드, 75세 이상 부부공제 5,535 파운드, 1935년 4월 6일 이전에 태어난 부부에 대한 최저부부공제 2,110 파운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장애인 공제 등이 있다.

< 소득세율 >

(단위 : 파운드)

구분	과세표준		소득세율	배당소득	이자소득
	초과	이하			
시작세율	0	1,920	10%	10%	10%
기준세율	1,920	29,900	22%	10%	20%
고세율	29,900	-	40%	32.5%	40%

(자료원 : 영국 내국세청)

신탁(Trusts)에 대한 소득세율은 34%이나, 스케줄F신탁(Schedule F Trusts)인 경우에는 소득세율 25%를 적용하고 있다.

< 신탁(Trusts)에 대한 소득세율 >

구분	세율
신탁(Trusts)	34%
스케줄F 신탁(Schedule F Trusts)	25%

(자료원 : 영국 내국세청)

(3) 배당소득

영국거주 법인이 영국거주 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영국거주 법인이 비거주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4)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개인 또는 장애인이나 상속에 대한 신탁의 경우 연간 공제액이 7,700 파운드이며, 기타 신탁의 경우 3,850파운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자본이득세율은 연간 공제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액이 1,920파운드 이하인 경우 10%, 1,921파운드부터 29,900 파운드까지인 경우 20%, 29,901파운드 이상인 경우 40%를 적용한다.

< 자본이득 세율 >

과세표준 (개인)	세율
1,920이하	10%
1,921-29,900	20%
29,901이상	40%

(자료원 : 영국 내국세청)

(5) 상속세

상속세는 공제금액인 25만 파운드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25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네덜란드

(1) 법인세

네덜란드 법인세의 납부 주체는 상장주식회사(NV), 주식회사/유한회사(BV)이며, 거주자는 경영진 소재지, 본점 소재지, 주총 개최지 등으로 결정한다.

법인세율은 22,689유로까지 29%, 그 이상은 34.5%이다. 고려요인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법에 따라 통상적인 사업관행과 일치되는 감가상각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주식평가는 원가법, 저가법 등 통상적인 방식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비용의 공제여부에 있어서 영업비용은 실제공제하나, 자산 대비 높은 이자 지급은 일부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충당금 설정, 채투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Carry back과 Carry forward가 가능하다.

○ 주주참여 면제조항

- 주주로서의 배당과세 면제 등 반대로 이 제도의 수혜자는 손실시에도 과세됨
- 대상: 5%이상의 지분, 투자기관은 적용안됨

○ 그룹세제: 회사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2) 부가세

통상 19%, 1968년 매출세법(Turnover Tax Act)에 따른 공급, 수입, 관련 기관간 구입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한다.

(3) 개인소득세(Income Tax)

직장, 가정 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33.4 ~ 5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자 소득의 경우 25%, 그리고 저축,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30%, 순가치의 4%의 고정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Netherlands)

3) 아일랜드

(1) 법인세

아일랜드의 표준 법인세율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5%이며, EU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그리고 제한적인 조건아래에서는 종전의 10%의 법인세가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도 있다.

(2)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0%이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위 : 유로)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독신/미망인	28,000까지	20%
	28,000 초과분	42%
자녀있는 독신/미망인	32,000까지	20%
	32,000 초과분	42%
결혼한 부부(1명 소득)	37,000까지	20%
	37,000 초과분	42%
결혼한 부부(2명 소득)	56,000 까지	20%
	56,000 초과분	42%

(자료원 : Guide to tax and financial incentives in Ireland, IDA Ireland)

(3) 자본관련 조세

○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 자본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부과되며 표준세율은 20%이다.

○ 인지세(Stamp duty) : 토지나 건물의 이전, 자산의 임대차, 법률서류 등에 발생하며 세율은 1-9%이다.

○ 자본세(Capital duty) : 회사의 설립, 주식의 추가 발행시 발생하며, 세율은 1%이다

- 자본취득세(Capital acquisition tax) :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시 부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4) 싱가포르

(1) 법인세

거주자 및 비거주자(외국기업 지점 포함)에 대하여 2002년 회계연도부터 법인세 22%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다.

(2) 개인소득세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거주자는 싱가포르에 거주중인 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실제로 살고 있는 자, 또는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서 고용중인 자를 의미하며, 2만 싱가포르달러까지 비과세하고, 2만 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최소 4%에서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비거주자 개인이 고용계약에 의거 연간 60일 이하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해 고용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연간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내국 고용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15%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율 가운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거주자인 임원의 보수 등 기타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할인된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2003년부터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 재산세

산업용 또는 상업용 재산은 연간 임대가에 대하여 10%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주거용 부동산은 4%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에 재산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4) 물품과 서비스세

싱가포르 내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시 또는 외국으로부터 물품 수입시 부과하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5) 각국의 조세제도 비교 및 한국의 조세제도 발전방향

(1) 각국의 조세제도 비교

(단위 : %)

구 분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한국	
법인세	거주자	0-30	12.5	29-34.5	22	15-27	
	비거주자	-	-	-	22	-	
소득세	거주자	10-40	20-42	33.4-52	4-22	9-36	
	비거주자	-			15-22	-	
원천징수	배당소득	거주자	10-32.5	20	25	0	15
		비거주자	-	-	-	0	25
	이자소득	거주자	10-40	20	30	0	15
		비거주자	0	-	-	15	25
	사용료소득	거주자	0	-	-	0	15
		비거주자	0	-	-	15	25
조세지원제도		R&D 비용: 125% 소득공제	R&D비용 소득 공제	역외비용 면세(최대 30%까지 면세)	개척자격 등 각종인센티브 제공, 임팩테이션 제도 도입	특정사업에 대하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2) 한국의 조세제도 발전 방향

수치상으로는 한국의 조세제도가 타 국가에 비하여 조세부담이 크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예시된 수치이외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및 가산세 제도와 여러 명목의 목적세 등을 고려한다면 타국가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아시아 지역내에서 다국적 기업의 중심지역으로 변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인하, 특정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마련, 복잡한 조세제도의 단순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조세에 있어 내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4. 주요국의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

1) 네덜란드의 물류산업 및 클러스터(Clusters)

(1) 유럽의 물류 동향

가. 물류측면에서 본 유럽시장의 여건

□ EU 시장의 확대 ⇨ 세계최대 경제지역화

2004년 5월 10개 중동구 국가가 EU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인구 4억 5천만명, GDP 9조억불, 대외무역 5조억불 규모의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참고로 최근 가입한 10개국은 폴란드, 헝가리, 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말타, 사이프러스 등이다.

< EU의 경제적 위상 >

(단위: 백만명, 십억불)

	EU 25	미 국	일 본	세계 전체
인 구	454.3	285.9	127.3	6,100
GDP 규모	8,784	9,426	4,392	32,067
상품 수출	1,122	711	395	6,280
상품 수입	1,204	1,193	294	6,268

주) EU 상품 수출.입: 기존 회원국은 역외교역만 포함

향후 EU는 지중해연안국 및 북아프리카, CIS 국가들까지 포함하는 범유럽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어서 시장규모 확대에 의한 물류 및 마케팅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유럽경제권의 자급자족 체제가 심화될 전망이다. 유럽 내 분업이 확대되고, 무역전환 효과로 인한 역외교역 감소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유럽내 생산 및 물류기지 구축이 필요하겠다.

□ 유로화 도입을 통한 시장통합의 확대 및 심화

2002년부터 EU 12개국에서 국별 통화가 폐지되고, 단일통화(유로화)가 본격 유통

됨에 따라 단일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

EU국가 가운데 영국, 스웨덴, 덴마크는 자국통화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단일시장 완성을 위한 EU 지침의 법제화가 지속 추진되어 현재 총 1,800여개 법규 가운데 90%가 완료되었다.

단일시장 이행지침에 의거 국별 규제기준의 통합 및 EU 역내 물류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유럽통합물류의 여건 성숙이 전망된다.

한편, 소비자들의 가격비교가 용이해 짐에 따라 국별 가격차이가 감소되고,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 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 새로운 경쟁원천 확보가 필요하겠다.

나. EU 확대와 네덜란드의 물류입지

□ 중동구 지역으로의 EU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럽 최고 물류입지로서의 지위 유지

중동구 지역의 물류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저렴한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물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물류 입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세계은행이 물류입지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물류친화도 지표에 따르면, 물류 인프라가 EU 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다.

한편, 중동구 물류 서비스가 EU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물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중동구 국가 물류 친화도 >

국가명	물류친화도	국가명	물류친화도
네덜란드	100%	헝가리	43%
리투아니아	71%	체크	38%
에스토니아	63%	슬로베니아	29%
라트비아	57%	폴란드	25%
슬로바키아	50%	루마니아	25%

* Logistics Solutions, Issue 6, 2002(World Bank)

□ 장기적으로는 복수 물류기지의 Hub 물류센터로 유망

이제 EU확대로 인해 1개 물류기지가 전 EU 시장을 관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규 가입국의 물류인프라가 개선될 경우, 항만입지가 뛰어난 로테르담 인근의 Hub 물류센터와 동구권의 Regional 물류센터로 2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사례분석 : 전자제품 A사

-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A사의 사례분석 결과, 중동구 보다는 네덜란드 등 서구에 물류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물류비 절감에 유리

- ① 중국 제조 + 네덜란드 물류 => 물류비 34.7백만불
- ② 헝가리 제조 + 헝가리 물류 => 물류비 35.9백만불
- ③ 헝가리 제조 + 네덜란드 물류 => 물류비 39.2백만불
- ④ 루마니아 제조 + 네덜란드 물류 => 물류비 43.2백만불
- ⑤ 스코틀랜드 제조 + 네덜란드 물류 = 물류비 43.4백만불

자료원 : Buck Consultants International

(2) 네덜란드의 물류환경

가. 유럽물류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하는 비중

□ 외국기업의 유럽물류센터 중 절반이상이 네덜란드에 소재
(자료원: BCI/HIDC 1997)

- 미국기업 유럽물류센터 611개 중 57%가 네덜란드 소재
 - 벨기에 13%, 독일 7%, 프랑스 6%, 영국 12%, 기타 5%
- 아시아계 유럽물류센터 344개 중 56%가 네덜란드 소재
 - 벨기에 12%, 독일 22%, 프랑스 5%, 영국 4%, 기타 1%

□ 99년 현재 총 550여개의 외국기업 물류센터가 네덜란드에서 운영중

- 이중 미국기업 65%(350개), 일본기업 25%(135개), 대만기업 8%(44개)의 비중 차지(한국은 7개에 불과)
- 지역별로는 암스테르담 스키폴공항 지역, 로테르담이 가장 많고 북브라반트 주의 로젠달, 틸버그, 아인트호벤 등과 그 다음으로 나이메헌, 벤로 등에 소재

□ 네덜란드 소재 물류센터의 특징

- 네덜란드 소재 물류센터의 74%는 아웃소싱으로 활용되고 있는 반면, 다른 유럽지역의 경우 57%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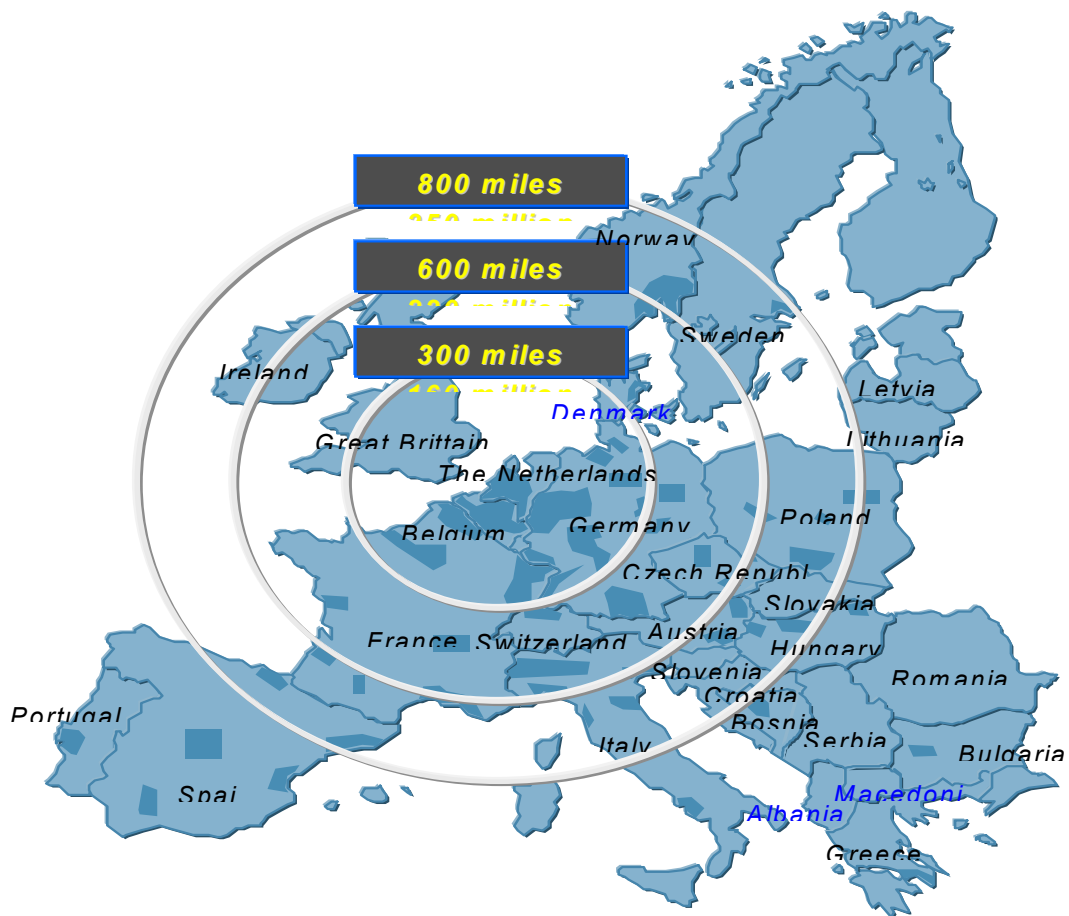
나. 유럽물류센터 적지로서의 네덜란드

□ 지리적 중심지 및 양호한 접근성

- 반경 300마일 (일일 생활권) 이내에 1억 6천만명의 인구와 유럽 주요 기업의 50% 소재
- 특히, 유럽의 3대시장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중간 지점에 위치
- 독일 루르공업 지대를 포함한 유럽 주요공업지역과 수로 및 육로로 연결되어 화물 이동 및 처리면에서 높은 경쟁력 보유
- 로테르담에서 주요 도시까지 거리 및 운송 매체별 소요시간

도 시 명	거 리(km)	도로/기차	운 하
오스트리아 (비엔나)	1,180	2일	10 일
프랑스 (릴리)	825	1일	2 일
독일 (베를린)	710	2일	8 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1,435	3일	11.5 일
폴란드 (바르샤바)	1,285	4일	10.5 일
체코 (프라하)	890	3일	-
스위스 (바젤)	670	2일	4 일

자료원: Rotterdam Hinterland Connection, Port of Rotterdam



자료원 : HIDC

□ 풍부한 사회간접자본

○ 로테르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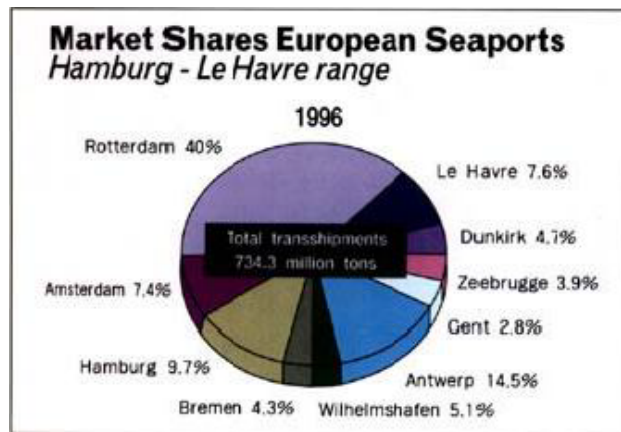
- 62년 이후 물동량면에서 부동의 세계 1위로 자리매김
- 처리능력 : 연간 5백만개의 컨테이너와 3억 1천만톤의 화물
-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37%가 로테르담항과 암스테르담항을 경유

☞ 로테르담항 항만정보시스템(INTIS)

로테르담항은 INTIS라 불리우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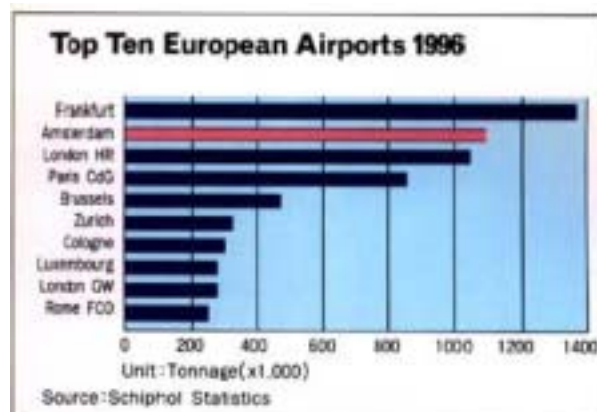
터미널의 모든 정보를 전자문서 교환시스템(EDI)을 통해 처리

세관망, 기업망, 공공망과 연계된 항만물류 종합정보시스템



○ 암스테르담 스키펴(Schiphol) 국제공항

- 스키펴 공항은 유럽 4위의 공항으로, 전세계 240개국 이상의 지역으로 취항
- 물류, 운송, 보관 및 출하시설이 우수하며, 해외 각 지역과의 화물연결 체계도 탁월
- 과거 20년간 Business Traveler International에 의해 “유럽에서 가장 우수한 공항”으로 선정됨.



○ 암스테르담의 항만 및 공항시설과 로테르담의 항만시설은 도로, 철도망, 내수로 등 내륙운송 수단을 통해 유럽 주요 시장들과 연결되어 있음.

- 도로 : 총연장 12만km, 포장율 90%
- 고속도로 : 2,300km
- 철도 : 2,800km, 370개역, 화물열차 3,320대
- 내수로 : 선박운행이 가능한 내수로는 총연장 5,000km. 이 가운데 1,500톤급 이상 대형선박이 운행가능한 수로도 1,800km에 달함.

□ 우수한 물류 전문 인력

-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무역국가로 무역 및 운송이 화란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며, 세계 5위의 대외투자국임.
- 3만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가 물류관련 비즈니스에 근무하며, 160여개의 물류전문 서비스업체 보유
- 물류관련 협회 및 기관, 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물류관련 전문가 양성
 - 교육과정도 물류 실무과정에서부터 대학학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업체 방문교육도 실시
 - 관련 교육기관 및 수여 학위(예시)
 - 운송/물류교육센터(Educatief centrum Wegtransport & Logistiek BV)
 - 공인자격증 : EJLog, ESLog, EMLog 등
 - ISBW : Logistiek Mederwerker(logistic co-worker) 자격
 - 네덜란드 포장센터 (Nederlands Verpakkingcentrum)
 - 공인자격증 : 포장전문가 1급-3급

□ 효율적이고 비즈니스 마인드의 통관제도

- EU 공통의 관세법을 적용받지만 운영에서는 국별로 다소 차이
 - 세관 통관절차 간략하고 융통성이 많음.
- 물류반입 일자에 따라 부가세나 또는 통관세 없이 다른 유럽국가로의 물류수송이 가능하며, 보세창고의 허가도 매우 신속적

□ 유럽국가중 최고의 외국어 구사능력

-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 3~4개국어 구사 필요
-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한 노동시장
 - 단기 및 파트타임 계약 등 탄력적인 노동계약 체결가능
 -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파업 등 분규로 인한 인력손실 기간이 최소

(3)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클러스터 조성 현황

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조성한 클러스터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방정부에 따

라 특정 목적의 산업단지를 조성함.

예1) 림버그(Limburg)주의 “유럽 과학 및 비즈니스 단지”

- 규모: 100헥타르
- 전략산업: IT, 생명공학, 플라스틱 및 자동차
- 특징: 네덜란드 림버그(Limburg)와 독일의 아헨(Aachen) 지역에 있는 일부 건물들을 동 단지로 지정하여 이들 두 지역의 인력, 자원 및 자본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예2) 델프자일/베인담(Delfzijl/Veendam) 집중 개발 지역

- NaCl(염화나트륨), 천연 가스 및 염화 마그네슘과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한 점을 활용, 화학 산업을 육성
- AKZO Nobel, DOW Chemicals, FMC, PPG, BF Goodrich 및 Morton과 같은 국내외 유명 기업들이 동 지역에 위치
- 제품 및 원자재 교환, 시설과 설비의 공동 이용 등 단지내 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

나. 각 지방 투자유치 기관은 투자유치 활동의 하나로 지역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 대상 산업을 집중 홍보함. 지역 특화산업 및 중점 육성 대상 산업은 아래와 같음.

a. 로테르담

- 주요산업: 석유 및 화학, 해운
- 배 경
 - . 유럽 최대 규모의 로테르담 항만을 통해 석유 및 화학제품 운송 용이
 - . 로테르담항은 물동량 기준, 유럽은 물론 세계 1위 항구로 해운업의 최적지

b. 북브라반트(Noord-Brabant)주

- 주요산업: 전자, 자동차, 제약, 플라스틱, 식품과 음료, 하이테크, 의료 기술 및 멀티미디어 산업
- 배 경
 - .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3대 경제 중심지인 암스텔담, 브뤼셀 및 뒤셀도르프의 중앙에 위치
 - . 스키폴 공항과 브뤼셀 공항 접근 용이

- . 로테르담, 암스텔담 및 앤트워프 항구 인접

자동차

- . 네덜란드 자동차 제품과 부품 공급업자의 약 절반이 북브라반트에 소재
- . 변속기와 동력 전달 장치, 차대와 차체 부품, 자동차 관련 전자 제품과 통신 기술 분야의 고도 기술 보유

의료기술/생명과학

- . 75개의 제약회사와 400개의 의료 기술회사 소재, 네덜란드 의약산업 부문 총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
- . 매년 50억 달러 이상을 연구개발 사업에 투자
- . 산학 공동으로 국제적인 연구 프로그램 추진

하이테크와 멀티미디어 산업

- . 네덜란드 하이테크 산업 부문의 약 20% 차지, 네덜란드 전체 하이테크 노동력의 약 30% 고용
- . 자동차 및 조립, 컴퓨터 주변 기기, 전기 엔지니어링, 지식 시스템, 의료 시스템, 제약, 플라스틱, 운송 등의 고도기술 보유
- . 250개 의료장비 생산 회사 소재

c. 북부 네덜란드

- 주요산업: 화학, 생체임상의학 및 제약산업
- 현 황: 300개의 기업 화학기업 소재, 고용인원은 약 10,000명
 100개의 생체임상의학 및 제약회사가 집결, 고용인원은 7,000명
- 배 경
 - .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와 에너지 조달 용이
 - . 네덜란드 정부의 생체임상의학 및 제약산업 집중 육성 정책

2) 영국의 R&D 및 첨단기술투자 유치

영국이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R&D 및 첨단기술분야의 투자유치이다. 최근 동유럽 등으로 제조업 기지가 옮겨가면서 영국 정부는 대규모의 제조업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해져 영국이 세계적인 강점을 가지

고 있는 분야인 첨단기술 분야의 투자유치를 전략적인 투자유치분야로 결정하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국내에는 90개 대학이 최소한 특정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산업은 유럽에서 제일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D 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인구 1,000명당 노벨상 수상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영국이라고 한다.

그리고 영국 전역에 걸쳐 55개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s, 과학기술집적단지)가 있어 이 분야의 투자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와 같이 과학기술집적단지들은 대부분 유명대학이나 연구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R&D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Science Park와 바이오산업이다.

(1) Science Parks (과학기술집적단지)

사이언스 파크란 기본적으로 지식기반의 비즈니스 클러스터이며 입주업체의 성장을 돕기위한 각종지원이나 자문이 제공된다. 대부분의 경우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기술중심지와 연계되어 있다. 주요역할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특정기술 개발 및 발전 등이다.

사이언스 파크가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파크에 따라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기술지원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이다. 기술지원은 대부분 인근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계되어 있다. 비즈니스 서비스는 리셉션, 통신, 사무기기, 회의실, 경비, 청소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에 대한 자문, 대부 또는 벤처자본 연결, 마케팅 자문 등도 제공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리는 명칭은 리서치 파크, 사이언스 파크, 테크놀로지 파크, 이노베이션센터 등 다양하지만 위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모두 사이언트 파크에 포함된다.

사이언스 파크의 설립주체는 지역개발청, 대학, 민간기업, 대학 및 민간기업 합작 등 다양하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의 경우 캠브리지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가 단독으로 설립한 반면, 옥스퍼드 사

이언스 파크의 경우 옥스퍼드 대학의 모듈린 칼리지(Magdalen College)와 푸르텐셜 보험이 합작으로 설립했다.

현재 영국사이언스파크협회(UKSPA; UK Science Park Association)의 정회원은 55개이다.

2002년도 기준으로 영국 전역의 사이언스 파크내에는 총 1,827개사, 고용자수는 42,655명이다. 이중 12%가 외국회사이다. 산업별로는 ICT기업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생명공학, 산업기술 분야가 뒤따르고 있다.

(2) 바이오 산업 (Biotechnology Industry)

유럽의 바이오텍 상장회사 45%, 그리고 유럽 바이오텍 상장회사의 개발중인 제품의 43%가 영국에 있을 정도로 영국의 바이오텍 산업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영국에서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겠다.

먼저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과 제품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다국적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생명과학분야에서 2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선기금들의 자금지원이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매년 9억 6천만불을 바이오텍 연구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웰컴재단(Wellcome Trust)과 암연구재단(Cancer Research UK) 등과 같은 자선단체들 또한 상당한 금액을 바이오연구에 지원하고 있다.

실정에 밝은 투자자, 뛰어난 특허사무소 및 경영컨설턴트, 세계적 수준의 독성실험 및 임상실험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도 한 몫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업계 및 금융계의 강하고 잘 확립된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소 및 성공적인 제약회사의 존재이다. 이들 제약회사는 매년 20억불 이상을 바이오텍 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영국의 바이오산업은 대학 및 연구소, 지역개발청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한 클러스터로는 옥스퍼드 바이오네트워크(Oxford Bioscience Network), 캠브리지의 동부지역바이오이니셔티브(Eastern Region Biotechnology Initiative), Bioscience York, BioNow, 런던 바이오네트워크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KOTRA, 2003. 주요국가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산업연구원, 2003. 세계화와 노사관계
 월간조선사, 2002. World Village "Hub Korea"
 런던, 네덜란드, 싱가포르 무역관 보고자료
 런던무역관, 2003. 영국시장 한눈에 보기
 UKTI, 2004. Annual Review
 Deloitte & Touche, 2003. Int'l Tax Review
 UKTI 홈페이지(www.uktradeinvest.gov.uk)
 IDA 홈페이지(www.idaireland.com)
 IDA 2003. Ireland, knowledge is in our nature
 IDA, 2002, Annual Report
 NFIA 홈페이지 (www.nfia.nl)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Fraser, Andrew, 1999. Case Study: UK's Invest in Britain Bureau(IBB)
 in Industrial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IV. 결 론

이상에서 경쟁국 및 모범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알아보고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외국인투자는 어느 한 부분의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부분이 동시에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정부에서도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2004년 1월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 조세, 금융, 기타 행정절차 등의 분야에서 총 49건의 개선과제를 선정,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계획」 주요 과제 >

1) 노사관계부문	
개선과제	• 파업기간중 임금보전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조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15건
개선대책	• 노동문제에 원리원칙대응, 노조 전임자수 임금 지급 관행 등 대책 마련 (OECD수준 벤치마킹)
2) 조세부문	
개선과제	• 법인세 인하, 연결납세 도입 등 기업 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중심으로 10건
개선대책	25 • 법인세 5년이내 5%인하, 연결납세제도 조기 도입 등 대책 마련
3) 금융/외환부문	
개선과제	• 신용제공한도 산정방법 개선, 해외본사와의 상계절차 간소화 등 9건
개선대책	• 외국은행 자기자본 산정기준을 해외본사 기준으로 인정, 상계절차 필요서류 간소화 등 대책 마련
4) 기타 행정절차 부문	
개선과제	• 첨단업종 수도권내 공장증설 허용, 입찰제도개선 등 12건
개선대책	• 첨단업종의 수도권내 공장증설 허용시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허용, 입찰평가시 기술항목 가중치 상향 등 대책 마련

(자료원 : Invest KOREA)

그리고 생활환경 분야도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계획」을 수립, 교육, 주거, 의료, 교통, 출입국, 통신/문화 분야의 개선대상 102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추진 중에 있다.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주요 과제 >

1) 교육부문	
개선과제	• 외국인학교 신설·확장·이전지원, 우수 외국인학교 육성 등 15건
개선대책	• 용산외국인학교 설립,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유치 등 대책 마련
2) 주거부문	
개선과제	• 외국인용 주택임대차 계약서 도입, 외국인 주거정보센터 운영 등 13건
개선대책	• 영문 주택임대차 계약서 도입, 주거문화안내 웹사이트 구축 등 대책 마련
3) 의료부문	
개선과제	•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운영, 외국인진료병원 설립조건 완화 등 11건
개선대책	• 외국인진료병원 선정기준마련, 경제자유구역내 우수 외국인 병원 유치 등 대책 마련
4) 교통부문	
개선과제	•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불편 해소, 외국인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 28건
개선대책	• 운전면허 안내창구 외국어 구사능력 배양, 버스노선 안내도 영문병기 확대 등 대책 마련
5) 출입국부문	
개선과제	• 출입국 심사편의 제공, 영주권 취득자격 완화 등 14건
개선대책	• 외국인투자가 전용 심사라인 신설, 고액투자가 영주권 즉시 발급 등 대책 마련
6) 문화/통신부문	
개선과제	• 외국인 생활문화 안내센터 운영, 외국인등록번호 인지도 향상 등 31건
개선대책	• IKP내 안내센터 운영, 외국인등록번호 인지프로그램 설치의무화 등 대책 마련

(자료원 : Invest KOREA)

상기 102개 과제(2004년도 추진과제 87개) 가운데 2004년 1분기 현재 해결된 과제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추진 완료 과제
교 육 (4개 과제)	○경남국제외국인학교 설립 (산자부, 경남도, '04.1월) ○외국인학교에 대한 입지지원 근거 마련 (산자부, '04.1월) ○비영리교육재단에 대한 특례기부금 인정근거 마련 (재경부, '04.1월)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총급여액 단일소득세율 적용 (재경부, '04.1월)
주 거 (4개 과제)	○월세조건부 전세금 지원상품 개발 (서울보증보험, '04.1월) ○선불금 적기 환불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서울보증보험, '04.1월) ○외국인 주택에 대한 입지지원근거 마련 (산자부, '04.1월)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 근거규정 마련 (건교부, '04.1월)
출 입 국 (2개 과제)	○외국인지문날인제도 폐지 (법무부, '04.1월) ○외국인투자가 전용심사라인 설치(법무부, '04.2월)

(자료원 : Invest KOREA)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은 단기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각 관련기관 및 집단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